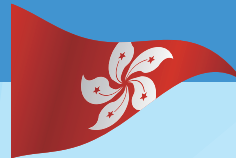




#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Customs Clearance Systems  
of Selected Countries

2019. 12



## HONGKONG

홍콩 편



#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홍콩 편 -

2019. 12

---

연구총괄	정재현 부연구위원
연구자	노영예 선임연구원 이재선 관세사

# 목차

제1편 개관 .....	11
I. 일반 개황 .....	11
II. 경제 개황 .....	15
1. 주요 경제지표 .....	15
2. 홍콩의 對세계 수출입 동향 .....	16
3. 외국인 투자 동향 .....	20
가. 홍콩의 FDI 유출입 .....	20
나. 홍콩의 주요국별 FDI 유입 .....	21
다. 홍콩의 분야별 투자유치 .....	22
III. 우리나라와 교역 관계 .....	24
1. 수출입 동향 .....	24
2. 수출입 주요 품목 .....	25
IV.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	28
1. 무역협정 체결 현황 .....	28
2. 논의 중인 무역협정 .....	32
3. 기타 협정 .....	33

제2편 통관제도 .....	35
I. 통관 관련 조직 및 관련법 .....	35
1. 해관행정조직 .....	35
가. 해관행정조직 개요 .....	35
나. 해관행정조직의 역할 .....	37
2. 통관 관련 법 .....	42
3. 기타 관련 기관 .....	50
II. 관세 신고와 납부 및 평가 .....	52
1. 과세요건 .....	52
가. 과세물건 .....	52
나. 과세표준 .....	53
다. 납세의무자 및 과세환율 .....	53
2. 신고와 납부 .....	54
가. 신고와 납부 .....	54
나. 결정 및 재결정 .....	58
3.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제세금 .....	60
가. 관세 .....	60
나. 수출입 신고 수수료 .....	64
4. 관세 평가 .....	65
III.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제도 .....	70
1. 품목분류체계 .....	70
2. 관세율 제도 .....	72
가. 관세율 분포 .....	72
나. 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율 .....	74
다. 수출세 .....	74

IV. 면세 및 환급제도 .....	75
1. 면세제도 .....	75
2. 환급제도 .....	79
V. 원산지제도 .....	81
1. 비특혜 원산지제도 .....	81
2. CEPA 원산지 규정 .....	84
3. 홍콩 FTA 원산지 규정 .....	87
VI. 보세제도 .....	90
1. 보세구역 .....	90
가. 특허보세구역 .....	90
나. 세관창고 .....	106
2. 보세운송 .....	106
VII. 수출입 요건 .....	109
1. 수출입 금지 및 제한 .....	109
가. 전략물자 .....	109
나. 수출입 금지 물품 .....	112
2. 수출입 면허 .....	119
VIII. 권리구제제도 .....	123
IX. 벌칙제도 .....	127
1. 세관공무원의 권한 .....	127
가. 일반적인 권한 .....	127
나. 특별한 권한 .....	129
다. 세관공무원 권한에 대한 벌칙 .....	132

2. 벌칙 .....	133
가. 밀수 .....	133
나. 규정의 위반 .....	136
X. AEO 제도 .....	143
1. 개요 .....	143
2. AEO 신청 및 요건 .....	144
가. AEO 인증의 신청 .....	144
나. AEO 인증의 기준 .....	145
다. 사후관리 .....	150
3. AEO 혜택 .....	151
가. AEO 혜택 .....	151
나. 상호인정약정에 따른 혜택 .....	152
다. AEO 로고의 사용 .....	154
제3편 수출입 통관 절차 .....	155
I. 수출입 통관 절차 .....	155
1. 일반 수출입 통관 절차 .....	156
가. 사전 적하목록 제출 .....	156
나. 물품 검사 및 반출 .....	164
다. 사후 적하목록 제출 .....	165
라. 수입·수출 신고 .....	168
2. 특수 수출입 통관 절차 .....	175
가. 금지 물품 .....	175
나. 휴대품 .....	178

II. 환적 절차 .....	180
1. 환적화물 면제 절차 .....	180
가. 면제 대상 .....	180
나. 면제 등록 .....	181
다. 면제 요건 .....	183
2. 환적화물 증명절차 .....	186
가. 적용 범위 .....	187
나. 발급 기준 .....	188
다. 발급 절차 .....	191
참고문헌 .....	193



## 표 목차

### 제1편

〈표 1-I-1〉 홍콩의 인민폐 및 달러화 환율 .....	14
〈표 1-II-1〉 홍콩 주요 경제지표 .....	16
〈표 1-II-2〉 최근 홍콩의 對세계 수출입 현황 .....	17
〈표 1-II-3〉 2018년 홍콩의 주요 수출입국가 .....	18
〈표 1-II-4〉 2018년 홍콩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 .....	19
〈표 1-II-5〉 홍콩의 FDI 유입 및 유출액 .....	21
〈표 1-II-6〉 홍콩의 주요국별 FDI 유입 현황 .....	22
〈표 1-II-7〉 홍콩의 분야별 FDI 유입 현황 .....	23
〈표 1-III-1〉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對 홍콩 수출입 현황 .....	25
〈표 1-III-2〉 2017/2018년 우리나라의 對 홍콩 수출품목 .....	26
〈표 1-III-3〉 2017/2018년 우리나라의 對 홍콩 수입품목 .....	27
〈표 1-IV-1〉 홍콩의 무역 관련 협정 체결 현황 .....	31

### 제2편

〈표 2-I-1〉 홍콩 제60장 수출입 조례체계 .....	43
〈표 2-II-1〉 과세대상의 품목에 따른 세율 .....	62
〈표 2-II-2〉 자동차 종류에 따른 등록세율 .....	63

〈표 2-Ⅲ-1〉 홍콩 관세율 분포: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	72
〈표 2-Ⅲ-2〉 홍콩 산업별 관세율 수준 .....	73
〈표 2-VI-1〉 특허보세구역 수수료 .....	91
〈표 2-VII-1〉 전략물자 .....	110
〈표 2-VII-2〉 항공 환적화물 전략물자 면허 면제 대상(2019. 1. 1. 기준) .....	110
〈표 2-VII-3〉 수출 금지 물품 및 국가·지역 .....	114
〈표 2-VII-4〉 기타 법령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	116
〈표 2-VII-5〉 수입 및 수출 면허수수료 .....	121
〈표 2-X-1〉 AEO 인증 기준 및 단계 .....	146
〈표 2-X-2〉 AEO 인증 자체평가 설문서 .....	147

### 제3편

〈표 3-I-1〉 e-SCC 물품 정보 제출 일정 .....	160
〈표 3-I-2〉 수입물품 적하목록 세부사항 .....	167
〈표 3-I-3〉 수출물품 적하목록 세부사항 .....	167
〈표 3-I-4〉 별도의 수입 신고가 필요한 식품 .....	170
〈표 3-I-5〉 별도의 수출 신고가 필요한 의류 .....	172
〈표 3-I-6〉 수·출입 신고 요금 .....	173
〈표 3-I-7〉 수출·입 신고 지연 가산세 .....	174
〈표 3-I-8〉 통관단일창구 발급 문서 .....	176
〈표 3-I-9〉 통관단일창구 발급 문서 .....	178
〈표 3-II-1〉 FTA 환적화물 원활화 제도 적용 범위 및 경유 기간 .....	187
〈표 3-II-2〉 FTA 협정별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	190
〈표 3-II-3〉 비가공증명서 수수료 .....	192

## 그림 목차

### 제2편

[그림 2-I-1] 2019년 홍콩해관 조직도 .....	41
[그림 2-III-1] 홍콩 HKHS Code .....	71
[그림 2-X-1] 홍콩-우리나라 MRA에 따른 적하목록 작성 예시 .....	153
[그림 2-X-2] 홍콩 AEO 로고 .....	154

# 제1편 개관

## I. 일반 개황<sup>1)</sup>

- 홍콩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로 1,106.42 km<sup>2</sup>의 면적을 가지고 있음<sup>2)</sup>
  - 홍콩은 도시 국가이므로 별도의 수도를 지정하고 있지 않음
  - 홍콩섬, 구룡반도, 란타우섬, 신계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 아열대의 몬순기후로써 여름은 고온 다습하며 겨울은 저온 건조함
  
- 홍콩의 총인구는 인구는 740만이며 주사용 언어는 광둥어임<sup>3)</sup>
  - 국민의 89%가 광둥어를 사용하나 영어 4.1%, 표준 중국어 또한 1.85%를 사용하고 있음

---

1)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gm.html>, 검색일자: 2018. 4. 18.

2)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홍콩약항), [http://overseas.mofa.go.kr/hk-ko/wpge/m\\_1500/contents.do](http://overseas.mofa.go.kr/hk-ko/wpge/m_1500/contents.do), 검색일자: 2019. 8. 28.

3)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홍콩약항), [http://overseas.mofa.go.kr/hk-ko/wpge/m\\_1500/contents.do](http://overseas.mofa.go.kr/hk-ko/wpge/m_1500/contents.do), 검색일자: 2019. 8. 28.

12 제1편 개관

- 민족 구성은 한족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종교의 경우 무교(48%)가 가장 많으며 도교, 불교(35.5%)를 주로 신봉하고 있음<sup>4)</sup>
  - 그 밖에 기독교(6.8%), 천주교(5%), 이슬람교(3.1%), 힌두교(0.5%), 소수 종교(1%) 등이 있음
- 1984년 12월 영국·중국 공동선언에 따라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이양되었음<sup>5)</sup>
  - 정식 명칭은 홍콩 문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정부의 공동 성명임
  - 홍콩은 1842년 아편 전쟁 이후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맺은 난징조약으로 홍콩 섬을 영국에게 빼앗겼음
  - 1860년에는 베이징 조약으로 주룽 반도 남단부가 영구히 영국령이 되었고 1898년에는 신계 지구를 99년간 영국이 지배하게 되었음
- 홍콩은 특별행정구로서 향후 50년간 사회, 경제면에서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일국양제가 적용되었음<sup>6)</sup>
  - 홍콩은 별도의 행정·입법 및 사법권(외교·국방 제외)을 가지고 있음
  - 행정부(The Executive Authority)의 행정수반(Chief Executive)은 홍콩 최고 책임자로서 임기는 5년이며 1차 연임이 가능함
- 1997년 4월 24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주 홍콩특별행정구 대한민국총영사관 유지 협정이 체결되었음<sup>7)</sup>

4)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홍콩역사), [http://overseas.mofa.go.kr/hk-ko/wpge/m\\_1500/contents.do](http://overseas.mofa.go.kr/hk-ko/wpge/m_1500/contents.do), 검색일자: 2019. 8. 28.

5)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홍콩역사), [http://overseas.mofa.go.kr/hk-ko/wpge/m\\_1500/contents.do](http://overseas.mofa.go.kr/hk-ko/wpge/m_1500/contents.do), 검색일자: 2019. 8. 28.

6)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홍콩역사), [http://overseas.mofa.go.kr/hk-ko/wpge/m\\_1500/contents.do](http://overseas.mofa.go.kr/hk-ko/wpge/m_1500/contents.do), 검색일자: 2019. 8. 28.

7)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홍콩과 한국과의 관계), [http://overseas.mofa.go.kr/hk-ko/wpge/m\\_1500/contents.do](http://overseas.mofa.go.kr/hk-ko/wpge/m_1500/contents.do), 검색일자: 2019. 8. 28.

- 그 밖에 한국과 항공협정(1996년), 투자보호협정(1996년), 투자보장협정(1997년), 형사사법공조협정(1998년), 형사 사법 공조협정(2000년), 범죄인 인도협정(2007년), 조세조약 제정협상(2013년), 이중과세방지협정(2016년) 등을 체결하고 있음
- 홍콩은 세계적인 무역과 서비스 거래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오랜 기간 동안 자유스러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음
- 홍콩 무역의 특징은 중계무역과 중국 광둥성 지역의 둥관, 심천 등의 공업지역을 활용하는 가공무역으로 요약할 수 있음<sup>8)</sup>
  - 1842년 난징조약 이후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되며 유럽과 중국 본토 및 아시아를 연결했던 전통적 중개무역 센터로서의 전통뿐만 아니라 홍콩정부의 무역, 유통, 금융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홍콩정부는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체 등에 적극 참가하고 있으며 국가만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체인 경우 중국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음<sup>9)</sup>
- 국가 이외의 행위자의 참가가 가능한 WTO, IMF, APEC, ADB, IOC 등 국제기구 및 국제 회의체인 경우 '홍콩, 중국(Hong Kong, China)' 명칭을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참여 및 활동하고 있음<sup>10)</sup>
- 홍콩정부는 또한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해 WTO에 별도로 가입 및 활동하고 있으며 홍콩의 국제무역은 WTO 규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

8) 외교통상부, [http://www.mofa.go.kr/www/brd/m\\_4049/view.do?seq=36800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http://www.mofa.go.kr/www/brd/m_4049/view.do?seq=36800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검색일자: 2019. 9. 17.

9) 외교통상부, 『홍콩·마카오 개황』, 2018. 4. p. 22.

10) 외교통상부, 『홍콩·마카오 개황』, 2018. 4. p. 22.

14 제1편 개관

- 특히 2001년부터 시작된 DDA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2014년 WTO 무역원활화 협정(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에 참가한 첫 번째 WTO 회원국이 되었음
- 홍콩의 2018년 환율은 1홍콩달러당 7.8337달러이며 100홍콩달러당 84.3621인민폐를 기록하였음

〈표 1-1-1〉 홍콩의 인민폐 및 달러화 환율

	2016	2017	2018	2019(11월)
인민폐(Chinese Renminbi) <sup>1)</sup>	85.5460	86.6903	84.3621	87.8731
달러(USD) <sup>2)</sup>	7.7585	7.7886	7.8337	7.8330

주: 1) 100홍콩달러당 환율

2) 1홍콩달러당 환율

자료: 홍콩통계청, [https://www.ird.gov.hk/eng/tax/ind\\_stp19.htm](https://www.ird.gov.hk/eng/tax/ind_stp19.htm), 검색일자: 2019. 8. 28.

## II. 경제 개황

### 1. 주요 경제지표

- 홍콩은 2017년 및 2018년 약 3%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2018년의 경우 2017년 3.8%보다 약 0.8% 하락한 3.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15년, 2016년 2%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비해 2018년은 경제성장률이 상승하였음
  - 홍콩의 GDP 및 1인당 GDP 모두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에는 GDP 2만 8,453억달러, 1인당 GDP 3,819억달러를 기록하였음
  - 홍콩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1.5%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 다시 상승하여 2.4%를 기록하였음
  - 실업률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3%대를 유지하였으나 2018년 2.8%로 하락하였음



〈표 1-11-1〉 홍콩 주요 경제지표

(단위: 억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GDP(국가총생산)	23,983	24,906	26,625	28,453
1인당 GDP	3,289	3,395	3,602	3,819
경제성장률	2.4	2.2	3.8	3.0
소비자 물가 상승률	3.0	2.4	1.5	2.4
실업률	3.3	3.4	3.1	2.8

자료: 홍콩경제통계, [https://www.hkeconomy.gov.hk/en/pdf/er\\_18q4.pdf](https://www.hkeconomy.gov.hk/en/pdf/er_18q4.pdf); 홍콩 무역 개발위원회 <http://hong-kong-economy-research.hktdc.com/business-news/article/Market-Environment/Economic-and-Trade-Information-on-Hong-Kong/etihk/en/1/1X000000/1X09OVUL.htm>; 홍콩통계청, <https://www.statistics.gov.hk/pub/B10600022018AN18B0100.pdf>, 검색일자: 2019 .9. 2.

## 2. 홍콩의 對세계 수출입 동향

- 2018년 홍콩의 對세계 총수출은 약 5,691억달러, 총수입은 약 6,273억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7년에 비해 2018년 총수출은 약 189억달러 증가하였으며 총수입은 약 375억달러 증가하였음
  - 2018년 총무역규모는 약 11,964억달러였으며 무역수지는 약 582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17년에 비해 2018년 총무역규모는 약 564억달러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약 186억달러 감소하였음
- 홍콩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무역적자폭이 감소하였다가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17년 약 767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감소하여 2016년에는 약 297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수출은 2014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교역규모는 2014년부터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1-11-2〉 최근 홍콩의 對세계 수출입 현황

(단위: 억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수출	5,241	5,106	5,167	5,502	5,691
수입	6,008	5,594	5,463	5,898	6,273
교역규모	11,249	10,700	10,630	11,400	11,964
무역수지	-767	-488	-297	-396	-582

주: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istat/hkts/HktsWholeList.screen>, 검색일자: 2019. 9. 2.

- 2018년 홍콩의 주요 수출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이 약 3,140억달러로 가장 높은 규모를 보였으며 미국, 인도, 일본의 순으로 수출규모가 컸음
  - 우리나라는 홍콩의 제11위 수출국으로 2017년 대비 2.4% 수출이 감소하였음
  - 네덜란드는 10.9%의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인도의 경우 14.9%의 가장 높은 수출 감소율을 보였음
  - 그 밖에도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은 2017년 대비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대만, 인도, 일본은 수출이 감소하였음
  
- 2018년 홍콩의 주요 수입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이 약 2,810억달러로 가장 높은 규모를 보였으며 대만, 싱가포르, 한국의 순으로 수입규모가 컸음
  - 우리나라는 홍콩의 제4위 수입국으로 2017년 대비 2018년 수입이 9.4% 증가하였음

- 말레이시아는 63.6%의 가장 높은 수입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인도는 -14.2%의 가장 높은 수출 감소율을 보였음
- 그 밖에도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은 2017년 대비 2018년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일본은 수입이 감소하였음

〈표 1-11-3〉 2018년 홍콩의 주요 수출입국가

(단위: 억달러, %)

수출				수입			
순위	국가명	금액	증감률 <sup>1)</sup>	순위	국가명	금액	증감률
1	중국	3,143.0	5.5	1	중국	2,810.0	6.9
2	미국	459.0	8.1	2	대만	433.0	2.0
3	인도(인디아)	179.0	-14.9	3	싱가포르	404.0	7.2
4	일본	165.0	-0.1	4	한국	356.0	9.4
5	태국	134.0	0.3	5	일본	349.0	-2.5
6	싱가포르	123.0	10.0	6	미국	318.0	2.9
7	대만	117.0	-4.4	7	말레이시아	241.0	63.6
8	베트남	107.0	3.6	8	스위스	158.0	4.2
10	네덜란드	91.0	10.9	9	태국	119.0	1.6
11	한국	78.0	-2.4	10	인도(인디아)	118.0	-14.2

주: 1)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istat/hkts/HktsCtr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19. 9. 2.

- 2018년 홍콩의 주요 수출품은 집적회로,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메모리, 가공하지 않은 금 등임
  - 특히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는 전년 대비 31.7%의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밖에 메모리,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도 전년 대비 각각 24.1%, 21.9%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음

- 2018년 홍콩의 주요 수입품은 집적회로,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메모리,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전화기 부분품 등임
  - 휘발유와 조제품은 전년 대비 32.5%의 가장 높은 수입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밖에 신변장식용품과 부분품(귀금속), 컴퓨터 부분품 및 부속품이 각각 29.9%, 26.5%의 수입 증가율을 보였음
  
- 홍콩의 무역은 수입품의 대부분을 다시 수출하는 중계무역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주요 수출입 품목이 유사함<sup>11)</sup>

〈표 1-11-4〉 2018년 홍콩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sup>1)</sup>

(단위: 억달러, %)

수출				수입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 <sup>2)</sup>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
1	집적회로	479.0	8.3	1	집적회로	547.0	10.1
2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402.0	21.9	2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517.0	18.0
3	메모리	386.0	24.1	3	메모리	461.0	9.2
4	가공하지 않은 금	372.0	-28.8	4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21.0	17.2
5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14.0	31.7	5	전화기 부분품	262.0	-12.5
6	전화기 부분품	309.0	-15.1	6	컴퓨터 부분품 및 부속품	238.0	26.5
7	컴퓨터 부분품 및 부속품	259.0	17.5	7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	235.0	-19.8

11) 외교통상부, 『홍콩·마카오 개황』, 2018. 4, p. 39.

〈표 1-11-4〉의 계속

수출				수입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2)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
8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	146.0	-0.2	8	다이아몬드	189.0	-0.3
9	다이아몬드	136.0	-2.6	9	신변장식용품과 부분품(귀금속)	124.0	29.9
10	안테나 부분품	113.0	4.1	10	휘발유와 조제품	120.0	32.5

주: 1) HS 6단위 기준  
2)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istat/hkts/HktsItem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18. 9. 2.

### 3. 외국인 투자 동향

#### 가. 홍콩의 FDI 유출입

- 홍콩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는 2018년 약 1,156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외부에 투자한 금액은 851억달러를 기록하였음
  - 홍콩의 FDI는 2015년 이후 하락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1,100억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음
  - 외부에 투자한 금액은 2015년 약 718억달러에서 2016년 약 597억달러로 감소한 후 2017년, 2018년 다시 증가하여 약 851억달러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홍콩의 FDI 유입 잔액은 2018년 약 1조 9천억달러이며 FDI 유출 투자 잔액은 2018년 약 1조 8천억달러임

〈표 1-11-5〉 홍콩의 FDI 유입 및 유출액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금액	금액	금액	금액
FDI (유입)Inward	174,353	117,387	110,685	115,662
FDI 유입잔액	1,591,627	1,626,013	1,943,917	1,997,220
FDI (유출)Outward	71,821	59,703	86,704	85,162
FDI유출잔액	1,531,436	1,546,661	1,813,297	1,870,112

자료: UNCTAD, [https://unctad.org/sections/dite\\_dir/docs/wir2019/wir19\\_fs\\_hk\\_en.pdf](https://unctad.org/sections/dite_dir/docs/wir2019/wir19_fs_hk_en.pdf), 검색 일자: 2019. 9. 2.

#### 나. 홍콩의 주요국별 FDI 유입

- 2018년 기준으로 홍콩의 주요국별 FDI 유입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FDI가 유입된 국가는 중국으로 약 2,970억홍콩달러의 FDI가 유입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버진아일랜드, 영국, 버뮤다제도의 순으로 FDI가 홍콩으로 유입되었음
  - 버진아일랜드는 2018년 기준으로 약 2,810억홍콩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약 800억홍콩달러를 투자하였음
- 특히 중국과 영국, 버뮤다제도, 미국, 일본, 대만은 2017년에 비해 홍콩으로의 FDI가 증가하였으며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의 경우 2017년에 비해 2018년에는 홍콩으로의 FDI가 감소하였음

〈표 1-11-6〉 홍콩의 주요국별 FDI 유입 현황

(단위: 십억홍콩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국가명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1 버진아일랜드	476.7	437.5	240.7	329.9	281.1
2 중국	221.8	200.8	256.8	179.2	296.6
3 케이맨제도	16.7	404.3	136.0	161.8	-10.1
4 영국	44.4	55.9	64.9	-14.8	80.0
5 버뮤다제도	-4.7	59.4	14.9	17.6	50.3
6 싱가포르	59.0	23.3	-18.1	82.8	-1.8
7 미국	8.3	3.0	47.6	12.0	19.5
8 일본	10.8	22.5	14.4	16.4	24.7
9 룩아일랜드	9.8	6.3	12.2	13.0	11.5
10 대만	0.8	-2.6	-1.3	-4.6	7.9

주: 역 FDI의 경우 차입금(Repayment of loan)을 나타내는 것임  
 자료: 홍콩통계청, <https://www.censtatd.gov.hk/hkstat/sub/sp260.jsp?subjectID=260&tableID=048&ID=0&productType=8>, 검색일자: 2019. 12. 16.

#### 다. 홍콩의 분야별 투자유치

- 홍콩의 분야별 FDI 유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투자, 은행업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수출입 도매 및 소매업, 건설, 보험, 기타업,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음
- 투자, 부동산 및 경영서비스 관련 업종의 경우 2015년 투자가 약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다시 투자가 약 3분의 1로 감소하였으며 2018년 약 4,790억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음

-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투자, 부동산, 경영서비스 관련 업종, 금융업, 보험업, 제조업,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식료품, 숙박업 등 대부분의 품목의 FDI 유입이 감소하였음
- 특히 2017년 대비 투자, 부동산, 경영서비스 관련업의 경우 약 6백억홍콩달러, 금융업의 경우 약 510억홍콩달러의 FDI 유입이 감소하였음
  - 은행업, 수출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의 경우 2017년 대비 FDI 유입이 각각 약 백억홍콩달러 및 약 5백억홍콩달러 증가하였음

〈표 1-11-7〉 홍콩의 분야별 FDI 유입 현황

(단위: 십억홍콩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분야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1 투자, 부동산, 경영서비스 등	496.8	1,144.4	509.2	537.9	479.7
2 은행업	130.4	116.7	143.3	128.1	137.4
3 수출입 도매 및 소매업	138.3	33.7	98.3	88.4	129.4
4 금융업(투자, 부동산, 경영서비스 등 제외)	29.1	5.7	60.8	54.8	3.7
5 건설	12.4	37.1	27.5	28.1	44.9
6 운송, 보관, 택배 등 서비스	6.6	-5.5	-1.1	-7.5	-3.5
7 보험	38.5	7.9	31.8	27.5	13.9
8 제조	3.3	11.4	3.3	5.5	1.6
9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8.0	-0.9	15.3	4.4	4.3
10 식료품, 숙박	0.1	-12.2	2.7	-0.2	-0.9
11 기타	13.1	13.2	20.0	-4.4	6.7

주: 역 FDI의 경우 차입금(Repayment of loan)을 나타내는 것임

자료: 홍콩통계청, <https://www.censtatd.gov.hk/hkstat/sub/sp260.jsp?tableID=049&ID=0&productType=8>, 검색일자: 2019. 12. 16.



### Ⅲ. 우리나라와 교역 관계

#### 1. 수출입 동향

-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홍콩의 총교역규모는 약 434억달러이며 우리나라의 對 홍콩 수출은 약 78억달러, 수입은 약 356억달러임
  - 전년 대비 우리나라의 對 홍콩 수출은 약 2.4%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약 9.4% 증가하였음
  - 전년 대비 우리나라와 홍콩의 교역규모는 약 6.8% 증가하였으나 무역수지는 약 11.9% 감소하였음
  
- 우리나라의 對 홍콩 수출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였으며 특히 2015년에는 2014년보다 수출이 약 10억달러 감소하였음
  - 2016년과 2017년에는 수출이 각각 약 5.8%, 약 4.1%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對 홍콩 수입은 201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특히 2016년에는 약 34.3%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8년에는 2014년 약 232억달러에서 약 124억달러 증가한 약 356억달러의 수입이 이루어졌음

- 우리나라와 홍콩의 교역규모는 201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약 434억달러를 기록하였음
  - 특히 2016년에는 약 21.3%의 가장 높은 교역규모 증가율을 보였음
- 우리나라의 對 홍콩 무역수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적자였으며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폭이 증가하였음

〈표 1-Ⅲ-1〉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對 홍콩 수출입 현황

(단위: 억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83	-4.1	73	-12.6	77	5.8	80	4.1	78	-2.4
수입	232	10.7	226	-2.4	303	34.3	325	7.1	356	9.4
교역규모	315	6.4	299	-5.35	380	21.3	405	6.2	434	6.8
무역수지	-149	-17.4	-153	-2.6	-227	-32.6	-245	-7.3	-278	-11.9

주: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istat/hkts/HktsItemImpExpDetailPopup.screen>, 검색일자: 2019. 8. 28.

## 2. 수출입 주요 품목

- 2018년 우리나라의 對 홍콩 10대 주요 수출품은 집적회로 반도체, 화장품, 보조기억장치, 선박, 합성수지, 제트유 및 등유, 경유, 전산기록매체, 개별소자반도체축전지임
  - 2017년에 비해 2018년에는 특히 전산기록매체의 수출 증가율이 약 209.9%로 가장 높았으며 경유, 보조기억장치, 선박 또한 각각 약 75.9%, 약 44.1%, 약 41.9%의 증가율을 보였음

- 그러나 10대 수출품 중 제트유 및 등유, 합성수지, 개별소자반도체는 각 약 21.4%, 약 9.1%, 약 3.4%의 감소율을 보임

〈표 1-Ⅲ-2〉 2017/2018년 우리나라의 對 홍콩 수출품목

(단위: 백만달러, %)

2017				2018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
1	집적회로반도체	26,673	77.6	1	집적회로반도체	33,174	24.4
2	화장품	1,222	-1.8	2	화장품	1,313	7.5
3	합성수지	925	13.2	3	보조기억장치	1,062	44.1
4	제트유 및 등유	838	46.8	4	선박	999	41.9
5	보조기억장치	737	72.2	5	합성수지	840	-9.1
6	선박	704	-62.4	6	제트유 및 등유	659	-21.4
7	평판디스플레이	599	-6.5	7	경유	420	75.9
8	개별소자반도체	396	14.8	8	전산기록매체	384	209.9
9	광학기기부품	334	33.5	9	개별소자반도체	383	-3.4
10	축전지	317	-4.9	10	축전지	366	15.8
총계		39112	19.3			45996	17.6

주: 1. MTI 4단위 기준<sup>12)</sup>

2.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kts/ctr/CtrItem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19. 8. 29.

- 2018년 우리나라의 對 홍콩 10대 주요 수입품은 집적회로반도체, 금, 뱀장어, 컴퓨터부품, 동괴 및 스크랩, 전산기록매체, 개별소자반도체, 그림, 무선통신기기부품, 기타 플라스틱제품임

12) MTI 기준 품목분류는 대(1자리), 중(2자리), 소(3자리), 세(4자리), 세세(6자리)분류의 5단계의 분류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별품목의 가공단계를 반영한 상품분류인 HS분류 및 SITC분류를 보완하여 수출입 품목 분류 시 산업분류를 반영한 상품분류로써 활용도 상승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음

- 2017년에 비해 2018년에는 특히 그림의 수입 증가율이 약 156.5%로 가장 높았으며 개별소자반도체, 뱀장어, 동괴 및 스크랩 또한 각각 약 67.5%, 약 49.9%, 약 34.1%의 증가율을 보임
- 그러나 10대 수입품 중 무선통신기기부품, 기타플라스틱제품, 전산기록매체, 금은 2017년에 비해 각각 약 29.2%, 약 28%, 약 7.9%, 약 6.7%의 감소율을 보임

〈표 1-Ⅲ-3〉 2017/2018년 우리나라의 對 홍콩 수입품목

(단위: 억달러, %)

2017				2018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
1	집적회로반도체	785	63.0	1	집적회로반도체	933	18.8
2	금	185	17.6	2	금	172	-6.7
3	컴퓨터부품	111	10.1	3	뱀장어	118	49.9
4	뱀장어	78	-21.4	4	컴퓨터부품	112	1.3
5	무선통신기기부품	50	-31.6	5	동괴 및 스크랩	51	34.1
6	전산기록매체	50	62.1	6	전산기록매체	46	-7.9
7	동괴 및 스크랩	38	-17.0	7	개별소자반도체	45	67.5
8	평판디스플레이	38	140.8	8	그림	37	156.5
9	선박	33	90.0	9	무선통신기기부품	36	-29.2
10	기타플라스틱제품	29	-31.4	10	기타플라스틱제품	21	-28.0
총계		1,879	16.4			1,997	6.3

주: 1. MTI 4단위 기준<sup>13)</sup>

2.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kts/ctr/CtrlItem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19. 8. 29.

13) MTI 기준 품목분류는 대(1자리), 중(2자리), 소(3자리), 세(4자리), 세세(6자리)분류의 5단계의 분류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별품목의 가공단계를 반영한 상품분류인 HS분류 및 SITC분류를 보완하여 수출입 품목 분류 시 산업분류를 반영한 상품분류로써 활용도 상승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음

## IV.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 1. 무역협정 체결 현황

- 중국 이외에도 홍콩은 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음<sup>14)</sup>
  - 홍콩은 지속적으로 FTA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한국과의 FTA도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
  - 지역경제 협력도 홍콩정부가 중요시하는 정책 중의 하나로 APEC 회원국으로써 홍콩 무역의 83%가 APEC 회원국과의 거래라는 점을 고려하면 APEC은 홍콩에서 매우 중요성이 높은 지역경제 협력 체제임
  
- 홍콩 중국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CEPA)는 200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상품과 용역, 모든 분야에서 중국시장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음
  - 본 협정에 따라 중국 홍콩 수출품의 90%(보석, 화장품, 섬유제품, 의류, 시계 및 기계부속품 등 홍콩의 대중국 수출품), 273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게 되었음

---

14) 외교통상부, 「아시아, 대양주」, 『2017년 외국의 통상환경』,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 2017. 12, p. 627.

- 또한 관리컨설팅, 전람회컨설팅, 광고, 법률, 회계서비스, 일반의료·치과의, 부동산·건설, 운수서비스, 소매, 물류, 화물운송, 창고서비스, 관광, 시청각, 은행, 증권, 보험업 등 17개 서비스 분야의 진출 장벽이 점차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하였음
- 홍콩 마카오 CEPA<sup>15)</sup>는 상품 및 서비스를 비롯하여 지식재산권, 투자, 경제기술 협력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FTA라고 볼 수 있음
- 홍콩과 마카오는 CEPA에 의해 양 국가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무관세가 적용되며 WTO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수입 쿼터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
  - 홍콩과 마카오는 자유무역항이므로 몇몇의 품목을 제외하고 CEPA 체결 이전부터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었음
  - CEPA로 인하여 관세 효과가 있었다기보다는 중국-홍콩 CEPA, 홍콩-마카오 CEPA, 중국-마카오 CEPA를 통해 주장 삼각주의 경제적인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음
- 홍콩-뉴질랜드의 CEPA는 2010년 3월에 발효되었으며 환경 및 노동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통신·교육·물류·해운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에서의 교역을 자유화하기로 합의함<sup>16)</sup>
  - 홍콩-뉴질랜드 CEPA는 홍콩 정부가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와는 처음으로 체결한 CEPA로 다른 나라와 관련협정을 체결할 때 시발점으로써의 의의를 가짐
  - 뉴질랜드는 홍콩의 모든 재화에 대한 수입세를 2016년까지 철폐하였음

15)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로 시장 개방보다는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실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차이가 없음

16) 외교통상부, [http://overseas.mofa.go.kr/hk-ko/brd/m\\_1506/view.do?seq=893400&srchFr=&srchTo=&srchWord=cepa&srchTp=0&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http://overseas.mofa.go.kr/hk-ko/brd/m_1506/view.do?seq=893400&srchFr=&srchTo=&srchWord=cepa&srchTp=0&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검색일자: 2019. 8. 22.

- EFTA와 홍콩 간 FTA 협정은 2010년 1월에 시작하였으며 약 14개월의 협상기간을 거쳐 지난 3월 타결되었음<sup>17)</sup>
  - FTA 협정의 범위가 광범위한 편으로 일반재화(공산품, 가공농산물, 어류, 기타 수산물), 용역, 투자, 지적재산권 보호, 정부조달, 공정경쟁, 환경, 근로기준 등 다양한 부분을 포괄하고 있음
  - 특히 유럽 측은 중국과의 FTA를 전제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FTA 논의의 핵심이라고 통보한바 있음
  
- 홍콩과 칠레 FTA는 2012년 9월 APEC 포럼 정상회의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번 양국은 제품, 서비스, 원산지, 관세협정, 위생 및 식물위생측정, 기술 장벽, 정부조달, 무역장벽, 재정서비스 등 전반적인 무역 분야를 통합하게 됨<sup>18)</sup>
  - 칠레는 제품의 88%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2.3%의 관세만을 예외로 부과하게 되었음
  - 양국은 또한 노동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합의하였음
  
- 홍콩-ASEAN FTA는 상품 및 서비스를 비롯하여 투자, 경제기술협약, 지식재산권 등을 모두 통합하고 있음
  - 참여한 ASEAN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0개 국가임
  -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홍콩과 ASEAN 회원국은 상호 관세 철폐·인하에 동의하며, FTA의 발효시점 및 관세 철폐·인하 정도는 회원국별로 차이가 있음<sup>19)</sup>
    - 싱가포르는 FTA 발효일자로부터 전면 관세 철폐에 합의함

17) 관세법인우신, [http://www.wscustoms.co.kr/customer/View\\_2.htm?BOARDKIND=FTANews&B\\_IDX=105](http://www.wscustoms.co.kr/customer/View_2.htm?BOARDKIND=FTANews&B_IDX=105), 검색일자: 2019. 8. 21.

18) 농식품수출정보,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29767&menu\\_dept2=35&menu\\_dept3=71](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29767&menu_dept2=35&menu_dept3=71), 검색일자: 2019. 8. 20.

19) 한국무역협회, <https://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pageIndex=1&type=0&nIndex=1789371>, 검색일자: 2019. 8. 21.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은 10년 내에 85%의 관세를 철폐하고, 14년 내에 10%의 추가 관세 인하에 동의함
-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10년 내에 75%의 관세를 철폐하고, 14년 내에 10%의 추가 관세 인하에 동의함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15년 내에 65%의 관세를 철폐하고, 20년 내에 추가 관세 인하에 동의함
- 홍콩은 FTA 발효일자 이후 ASEAN 회원국을 원산지 인정받는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 적용에 합의함

〈표 1-IV-1〉 홍콩의 무역 관련 협정 체결 현황

협정	체결일	발효일
중국 및 홍콩 CEPA(Mainland and Hong Kong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2003-06-29	2004-01-01
홍콩 및 중국과 뉴질랜드 CEPA(Hong Kong, China : New Zealand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010-03-29	2011-01-01
홍콩 및 중국과 EU국가 간 FTA(Free Trade Agreement between Hong Kong, China and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Free)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2011-06-21	2012-10-01
홍콩 및 중국과 칠레 FTA(Free Trade Agreement between Hong Kong, China and Chile)	2012-09-07	2014-10-09
홍콩특별행정구역 및 마카오특별행정구역 CEPA(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Macao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2017-10-27	2018-01-01
홍콩 및 중국과 ASEAN FTA(Free Trade Agreement between Hong Kong, China and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	2017-11-12	2019-01-01
홍콩 및 중국과 조지아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Hong Kong, China and Georgia)	2018-06-28	-

자료: 홍콩무역산업부, <https://www.tid.gov.hk/english/cepa/index.html>, 검색일자: 2019. 8. 19.



## 2. 논의 중인 무역협정

- 홍콩은 8번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호주와 2017년 5월 FTA협상을 시작하여 2018년 11월에 협의 내용을 완성했고 2019년 3월 26일 상품 무역협정 및 투자 협정에 대해서만 서명하였음
  
- 협정 발효 후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무관세이며 양국 해관의 통관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임<sup>20)</sup>
  - 호주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원산지 증명 없이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홍콩 원산지 제품은 간이 통관을 통해 호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특히 무역의 기술적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및 식품동식물검역규제(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관련 협정을 체결하여 향후 포도주 및 식품 무역을 촉진시킬 예정임
  - 홍콩 및 호주 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지 서비스 제공자와 차별 없는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됨
  - 호주는 홍콩에서 발전 가능 산업인 전문 서비스(중재, 조정 등 서비스), 상업, 운송, 금융, 통신 분야 서비스를 이번 FTA 협정을 통해 기회를 제공할 예정임
  - 홍콩과 호주는 1993년 이미 투자 협정을 맺었으며 FTA 투자 협정은 1993년 협정을 대신할 예정임
  
- 홍콩과 몰디브의 FTA는 2016년 5월 6일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기타 진행 사항 없이 협상이 종료된 상황임

---

20) KOTRA,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4730&searchNationCd=101133>, 검색일자: 2019. 8. 29.

### 3. 기타 협정

- 홍콩은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본국 또는 외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국가 간 협정인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한 국가는 중국,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브루나이, 캐나다, 체코, 프랑스, 건지, 헝가리,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쿠웨이트,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중국, 말레이시아, 몰타,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파키스탄,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태국, 아랍에미리트, 영국, 베트남, 한국 등임
  - 홍콩은 한국과의 조세협약이 없어 역외탈세 및 불법외환거래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음
  - 2016년 9월 한국과 홍콩과의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타결되어 홍콩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를 확보를 비롯하여 특히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음<sup>21)</sup>
- 홍콩은 현재 21개국과 민간 기업의 국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인 투자보존협정(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s)을 체결하였음<sup>22)</sup>
  - 본 협정은 자유로운 자본주의적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업수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해외 위험을 회피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 이전단계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음

2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mob.tbsi.hometax.go.kr/new/taxation\\_k.jsp?menuItem=20192](https://mob.tbsi.hometax.go.kr/new/taxation_k.jsp?menuItem=20192), 검색일자: 2019. 8. 22.

22) 홍콩무역산업부, <https://www.tid.gov.hk/english/ita/ippa/index.html>, 검색일자: 2019. 8. 22.

34 제1편 개관

- 협약국은 ASEAN, 호주,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연합, 캐나다, 칠레,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쿠웨이트,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태국, 영국 등임
  
- 아랍 에미리트와는 협약이 체결되었으나 발효 대기 중이고 그 밖에 이란, 러시아, 터키와 협약 체결 진행 중에 있음

## 제2편 통관제도

### I. 통관 관련 조직 및 관련법

#### 1. 해관행정조직

##### 가. 해관행정조직 개요<sup>23)</sup>

- 1909년에 설립된 홍콩해관(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은 독립외청으로써 해관장은 홍콩행정수반에 의해 임명되며 단일 세관이므로 세관에 해당하는 중앙 조직만으로 존재하고 있음
- 홍콩해관의 역사를 살펴보면 1982년 관세·소비세국이 무역산업부(Trade and Industry Department)로부터 독립하며 해관의 시초가 되었음
  - 1949년 수출입관리 및 공급부(Import and Export Management and Supplies Department), 무역 및 산업부(Trade and Industry Department)가 무역 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로 통합되었음

---

23)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외국 관세행정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 2017. 3, pp. 99~100.

- 1962년에 국세청(Revenue Service)이 설립되었고, 1977년 홍콩 관세·소비세국(Hong Kong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 홍콩해관은 재무장관(Financial Secretary) 산하의 안보행정장관(Secretary for Security)의 감독을 받고 있음
- 재무부는 투자, 지적 재산권 집행, 상업 관련, 관광, 소비자 보호, 시장 경쟁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며 홍콩해관은 집행과 관련된 행정업무(administration)를 담당함
- 단 정보조사부(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Branch)에서 집행과 정책과 전략입안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기도 함
  
- 홍콩해관 조직은 살펴보면 일선의 세관조직 개념으로 홍콩해관 부해관장 감독하의 공항과(Airport Command), 공항과(Airport Command), 국경연결과(Cross-boundary Bridge Command), 육로 경계과(Land Boundary Command) 항만 및 해역과(Ports and Maritime Command), 철도 및 페리과(Rail and Ferry Command) 등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본부 직할체제이며 공항, 항만, 도로, 철도 등 통관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통제사무소(Control Point)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홍콩해관의 미션은 다음과 같음<sup>24)</sup>
  - 밀수를 방지하고 홍콩 특별행정 구역을 보호함
  - 과세물품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 보호함
  - 마약 및 약물 밀매 및 약물의 남용의 탐지 및 예방
  - 지적 재산권의 보호
  - 소비자 권익 보호
  - 국제적인 의무 이행
  - 합법적인 무역 및 홍콩의 거래 완전성을 보장하는 무역의 보호

24)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about\\_us/vision/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about_us/vision/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18.

## 나. 해관행정조직의 역할<sup>25)</sup>

- 홍콩해관은 해관장(Commissioner; 이하 해관장)과 부해관장(Deputy Commissioner), 5명의 처장(Assistant Commissioner), 무역 통제관(Trade Control Officer: 이하 무역통제관)으로 이루어져 있음<sup>26)</sup>
  
- 무역 통제관은 무역 통제 및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며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음<sup>27)</sup>
  - 전략물품, 보호품 및 기타 금지 품목의 이행 통제
  - 본토와 홍콩의 경제 협력협정에 따라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를 포함하여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업무
  - 다음과 관련된 소비자 권리보호법의 시행을 담당함
    - 무게와 측정
    - 장난감, 어린이용 제품 및 소비재
    - 상품의 제품 설명
    - 귀금속, 옥, 다이아몬드 공급 및 전자제품 규제
  - 외환 서비스 운영자 감독
  - 수출입 신고서 검토
  - 의류 산업 교육 부과금 및 신고금 수금
  
- 홍콩해관장, 해관 감독관(Superintendent), 해관 검사장(Inspectorate Grade), 해관 직원(Customs Officer)은 제342장 「홍콩세관 조례(香港海關條例, Customs and Excise Service Ordinance)」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sup>28)</sup>
  - 밀수 파악 및 방지
  - 과세 물품 보포 및 세금징수

25)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외국 관세행정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 2017. 3, pp. 99~100.

26)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about\\_us/structure/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about_us/structure/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18.

27)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about\\_us/grades/tco/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about_us/grades/tco/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5.

28)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about\\_us/grades/ces/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about_us/grades/ces/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2.

- 약물 남용 및 약물 밀매 방지 및 통제 약물 남용 방지
  - 지적 재산권 보호
  - 합법적 무역 촉진, 홍콩 비즈니스와 산업보호 등
  - 특히 해관직원 및 해관 검사장은 주로 수입 보호 및 소비세 징수, 마약 방지, 밀수 방지 및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법 집행 활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행하고 있음<sup>29)</sup>
- 그 밖에 보조 무역 관리 책임자는 주로 제품 안전, 거래 설명 및 공정 거래를 포함하여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것을 담당함
- 원산지 증명서, 금지 물품에 대한 수입 및 수출 라이선스, 수입 및 수출 신고를 검사함
  - 원산지 인증 시스템(Certification of Origin System)에 따라 공장 등록 및 인증서 신청과 관련된 구내 및 운영 검사를 담당함
  - 출입국 관리 지점 또는 기타 구내에서 수입 또는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화물 검사를 수행함
  - 수입 및 수출 신고를 확인하고 신고 수수료 및 의류 산업 교육 부과금 징수를 위한 수입 및 수출 위탁품의 가치를 평가함
  - 금융 사업자에 대한 라이선스 및 규제작업 수행자금 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를 담당함
- 홍콩해관본부는 5개 부처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sup>30)</sup>
- 행정 및 인력자원 발전처(Administr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Branch)
    - 기획관리, 행정관리, 조달 및 배정, 법무관실, 소비세 관련 기소 등

29)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about\\_us/recruitment/inspector/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about_us/recruitment/inspector/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2.

3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외국 관세행정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 2017. 3, pp. 9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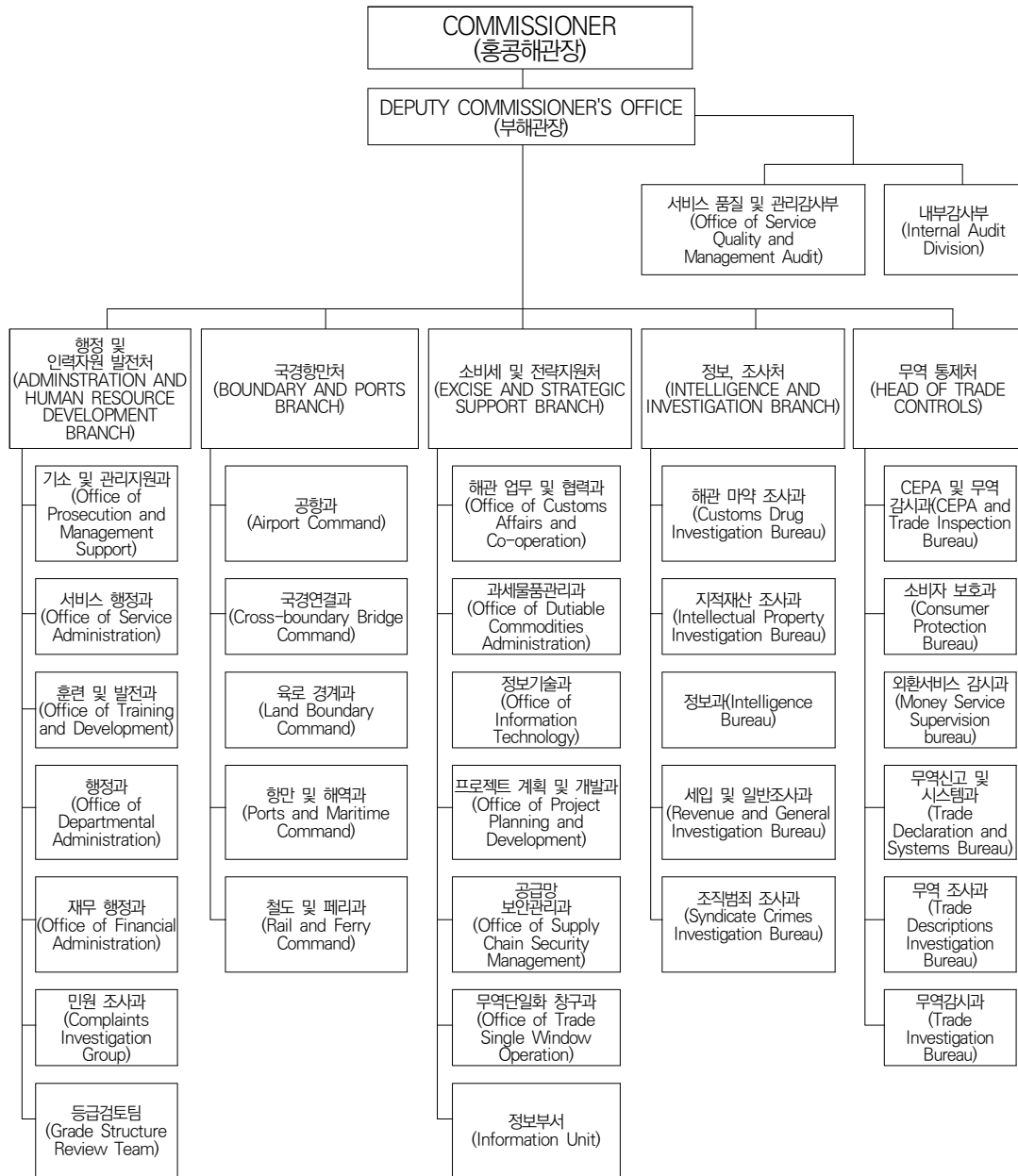
- 인사관리 및 채용, 복지후생, 신참자 및 제복관리, 청사관리, 무기 및 실탄관리, 민원실
- 직무훈련, 해관 훈련센터 지휘
- 내무행정 인사, 일반 행정, 번역
- 세수징수, 지출 및 재정정책, 예측, 물품관리
- 국경 항만처(Boundary and Ports Branch)
  - 공항, 육로, 국경, 항만, 해역, 철도, 페리 등의 통관 및 감시업무 담당
  - 공항에서의 마약류, 화기, 금지 무기, 밀수 적발 및 예방, 여객 및 화물 통관
  - 4개 내륙지 해관(Lok Ma Chau, Mankanto, Shataukok, Lowu)의 통관 및 조사업무 수행
  - 홍콩항(카이청 터미널과 칭이 터미널)의 통관 및 조사업무 수행, 화물 통관
- 소비세 및 전략 지원처(Excise and Strategic Support Branch)
  - 세무·전략 지원처는 재무국(Finance Bureau)의 소관사항인 과세물품 업무와 해관 업무 및 협력정보기술프로젝트 계획 공급망 보안관리 등 홍콩해관의 업무에 대한 전략적 지원업무를 담당함
- 정보, 조사처(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Branch)
  - 무역조사업무를 제외한 조사업무를 담당
  - 마약조사, 외환, 밀수 조사, 세입조사, 지적재산권 보호(홍콩유일의 담당기관), 저작권보호 및 위조 상품에 대한 법규집행, 위조 및 지적권 위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 탈세 정보 수집 및 조사
  - 조직범죄의 지휘체계 추적 및 범죄 주동자 체포 및 강력한 범죄억제 효과를 위해 관련자의 자산을 몰수할 수 있음
- 무역 통제처(Head of Trade Controls)
  - CEPA 및 무역 감시, 외환서비스 감시, 섬유류수출규제 및 상무성 소관 요건 확인



#### 40 제2편 통관제도

- 불량 장난감 유통, 화장품 및 의약품 안전 검사 및 불량품 유통 검사 등 소비자 보호
- 섬유류쿼터 및 원산지조작에 대한 수사
- 완구 안전도 등 소비자 보호, 중량 등 계측에 대한 통제, 귀금속제조 명령, 해외무역에 대한 불만사항 중재, 보류화물에 대한 통제, 기소 및 범무업무
- 홍콩해관은 홍콩의 무역 완전성에 중요한 인증 및 면허시스템을 보호하며, 사기 범죄를 저지하고 조사. 또한 라이선스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전략물자 및 기타 금지 물품의 수출입 사례를 조사
- 홍콩해관은 세계관세기구(WCO)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해외 관세청과 법 시행 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한 업무를 하고 있음
- 행정 공조에 관한 다른 해관 당국자들과 양자 협력 관계로 행정 공조 업무를 수행하며, 본토 해관은 직통 전화를 통한 정보 교환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각각 지정된 연락처 연락 사무관을 임명함

[그림 2-1-1] 2019년 홍콩해관 조직도



자료: 홍콩해관, [www.customs.gov.hk/tc/about\\_us/structure/index.html](http://www.customs.gov.hk/tc/about_us/structure/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1. 및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외국 관세행정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 2017. 3.

## 2. 통관 관련 법<sup>31)</sup>

- 홍콩 최상위 법은 기본법(The Basic Law)으로 홍콩 정치·경제·사회 체계 등 헌법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 「홍콩기본법」은 홍콩특별행정구역의 성립 기반이 되는 법으로 1990년 4월 4일 제정되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홍콩기본법」은 1984년 12월 19일 중국과 영국 간 체결된 홍콩 반환 협정의 근본 원칙인「1국 2체제」를 명문화하고 있음
  
- 기본법을 바탕으로 제정된 홍콩 성문법령(The Laws of Hong Kong)에서 1181개의 법령이 Chapter로 구분되어 있음
  
- 홍콩의 수출입 통관 및 세금 관련 법령은 「수출입 조례(Import and Export Ordinance), 「과세물품조례(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 「해관조례(Customs and Excise Service Ordinance)」이며, 동 3조례의 하위 규정으로 24개 규칙이 있음<sup>32)</sup>
  
- 제60장 「수출입 조례」는 홍콩을 드나드는 항공기·선박·여객선과 홍콩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수색할 수 있는 권한, 홍콩에 들어오거나 홍콩을 거쳐 가는 화물에 대한 단속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sup>33)</sup>
  - 1971년 1월 1일에 제정된 이래 1997년 중국령으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왔으며 2019년 현재 총 8부 42조로 구성되어 있음

31) 외교통상부, [http://www.mofa.go.kr/www/brd/m\\_4049/view.do?seq=35060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http://www.mofa.go.kr/www/brd/m_4049/view.do?seq=35060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검색일자: 2019. 8. 11.

32) 외교통상부, [http://www.mofa.go.kr/www/brd/m\\_4049/view.do?seq=35060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http://www.mofa.go.kr/www/brd/m_4049/view.do?seq=35060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검색일자: 2019. 8. 11.

33) 세계법제정보센터, 『홍콩 수출입 관련 법령 및 제도』, 2015. 2. 6, p. 6.

- 홍콩 세관의 업무 내용, 업무와 관련된 세관원의 권리, 수출입 절차, 구제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홍콩에 수출입 물품에 대한 규제, 기 수입된 물품의 취급 및 운송, 그리고 기 수출된 물품의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에 따라 홍콩 세관은 수출입 화물에 대한 물리적 검사, 수출입 정보 검증 및 면허 확인, 정보 및 통계 자료 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 위반에 대한 조사와 단속 등의 권한을 가짐

〈표 2-1-1〉 홍콩 제60장 수출입 조례체계

목차	내용
제I부 머리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물운반구역 허가</li> <li>• 제403장 오존층보호 조례 내용 및 적용</li> </ul>
제II부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특별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하여 송출하는 자료에 관한 내용</li> <li>• 보안장치에 대한 적절한 보관</li> <li>• 지정대리인의 책임</li> </ul>
제II부 행정결정 및 상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장의 허가증 발급, 취소, 철회, 잠정 말소에 관한 참작 결정권</li> <li>• 세관장이 수권자에게 위임하는 권한</li> <li>• 위임받은 자</li> <li>• 세관장, 서장, 그 밖의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행정장관의 지시</li> <li>• 행정장관에 대한 상소</li> </ul>
제IIA부 일부 수출방직품의 생산통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통지서의 제출 및 인가</li> <li>• 서장의 생산통지서 인가에 관한 참작결정권</li> </ul>
제III부 운송금지물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물품의 수출입 제한</li> <li>• 제6A조의 시행을 위해 서장이 내리는 명령 등</li> <li>• 일부 운송금지물품의 수출입 제한</li> <li>• 홍콩수역에서 지정물품의 운반 등의 제한내용</li> <li>• 제6C조에서 제6E조를 시행하기 위해 서장이 내린 명령 등</li> <li>• 운송금지물품의 수입 후 취하게 되는 제대</li> <li>• 서장에 제출하는 수입허가증 및 화물적하명세서</li> </ul>

〈표 2-1-1〉의 계속

목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운송 화물에 대해 수입허가증 및 화물적하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경우</li> <li>• 운송업자 허가증이 없는 운송금지물품을 적하하여 수출하는 행위의 금지</li> <li>• 서장에 제출하는 허가증 및 화물적하명세서</li> <li>• 서장이 사용하거나 세관장에 제출할 권리가 있는 화물 적하명세서</li> <li>• 운송금지물품의 조사 및 물품의 저장</li> <li>• 소유인이 없는 운송 금지물품에 대한 신청 및 향후 처리</li> </ul>
제IV부 표시가 없는 화물 및 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수를 위한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개조</li> <li>• 밀수를 위한 선박의 개조 등</li> <li>• 모든 화물의 세부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li> <li>• 선박 등에 화물을 방치하는 행위의 금지</li> <li>• 모든 화물은 반드시 화물적하명세서에 기록되어야 함</li> <li>• 표시가 없는 화물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행위</li> <li>• 표시가 없는 화물의 수출 협조 등</li> <li>• 항구 정박을 위해 제출하는 세관장에 제출해야 하는 서면 명단</li> </ul>
제V부 조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원과 같은 관리자의 일반적인 권한</li> <li>• 수입자의 신원 확인 전 화물 이동 금지</li> <li>• 선박 등에서 화물을 이동하여 검사에 제공하는 것에 관한 규정</li> <li>• 세관원과 같은 관리자의 특별 권한</li> <li>• 세관원과 같은 관리자의 특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한</li> <li>• 수권 받은 자 및 세관원의 체포권</li> <li>• 범죄와 관련되는 행위를 조사하는 추가적인 권한</li> <li>• 장소 혹은 선박 등의 봉쇄, 봉인 및 봉인 용지 부착</li> <li>• 세관원과 같은 관리자 방해</li> </ul>
제VI부 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하여 압류된 물품몰수 가능 여부</li> <li>• 몰수 신청에 대한 재결</li> <li>• 청문 전 검사하여 압류된 선박 및 차량에 대한 반환</li> <li>• 훼손이 용이한 물품들을 처리하는 권한</li> <li>• 상소 시 집행명령을 보류하는 경우</li> <li>• 몰수한 물품 등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li> </ul>
제VII부 규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례를 제정하는 권한</li> <li>• 입법회 결의안 통과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는 권한</li> </ul>

〈표 2-1-1〉의 계속

목차	내용
제VIII부 그 밖의 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중 확실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의 자료 제공</li> <li>• 도로 차량이 운송하는 화물과 관련된 화물적하명세서에 대한 자료 제공</li> <li>• 증거제출</li> <li>• 지정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송출하는 자료의 기록증명서</li> <li>• 법정절차 중의 입증책임</li> <li>• 우편소포에 대한 이 조례의 적용</li> <li>• 금지물품의 운송 협조 등</li> <li>• 허가증, 생산통지서 등에 관한 범죄행위</li> <li>• 법인이사, 조합원 등의 범죄행위</li> <li>• 형사 법적절차의 제기 시 행정장관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 경우</li> <li>• 보안장치의 사용 및 보관과 관련된 범죄행위</li> <li>• 지정 대리인의 범죄행위</li> <li>• 형사 법적절차 제기에 대한 시간제한</li> <li>• 고발인</li> <li>• 별표의 개정</li> <li>• 일반 보상</li> <li>• 「수출입 조례(1993년 개정본)」에 기록된 효력발생일자 전에 이 조례에 근거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물품</li> <li>• 경과 조문</li> </ul>

자료: 세계법제정보센터, 『홍콩 수출입 관련 법령 및 제도』, 2015. 2. 6, pp. 6~9.

□ 「제60장 수출입 조례」의 하위 규례에는 수출입(일반)규례, 수출입(비용)규례, 수출입 적하목록 공고 수출(증명물품) 규례, 수출입(등록)규례, 수출입(이송물품)규례, 수출입(전략물품)규례, 수출입(원산지 증명)규례, 수출입(적재물품)규례, (방사능) 수입(금지) 규례, 수출입 (전자화물정보) 규례 등이 있음<sup>34)</sup>

□ 「제60A장 수출입 (일반) 규례(進出口(一般)規例, Import and Export(General) Regulations)」는 수입허가, 수출허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34) 세계법제정보센터, 『홍콩 수출입 관련 법령 및 제도』, 2015. 2. 6, p. 10.

- 수출입 허가의 적용범위 및 수출입 허가 면제사유, 통제대상, 전자기록에 대한 형식, 수출입과 관련된 화물운송 선박·항공·차량, 입출국 신고서, 수출입 허가증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60B장 수출입 (비용) 규례(進出口(費用)規例, Import and Export(Fees) Regulations)」는 수출입 비용 증명을 위한 서류 및 수수료 비용 그리고 수수료 납부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sup>35)</sup>
- 제60C장 수출입 적하목록 공고(進出口艙單公告, Import and Export Manifests Notice)는 수출입 적하목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sup>36)</sup>
  - 해당 수량, 총중량, 개별포장단위, 식별번호, 운송자, 위탁자 이름, 운송자 주소 운송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이름, 출발일 및 항해일, 항공편 또는 차량 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 내용이 수입허가증과 수출허가증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제60장 수출입 조례」의 제17조 모든 화물 및 그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명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국제연합(UN)에서 합의한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1985)」과 「1987년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1987)」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홍콩은 「제403장 오존층 보호에 관한 조례(Ozone Layer Protection Ordinance)」를 별도로 제정하였으며 본 규례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35) 「수출입비용규례」 제60B장,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B!en?INDEX\\_CS=N](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B!en?INDEX_CS=N), 검색일자: 2019. 9. 5.

36) 수출입 적하목록 공고 제60C장,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C!en?INDEX\\_CS=N](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C!en?INDEX_CS=N), 검색일자: 2019. 9. 5.

- 「제60D장 수출 (증명물품) 규례(出口(訂明物品)規例, Export (Prescribed Articles) Regulations)」는 1990년에 제정되었으며, 증명이 면제되는 물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sup>37)</sup>
  - 홍콩을 종점으로 하여 일부여객선(홍콩-마카오, 홍콩-중국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은 수하물 증명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60E장 수출입 (등록) 규례(進出口(登記)規例, Import and Export (Registration) Regulations)」는 수출입 신고절차, 수출입 신고면제품, 수출입 화물 선적 목록 등 신고 시 발생하는 수수료, 수출입 신고 위반에 대한 벌칙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sup>38)</sup>
  - 1966년 제정되었으며 이후 개정 및 정비 작업에 따라 「수출입 (수출입 화물 등록) 규례(Importation and Exportation(Registration of Imports and Exports) Regulation)」라는 명칭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음<sup>39)</sup>
  
- 「제60F장 수출입 (이송물품) 규례(進出口(移離物品)規例, Import and Export (Removal of Articles) Regulations)」는 수입업자에 공식적으로 통지하기 전 물품의 이송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sup>40)</sup>
  - 검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물품을 이송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이름, 선박의 경우 이름과 항해 번호(있는 경우), 항공기의 경우 항공편 번호, 차량의 경우 등록 또는 식별 번호 및 차량이 열차인 경우 왜건 번호(존재하는 경우), 홍콩 도착 일 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37) 「수출증명물품규례」 제60D장,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D!en?INDEX\\_CS=N&xpid=ID\\_1438403523395\\_004](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D!en?INDEX_CS=N&xpid=ID_1438403523395_004), 검색일자: 2019. 9. 3.

38) 「수출입등록규례」 제60E장,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E!en?INDEX\\_CS=N](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E!en?INDEX_CS=N), 검색일자: 2019. 9. 3.

39) 세계법제정보센터, 『홍콩 수출입 관련 법령 및 제도』, 2015. 2. 6, p. 11.

40) 「수출입이송물품규례」 제60F장,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F!en?INDEX\\_CS=N&xpid=ID\\_1438403523707\\_002](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F!en?INDEX_CS=N&xpid=ID_1438403523707_002), 검색일자: 2019. 9. 3.



- 「제60G장 수출입 (전략물품) 규례(進出口(戰略物品)規例, Import and Export (Strategic Commodities) Regulations)」는 화학물이나 총기와 같은 전략물자의 항목을 명시하고 있음<sup>41)</sup>
  
- 「제60H장 수출 (원산지 증명) 규례(出口(產地來源證)規例, Export (Certificates of Origin) Regulations)」는 홍콩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신고 및 이에 따른 홍콩해관의 증거요청 권리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sup>42)</sup>
  - 홍콩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만 해당되며 외국에서 홍콩으로 수입하여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련 의무가 면제됨
  - 1961년 제정되어 이후 폐지된 1966년 「수출입 조례」의 내용을 계승하였고 별도 규례로서 효력을 가짐<sup>43)</sup>
  
- 「제60I장 수출입 (적재물품) 규례(進出口(運載物品)規例, Import and Export(Carriage and Articles) Regulations)」는 물품의 운송자가 기재해야 할 물품의 식별번호 및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와 운송 목적 확인 및 적하물품의 운송 약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sup>44)</sup>
  - 운송 허가를 받기 위해 물품적하목록, 항목 및 수량, 선적 및 하역 항목의 위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60K장 (방사능)수입(금지)규례(進口(輻射)(禁止)規例, Import (Radiation) (Prohibition) Regulations)」는 일정 수치 이상인 방사성 물질을 허가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sup>45)</sup>

41) 「수출입전략물품규례」 제60G장,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G!zh-Hant-HK>, 검색일자: 2019. 9. 4.

42) 「수출원산지 증명규례」 제60H장,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H>, 검색일자: 2019. 9. 3.

43) 세계법제정보센터, 『홍콩 수출입 관련 법령 및 제도』 2015. 2. 6, p. 12

44) 「수출입적재물품규례」 제60I장,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I!en@2004-01-08T00:00:00?INDEX\\_CS=N](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I!en@2004-01-08T00:00:00?INDEX_CS=N), 검색일자: 2019. 9. 3.

- 또한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벌, 해관장의 수입금지 권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60L장 수출입 (전자화물정보) 규례(進出口(電子貨物資料)規例, Import and Export (Electronic Cargo Information) Regulation)」는 화물에 대한 정보(운송수단, 통관번호 등)를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규정함<sup>46)</sup>
  - 정보의 저장, 차량담당자에 대한 해관번호 발급, 해관에서 발급된 번호와 다른 차량에 대한 처리, 화물정보제공 면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제109장 과세물품 조례(應課稅品條例, 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는 과세 대상 물품, 물품에 대한 허가 및 해관의 통제, 해당 품목에 부과되는 종가세 산출 방식 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sup>47)</sup>
  - 홍콩에서 과세물품으로 명시하는 품목은 주류(Liquor), 메틸알코올(Methyl Alcohol), 담배(Tobacco), 탄화수소계 오일(Hydrocarbon Oil)이며 하위 규례에서 각 물품에 대한 세부적인 부과 내용 및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342장 홍콩세관 조례(香港海關條例, Customs and Excise Service Ordinance)」는 홍콩세관의 설치, 담당 업무, 세관장의 권한, 조직 구성, 소비세 시스템, 공무원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세관원이 공격을 받았을 때 처리 내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sup>48)</sup>

45) 「방사능수입금지규례」 제60K장,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K!en?INDEX\\_CS=N](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K!en?INDEX_CS=N), 검색일자: 2019. 9. 7.

46) 「수출입전자화물정보규례」 제60L장,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L!en?INDEX\\_CS=N](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L!en?INDEX_CS=N), 검색일자: 2019. 9. 7.

47) 「과세물품조례」 제109장,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zh-Hant-HK>, 검색일자: 2019. 9. 7.

48) 「홍콩세관조례」 제342장,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342!zh-Hant-HK>, 검색일자: 2019. 9. 7.

- 「제296장 비축 상품 조례(儲備商品條例, Reserved Commodities Ordinance)」는 도매 및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비축하는 상품에 대한 통제 및 관련된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몰수, 압류 등 세관담당자들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sup>49)</sup>
- 「제296A장 비축 상품(수출입 상품 및 비품 관제) 규례(儲備商品(進出口及儲備存貨管制)規例, Reserved Commodities(Control of Imports, Exports and Reserve Stocks) Regulations)」는 수출입 및 비품의 관리 및 통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sup>50)</sup>

### 3. 기타 관련 기관<sup>51)</sup>

- 홍콩의 무역정책 및 산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기구는 CEDB(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 Bureau)로 정책의 입안과 조정을 담당하고 있음
- 무역 및 산업부(Trade and Industry Department)는 무역정책 및 산업정책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음
- 경제 및 무역 사무소(Economic and Trade Office: 이하 ETO)는 해외주재 홍콩정부 기관으로 홍콩과 다른 국가 간 경제협력을 담당하고 있음
  - 중국 본토 내 5개를 포함하여 각국에 18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음
  - 경제협력을 위한 기구이나, 홍콩정부는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ETO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영사관이나 대사관과 유사한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 주재하는 ETO 직원의 경우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

49) 「비축상품조례」 제296장,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296/en?INDEX\\_CS=N](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296/en?INDEX_CS=N), 검색일자: 2019. 9. 7.

50) 「수출입 상품 및 비품 통제규례」 제296A장,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296A/en?INDEX\\_CS=N](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296A/en?INDEX_CS=N), 검색일자: 2019. 9. 8.

51) 외교통상부, 「아시아, 대양주」, 『2017년 외국의 통상환경』,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 2017. 12, pp. 628~629.

- 홍콩 무역개발의회(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는 수출 진흥을 위한 민간기구로 홍콩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전람회 등의 기획과 해외 시장정보 수집 및 전파하는 기구이며 우리나라의 무역투자진흥공사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홍콩 상공회의소(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 HKGCC)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여 지식이나 정보 공유를 위한 포럼 개최를 비롯하여 연구사업, 비즈니스 매칭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홍콩상공회의소(HKGCC)는 1861년 설립된 가장 오래되고 큰 규모를 가진 재계의 그룹이며 홍콩뿐만 아니라 중국 및 해외기업들도 대상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 홍콩 중화 총상회(Hong Kong Chinese General Chamber of Commerce: HKCGCC)는 900년도에 설립된 홍콩 국내외 화교 사업가들 위주의 상공회임
  - 특히 중화 총상회 회장은 한국과 홍콩기업 간 무역과 투자촉진을 위한 한·홍콩 비즈니스의회 의장으로서 한국정부의 명예 한국투자대사로 임명되었음

## II. 관세 신고와 납부 및 평가<sup>52)</sup>

### 1. 과세요건

#### 가. 과세물건

- 과세 대상 물품이란 제109장 「과세물품조례」가 적용되는 물품으로 세금이 아직 납부되지 않은 물품을 의미하며(또는 법에 규정된 모든 세금이 완벽히 납부되지 않은 물품) 재수입이 되었을 시 이미 세금이 납부된 물품을 의미함
  
- 「과세물품조례」에 따른 과세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음<sup>53)</sup>
  - 주류(포도주 및 섭씨 20°C의 온도에서 알코올함량 30% 미만의 주류 제외)
  - 담배
  - 탄화수소계 연료(항공기 연료, 경유, 자동차 연료, 등유)
  - 메틸알코올

---

52) 수입물품 4종에 부과되는 세금은 엄밀하게는 소비세이나 홍콩의 「과세물품조례」 및 관련 규례에서 Dut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관세로 통칭하였음

53) 「과세물품조례」 제109장 제3조,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zh-Hant-HK>, 검색일자: 2019. 9. 7.

## 나. 과세표준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수입물품의 수량 혹은 가격에 따라 부과되며 「과세물품 조례(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 제26A조에 근거하여 과세가 이루어짐
- 수량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는 주류를 제외한 세 가지 품목(담배, 탄화수소계 연료, 메틸알코올과 그 혼합물에 적용되며 알코올 30도 초과 주류에 대해서는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증가세가 적용되고 있음
  - 따라서 담배, 탄화수소계 연료, 메틸알코올의 경우 수량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알코올 30도 초과 주류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주류 과세가격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 홍콩은 수입물품의 경우 CIF조건(도착항까지 인도가격)을 적용하고 있음<sup>54)</sup>

## 다. 납세의무자 및 과세환율

-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면제된 물품을 제외한 세금이 부과되는 제품을 홍콩으로 수입하는 자로 제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를 의미함<sup>55)</sup>
- 홍콩 해관장은 판매 계약, 상업 송장 또는 기타 문서에서 상품의 가치가 홍콩 달러 이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홍콩은행협회가 공표한 고시 환율(매도)로 계산하도록 함<sup>56)</sup>

54) How to Complete and Lodge Import/Export Declarations, [https://www.customs.gov.hk/filemanager/common/pdf/Book\\_2018\\_IEDC.pdf](https://www.customs.gov.hk/filemanager/common/pdf/Book_2018_IEDC.pdf), 검색일자: 2019. 9. 14.

55) 「과세물품규례」 109A 제10조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A?xid=ID\\_1438402566586\\_003](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A?xid=ID_1438402566586_003), 검색일자: 2019. 9. 16.

56) 「과세물품조례」 109 A 제26A조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xid=ID\\_1438402562484\\_001](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xid=ID_1438402562484_001), 검색일자: 2019. 9. 4.

- 월별 매출액을 산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월의 마지막 날 기준 환율
- 일반적인 경우 물품을 수입이 이루어진 이전 월 15일 기준 환율
- 해당일의 환율이 고시되지 않았다면 은행 직전 근무일에 발표된 환율을 적용하도록 함

## 2. 신고와 납부

### 가. 신고와 납부

- 수입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제60E장 수출입 (등록) 규례」<sup>57)</sup>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홍콩은 신고된 세액에 대해 납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 납부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결정하고 납부한다는 점에서 자진신고납부제도라고도 함<sup>58)</sup>
-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sup>59)</sup>
  - 환적화물
  - 운송화물
  - 정부 또는 중국 인민 해방군이 수입한 물품
  - 선박의 비축연료, 혹은 선박이 소비하는 연료
  - 항공기의 비축연료 혹은 항공기가 소비하는 연료

57) 「수출입등록규례」 60E,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E?xpid=ID\\_1438403523504\\_002](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E?xpid=ID_1438403523504_002), 검색일자: 2019. 9. 17.

58) 국세청,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6099](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6099), 검색일자: 2019. 9. 24.

59) 「수출입등록규례」 60E 제3조,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E?xpid=ID\\_1438403523504\\_002](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E?xpid=ID_1438403523504_002), 검색일자: 2019. 9. 17.

- 차량을 제외한 무역이나 사업용 이외의 수입품 또는 수출품으로 홍콩 해관이 허가하는 개인 수하물
- 내용물의 가치가 \$ 4,000 미만인 우편물
- 광고물로서 무료로 배포되는 것
- 물품의 샘플로서 물품을 홍보하기 위해 해관장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무료로 배포되는 것
- 1,000달러 미만의 가치를 가졌으나 물품을 홍보하기 위한 샘플로 해관장의 조건을 만족한 것
- 전시 목적으로 수입되어 전시 후 홍콩에서 수출되는 물품
- 전시 목적으로 수출되어 전시 후 홍콩으로 수입되는 물품
- ATA 까르네에 해당되는 수출입 물품
- 운동경기를 목적으로 수입되었다 홍콩에서 수출되는 물품으로 해관장의 요건을 만족한 물품
- 운동경기를 목적으로 수출되었다 홍콩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해관장의 요건을 만족한 물품
- 해양생물(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유사한 것으로 해양에서 획득하는 것) 중 등록되었거나 허가증이 있는 선박의 어업으로 인하여 홍콩으로 수입되는 것
- 개인의 선물
- 사용된 용기(정기적으로 수출입되는 것, 물품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 수출입되는 용기)
- 항공기 유지 및 보수를 위해 국제적 혹은 지역적인 항공 루트를 따라 수입되는 부품,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항공기 교환 부품
- 국제 또는 지역 노선으로 운항하는 해상 또는 항공화물 운송 서비스를 수행하는 운송 업체가 수입한 물품에 의해 운영되는 화물 컨테이너의 수리 및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물품 및 국제 또는 지역 노선으로 해상 또는 항공으로 상품 운송을 수행하며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지폐와 동전



- 라디오 및 방송 관련 장비와 준비물품,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장치의 결합을 도우는 밴
  - 홍콩 외부에서 거주할 자가 소유하여 수입되는 개인물품으로써 해관장의 요건을 만족하고 홍콩에서 사용한 후 수출할 물품
  - 운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으로써 수출입되는 것(화물의 일부 또는 부분)
- 수입신고가 면제된 물품 이외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관장이 정한 바에 수입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물품 수입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해관장의 동의를 얻어 월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이러한 수입신고는 매월의 7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이루어져야 함
- 빈번하게 정기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 각각의 탁송물이 \$1,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동일한 품번으로 동일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 단 수입 및 수출 분류표의 부록 I에 규정된 식품에 대해서는 월별 수입신고가 가능할지라도 별도의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은 각 신고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됨<sup>60)</sup>
- 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의 총액이 2만홍콩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됨<sup>61)</sup>

60)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cargo\\_clearance/declaration/charges/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cargo_clearance/declaration/charges/index.html), 검색일자: 2019. 8. 26.

61)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cargo\\_clearance/declaration/charges/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cargo_clearance/declaration/charges/index.html), 검색일자: 2019. 8. 26.

- 수입 또는 수출 후 1개월 14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시 벌금은 20 홍콩달러임
  - 수입 또는 수출 후 2개월 14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시 벌금은 40 홍콩달러임
  - 수입 또는 수출 후 2개월 및 14일 이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시 벌금은 100 홍콩달러임
- 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의 총액이 20,000홍콩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위의 벌금은 각각 40홍콩달러, 80홍콩달러 및 200홍콩달러로 두 배가 됨<sup>62)</sup>
- 수입운송업체로부터 과세 대상 물품이 홍콩에 도착하였거나 보세 창고에서 현지 시장으로 과세 대상 물품이 반출될 시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함<sup>63)</sup>
- 사전 세금 납부 후 부두 통관을 하거나 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되고 세금을 납부한 후 통관할 수 있음
  - 물품이 수입되어 보세창고로부터 반출되기 전 및 물품이 배, 항공기, 열차 또는 운송 수단으로 수입되어 이들로부터 반출되기 전 세금을 납부해야 함
  - 특정 경우 홍콩에서 제조 혹은 생산되어 보세창고로부터 반출되기 전, 물품이 제조, 생산된 지역에서 반출되기 전 세금을 납부해야 함
- 만약 물품이 보세창고에서 반출되지 않았거나 물품이 반출되기 전 다른 보세창고로 이동했다면 해관장은 세금 납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6주를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을 주어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
- 그러나 세금 납부 유예기간을 허가받은 자는 해관장이 요구하는 현금 또는 채권과 함께 담보를 제공할 것이 요구됨

62)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cargo\\_clearance/declaration/charges/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cargo_clearance/declaration/charges/index.html), 검색일자: 2019. 8. 26.

63)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dutiable/payment/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dutiable/payment/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17.

- 과세 대상 물품 관리국(Office of Dutiable Commodities Administration)에서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해 관세가 납부되면 물품반출허가증을 발행함<sup>64)</sup>
  - 수입자는 해관에서 정한 계좌에 관세를 납부하고, 관세를 납부하였다는 증빙서류(은행전표 등)를 제출해야 함
  
- 비과세물품은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세구역 반입이 불필요하며 수입신고 이전 도착터미널로부터 관련 화물을 반출할 수 있음<sup>65)</sup>
  -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열차로 수출 예정이거나 혹은 운송수단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보세창고로 이동되는 물품의 경우 세금납부의 의무가 없음<sup>66)</sup>

#### 나. 결정 및 재결정

- 해관장은 세관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의 가치(또는 하나 이상의 품목의 총가치)가 과소평가되었거나 과대평가되었다고 판단될 시 추가적으로 세액을 평가할 수 있음<sup>67)</sup>
  - 평가세액에 따라 추가적인 요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벌금은 추가 부과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않으며 상한은 10,000홍콩달러를 넘을 수 없음

64)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dutiable/payment/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dutiable/payment/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12.

65)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dutiable/payment/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dutiable/payment/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17.

66)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dutiable/payment/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dutiable/payment/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12.

67) 「수출입등록규례」 60E 제10조,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E!en-zh-Hant-HK?xpid=ID\\_1438403523567\\_002&INDEX\\_CS=N](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E!en-zh-Hant-HK?xpid=ID_1438403523567_002&INDEX_CS=N), 검색일자: 2019. 9. 24.

- 해관장의 세액 재평가에 대한 통지는 해당자에게 인편으로 전달 혹은 우편, 특정 기관이 제공한 서비스를 사용하여 이루어짐<sup>68)</sup>
  
- 추가적인 요금 또는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자는 통지받은 후 21일 이내에 추가적인 요금 또는 벌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sup>69)</sup>
  - 이의 제기 통지는 이의 제기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이의 제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모든 서면 진술 및 기타 문서 증거를 첨부해야 함
  
- 이의 제기에 따라 해관장은 이를 검토한 후 추가적인 요금 또는 벌금을 부과, 취소, 유지할 수 있음<sup>70)</sup>
  - 해관장은 이의 제기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해 결정하여 취소 또는 감소 및 추가 비용이나 벌금에 대해 해당자에게 통지해야 함
  
- 해당자는 평가 또는 벌금 및 추가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해관 상위조직의 장(Chief executive officer)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에 대한 결정은 최종결정이 됨<sup>71)</sup>

68) 「수출입등록규례」 60E 제10조,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E!en-zh-Hant-HK?xpid=ID\\_1438403523567\\_002&INDEX\\_CS=N](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E!en-zh-Hant-HK?xpid=ID_1438403523567_002&INDEX_CS=N), 검색일자: 2019. 9. 24.

69) 「수출입등록규례」 60E 제10조,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E!en-zh-Hant-HK?xpid=ID\\_1438403523567\\_002&INDEX\\_CS=N](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E!en-zh-Hant-HK?xpid=ID_1438403523567_002&INDEX_CS=N), 검색일자: 2019. 9. 24.

70) 「수출입등록규례」 60E 제10조,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E!en-zh-Hant-HK?xpid=ID\\_1438403523567\\_002&INDEX\\_CS=N](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E!en-zh-Hant-HK?xpid=ID_1438403523567_002&INDEX_CS=N), 검색일자: 2019. 9. 24.

71) 「수출입등록규례」 60E 제10조,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E!en-zh-Hant-HK?xpid=ID\\_1438403523567\\_002&INDEX\\_CS=N](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E!en-zh-Hant-HK?xpid=ID_1438403523567_002&INDEX_CS=N), 검색일자: 2019. 9. 24.

### 3.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제세금

#### 가. 관세

- 홍콩은 일반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기타 부과되는 세금 또한 없음
  - 다만 주류(30도 이상, 메틸알코올)와 담배, 유류 등에 부과되는 관세를 제외하고 한국의 부가가치세 개념의 세금 또한 부과되지 않고 있음
  - 홍콩 정부는 세원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개념의 5%의 판매세(Goods and Services Tax)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무효화한 바 있음
  - 관세(소비세)의 경우에도 단 4가지 물품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소비세의 개념으로 한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다양한 소비세를 부과함)<sup>72)</sup>
  
- 담배, 술(알코올 30도 이상인 경우), 탄화수소, 메틸알코올에만 부과되는 관세의 경우 관세 대상물품이 수입품인지 혹은 홍콩산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홍콩 내에서 제조되는 물품의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관세는 대부분 홍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된다고 볼 수 있음
  - 홍콩의 관세 징수기관은 홍콩해관이며 관련법인 「제109장 과세물품 조례」와 「제318장 산업훈련조례」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sup>73)</sup>
  - 주류 경우 섭씨 20°C의 온도에서 알코올함량 30% 미만의 주류(와인 제외)(예: 맥주)는 0%의 세율이 적용됨

72) 이영근, 『과세물품에 대한 한국과 홍콩의 통관제도를 세관통제 관점에서 비교 연구』,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2014. 3, p. 4.

7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홍콩』, 2011. 4, p. 221.

- 섭씨 20°C의 온도에서 알코올함량 30% 이상의 주류(예: 위스키)에는 100%의 세율이 적용됨
  - 담배의 경우 수입담배에는 1000개비당 1,906홍콩달러, 시가 1kg당 2,455홍콩달러, 중국에서 제조된 담배 1kg당 468홍콩달러, 일반적인 담배 제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그 밖의 모든 담배에는 1kg당 2,309홍콩달러의 세율이 적용됨
    -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에는 담배세액을 공제하거나 환불해 줌<sup>74)</sup>
  - 탄화수소의 경우 항공기 연료에는 각 리터당 6.51홍콩달러, 가연가솔린 6.82홍콩달러, 무연가솔린 6.06홍콩달러, 디젤연료 2.89홍콩달러, 유황디젤 2.89홍콩달러, 유로V디젤 0홍콩달러의 세율이 적용됨
  - 메틸알코올과 그 혼합물의 경우 헥토리터당 840홍콩달러의 세율이 적용됨
- 관세 확보와 대상물품의 통제를 위해 홍콩 해관에서 관세 대상물품의 수출입, 제조, 저장 등에 면허를 발급하고 있음
-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홍콩해관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홍콩해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 면허는 1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도 동일함

---

7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홍콩』, 2011. 4, p. 223.

〈표 2-11-1〉 과세대상의 품목에 따른 세율

품목	구분	세율
주류	포도주	0
	섭씨 20°C의 온도에서 알코올함량 30% 미만의 주류	0
	섭씨 20°C의 온도에서 알코올함량 30% 이상의 주류	100%
담배	수입담배	HK\$ 1,906/1000개비
	시가	HK\$2,455/kg
	중국에서 제조된 담배	HK\$ 468/kg,
	일반적인 담배 제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그 밖의 모든 담배	HK\$ 2,309/kg
탄화수소계 연료	항공기 연료	HK\$ 6.51/litre
	가연가솔린	HK\$ 6.82/litre
	무연가솔린	HK\$ 6.06/litre
	디젤연료	HK\$ 2.89/litre
	유황디젤	HK\$ 2.89/litre
	유로V디젤	HK\$ 0/litre
메틸알코올과 그 혼합물		HK\$ 840 / hectoliter

자료: 홍콩해관, [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dutiable/types/index.html#liquor](http://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dutiable/types/index.html#liquor),  
검색일자: 2019. 9. 16.

- 자동차의 경우 등록세의 개념으로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됨
  - 홍콩특별행정구 내에서 도로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류의 소유자는 자동차 법(최초 등록세법)에 따라 최초등록세(First Registration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최초등록세 계산과 징수에 대한 책임은 교통부(Transport Department), 과세 표준에 대한 결정은 홍콩해관(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이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자동차를 최초로 신규 등록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최초등록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 및 대리인이 등록신청서(Form No.: TD22)를 작성하여 교통부의 홍콩면허청(HongKong Licensing Office of Transport Department)에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자동차최초등록세, 등록비(registration fee), 자동차 면허비(vehicle licence fee), 교통사고희생자보조기금(Traffic Accident Victim Assistance Fund) 부담금을 납부하게 됨
- 150,000홍콩달러 이하 금액의 자동차에는 자동차 판매가격의 40%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됨
- 150,000홍콩달러 초과 300,000홍콩달러 이하 금액의 자동차에는 150,000홍콩달러의 40% 금액과 150,000홍콩달러초과 금액의 75%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함
- 300,000홍콩달러 초과 500,000홍콩달러 이하 금액의 자동차에는 150,000홍콩달러의 40%금액과 150,000홍콩달러의 75% 금액 그리고 300,000홍콩달러 초과 금액의 100%를 합산하여 과세함
- 500,000홍콩달러 초과 금액의 자동차에는 150,000홍콩달러의 40% 금액과 150,000홍콩달러의 75%의 금액 그리고 200,000홍콩달러의 100% 금액과 500,000홍콩달러 초과 금액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함
- 이륜자동차, 삼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판매가격의 35%를 과세함
- 경승합차(LGV) 외의 화물차량의 경우 자동차 판매가격의 15%를 과세함

〈표 2-11-2〉 자동차 종류에 따른 등록세율

구분		세율
승용차	HK\$150,000 이하	자동차 판매가격×40%
	HK\$150,000 초과 HK\$300,000 이하	HK\$150,000×40%+HK\$150,000 초과 금액×75%
	HK\$300,000 초과 HK\$500,000 이하	HK\$150,000×40%+ HK\$150,000×75%+ K\$300,000초과 금액×100%



〈표 2-11-2〉의 계속

구분		세율
	HK\$500,000 초과	HK\$150,000×40+HK\$150,000×75%+HK\$200,000×100%+K\$500,000 초과 금액×115%
이륜자동차, 삼륜자동차		자동차 판매가격×35%
경승합차(LGV) 외의 화물차량		자동차 판매가격×15%
1.9톤을 초과하지 않는 승합차(LGV)	HK\$150,000 이하	자동차 판매가격×35%
	HK\$150,000 초과 HK\$300,000 이하	HK\$150,000×35%+HK\$150,000 제외한 잔액×65%
	HK\$300,000 초과	HK\$150,000×35%+HK\$150,000×65%+K\$300,000초과 금액×85%
1.9톤을 초과하는 승합차(LGV)		자동차 판매가격×17%
택시, 버스, 특수목적 운송수단		자동차 판매가격×3.7%

자료: 홍콩 교통국, [https://eservices.customs.gov.hk/FRT/common/wcm00104/locale.action?request\\_locale=en](https://eservices.customs.gov.hk/FRT/common/wcm00104/locale.action?request_locale=en), 검색일자: 2019. 9. 2.

- 홍콩 정부는 2007년 포도주 수입 관세율을 80%에서 40%로 반감시켰고 2008년에는 0%로 낮추었음
- 이러한 조치로 홍콩은 세계에서 포도주에 대한 세금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 되었음

#### 나. 수출입 신고 수수료

- 2018년 8월 1일부터 각 수입 및 수출 신고에 대해 부과되는 최대 세관 신고 수수료는 200홍콩달러임<sup>75)</sup>

75)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cargo\\_clearance/declaration/charges/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cargo_clearance/declaration/charges/index.html), 검색일자: 2019. 8. 26.

- 2018년 8월 1일 이후 홍콩으로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품목에 적용됨
- 비(非)식품류의 경우 건당 수입물품가격 46,000홍콩달러까지 0.2홍콩달러, 46,000 홍콩달러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 1,000홍콩달러당 0.125홍콩달러가 부과됨<sup>76)</sup>
- 식품류의 경우 수입물품 가격에 상관없이 수입신고 건당 0.2홍콩달러가 부과됨<sup>77)</sup>
- 수출물품의 경우 홍콩특별행정구역 원산지 여부<sup>78)</sup>에 따라 건당 수입물품가격 46,000 홍콩달러까지 0.2홍콩달러, 46,000홍콩달러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 1,000홍콩달러당 0.125홍콩달러가 부과됨<sup>79)</sup>

#### 4. 관세 평가

- 홍콩의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평가는 「제109장 과세물품 조례(應課稅品條例, 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의 26A에서 규정하고 있음
  - 과세대상 품목 중 주류만이 증가세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과세평가 논의는 주류에 대한 관세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임
  - 그 밖에 관세가 부과되는 세 가지(메틸알코올, 담배, 연료)의 경우 종량세로 운영되고 있음

76)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cargo\\_clearance/declaration/charges/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cargo_clearance/declaration/charges/index.html), 검색일자: 2019. 8. 26.

77)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cargo\\_clearance/declaration/charges/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cargo_clearance/declaration/charges/index.html), 검색일자: 2019. 8. 26.

78) 홍콩에서 제조된 의류품 중 홍콩 제318장 「산업훈련조례(Schedule 1 to the Industrial Training (Clothing Industry)」 Ordinance, Chapter 318)에 해당되는 물품

79)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cargo\\_clearance/declaration/charges/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cargo_clearance/declaration/charges/index.html), 검색일자: 2019. 8. 26.

- 홍콩의 주류에 부과되는 과세가격 평가는 우리나라와 같이 관세평가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고<sup>80)</sup> 볼 수 있으나 실제 소비세의 명목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엄밀하게 관세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움
  - 홍콩은 WTO 가입국으로 회원국에 적용되는 WTO 관세평가 협약에 대한 내용을 따르게 되어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내용의 일부가 유사한 내용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WTO 관세평가 협약의 수용에 대해 홍콩이 WTO에 보고한 공식 문서에 따르면 홍콩은 1996년 기준으로 관세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 및 규정이 없으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의 물품 가격 산출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도 없다고 통보하고 있음<sup>81)</sup>
  - 홍콩은 관세가 없기 때문에 관세평가와 관련된 쟁점이 발생하기보다 관세성격의 소비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가격 평가에 대한 쟁점은 발생가능함<sup>82)</sup>
    - 증가세 대상물품의 경우 관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인데, 이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정하여진 원칙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라 함
  
- 상품의 가치는 구매자가 공개된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 시점의 상품이 정상 가격이어야 함<sup>83)</sup>
  - 혹은 관련시간의 경우 수입 물품의 경우 그러한 물품이 수출 목적으로 판매자의 구역에서 반출된 시간을 의미함

80) 이영근, 『과세물품에 대한 한국과 홍콩의 통관제도를 세관통제 관점에서 비교 연구』,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2014. 3.

81) WTO(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 Notification under Article 22.2 of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 Hong Kong), [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FE\\_S\\_S006.aspx?Query=@Symbol=%20g/val/n/\\*%20and%20%20@Symbol=%20hkg&Language=ENGLISH&Context=FomerScriptedSearch&languageUIChanged=true#](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FE_S_S006.aspx?Query=@Symbol=%20g/val/n/*%20and%20%20@Symbol=%20hkg&Language=ENGLISH&Context=FomerScriptedSearch&languageUIChanged=true#), 검색일자: 2019. 9. 16.

82) 이영근, 『과세물품에 대한 한국과 홍콩의 통관제도를 세관통제 관점에서 비교 연구』,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2014. 3.

83) 「홍콩 과세물품조례」 제109장 제26A조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xid=ID\\_1438402562484\\_001](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xid=ID_1438402562484_001), 검색일자: 2019. 9. 4.

- 홍콩에서 제조된 제품의 경우 그러한 제품이 제조된 곳에서 반출된 시간을 의미함
  
- 수입된 물품 또는 홍콩에서 제조되나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정상가격은 다음에 기초하여 결정하도록 함<sup>84)</sup>
  - 물품은 배송을 목적으로 판매자의 지역에서 제거되었을 시 홍콩의 구매자에게 배송된 것으로 취급하도록 함
  - 물품의 구매자는 홍콩의 자신 소재지로 물품이 배달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수료, 운송료 등의 제반비용을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함
  - 물품 판매자는 상품 판매에 따른 요금, 수수료 등 기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물품의 가격에는 상품과 관련한 특허, 디자인 또는 상표 사용권 등의 가치가 모두 포함됨(사용료 혹은 라이선스 비용에 대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음)
  
- 열린 시장(open market)에서의 판매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다음의 내용을 예상하여 발생할 것을 가정함<sup>85)</sup>
  - 가격은 유일한 고려사항으로 거래에 따라 이루어지는 가격을 의미함
  - 가격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와 거래하는 사람 또는 구매자와 거래하는 사람과 거래하는 사람(계약에 의해 생성된 관계를 제외하고)에 따라 그 어떤 상업적, 금융 또는 기타의 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 물품에 대한 후속적인 재판매, 혹은 물품의 처분에 대한 수익금은 판매자 혹은 그와 거래하는 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함
    - 해당되는 자는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사업 혹은 재산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혹은 둘 다에 대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서로 사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됨

84) 「홍콩 과세물품조례」 제109장 제26A조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xid=ID\\_1438402562484\\_001](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xid=ID_1438402562484_001), 검색일자: 2019. 9. 4.

85) 「홍콩 과세물품조례」 제109장 제26A조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xid=ID\\_1438402562484\\_001](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xid=ID_1438402562484_001), 검색일자: 2019. 9. 4.

- 홍콩 해관장 또는 그를 대신하여 관련 물품 가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자는 판매계약, 상업송장 또는 기타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상품의 가치에 따른 관세 평가가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을 때에만 그것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림<sup>86)</sup>
  
- 홍콩 해관장 또는 그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는 자는 관세를 평가하고 계산할 목적으로 다음의 경우 물품의 가치를 수정할 수 있음<sup>87)</sup>
  - 수입자 혹은 제조업체가 필요한 판매계약이나 상업송장 혹은 기타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 판매 계약, 상업송장 또는 기타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상품의 가치 평가에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 홍콩 해관장 또는 그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는 자가 평가한 상품의 가치가 판매계약이나 상업송장 혹은 기타문서에 기록된 가치와 다른 경우
  - 홍콩 해관장 또는 그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는 자는 홍콩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할 때 발생하는 운송, 보험 및 기타 비용, 요금 및 비용을 별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 판매계약, 상업송장, 장부 또는 기타 문서에 기록된 내용에 근거하여 관세를 평가하고 계산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치를 수정할 수 있음
  
- 홍콩 해관장은 판매 계약, 상업 송장 또는 기타 문서에서 상품의 가치가 홍콩달러 이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다른 통화와 동등한 홍콩 달러는 홍콩은행협회가 공표한 고시 환율(매도)로 계산하도록 함<sup>88)</sup>
  - 월별 매출액을 산출해야 하는 경우 월의 마지막 날 기준 환율
  - 기타의 경우 물품을 수입이 이루어진 달 직전 달 15일 기준 환율

86) 「홍콩 과세물품조례」 제109장 제26A조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xpid=ID\\_1438402562484\\_001](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xpid=ID_1438402562484_001), 검색일자: 2019. 9. 4.

87) 「홍콩 과세물품조례」 제109장 제26A조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xpid=ID\\_1438402562484\\_001](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xpid=ID_1438402562484_001), 검색일자: 2019. 9. 4.

88) 「홍콩 과세물품조례」 제109장 제26A조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xpid=ID\\_1438402562484\\_001](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xpid=ID_1438402562484_001), 검색일자: 2019. 9. 4.

- 앞에서 이루어진 상품 가치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행정 항소위원회(Administrative Appeals Board)에 항소할 수 있음<sup>89)</sup>
  
- 홍콩 해관장은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평가하고 계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판매계약, 상업송장, 회계장부를 비롯한 관련 모든 문서를 수입자 또는 제조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sup>90)</sup>

---

89) 「홍콩 과세물품조례」 제109장 제26B조,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xpid=ID\\_1438402562484\\_001](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xpid=ID_1438402562484_001), 검색일자: 2019. 9. 4.

90) 「홍콩 과세물품조례」 제109장 제26B조,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xpid=ID\\_1438402562484\\_001](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xpid=ID_1438402562484_001), 검색일자: 2019. 9. 4.

### Ⅲ.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제도<sup>91)</sup>

#### 1. 품목분류체계

- 자유무역정책을 추진하는 홍콩은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세 및 제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주류, 담배, 탄화수소 및 메틸알코올에 대해서 물품세 성격의 관세(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품목이 다양하고 거래규모가 큰 국제적인 무역량을 소화하고 무역 관련 통계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하여 홍콩 통계청은 국제협약에 따라 HS 코드를 이용한 홍콩 HS코드(HongKong HS code: 이하 HKHS)로 상품을 분류하고 있음<sup>92)</sup>
  - HKHS는 관세 부과 목적이 아니며 수출입 신고 시 사용되고 있음
  - 관세 부과의 목적이 아니므로 HKHS에는 관세율이 표기되지 않으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관세청에서 별도로 고시하고 있음
  - HKHS는 총 8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1월 1일 통계청 홈페이지에 고시됨

91) 수입물품 4종에 부과되는 세금은 엄밀하게는 소비세이나 홍콩의 「과세물품조례」 및 관련 규례에서 Dut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관세로 통칭하였음

92) 홍콩통계청, <https://www.censtatd.gov.hk/hkstat/sub/sp230.jsp?productCode=B2XX0023>, 검색일자: 2019. 8. 27.

○ HKHS를 살펴보면 물품 명세, Code 번호, 물품 측정 단위에 대해 영어와 중국어를 혼용하여 표기하고 있음

□ 97류까지 규정하고 있는 HS Code와 달리 홍콩은 98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98류에는 4000홍콩달러 미만의 우편물(98010010)과 신고 시 물품가격 10,000 홍콩달러 이하의 물품(98010020)을 분류하고 있음<sup>93)</sup>

[그림 2-III-1] 홍콩 HKHS Code

港貨協制編號 HKHS Code (2019)	中文貨物名稱 Goods Description (in Chinese) (2019)	英文貨物名稱 Goods Description (in English) (2019)	數量單位編號 Unit of Quantity Code	數量單位-中 文說明 Unit of Quantity - Chinese Description	數量單位-英 文說明 Unit of Quantity - English Description
01012100	活馬, 純種配種用	LIVE HORSES, FOR PURE-BRED BREEDING	C62	頭	UNIT
01012910	活馬, 比賽用	LIVE HORSES, FOR RACING	C62	頭	UNIT
01012990	活馬, 純種配種用或比賽用的除外	LIVE HORSES, OTHER THAN THOSE FOR PURE-BRED BREEDING OR RACING	C62	頭	UNIT
01013000	活驢	LIVE ASSES	C62	頭	UNIT
01019000	活驢及活特驢	LIVE MULES AND HINNIES	C62	頭	UNIT
01022100	活牛, 純種配種用	LIVE CATTLE, FOR PURE-BRED BREEDING	C62	頭	UNIT
01022900	活牛, 純種配種用的除外	LIVE CATTLE, OTHER THAN THOSE FOR PURE-BRED BREEDING	C62	頭	UNIT
01023100	活水牛, 純種配種用	LIVE BUFFALO, FOR PURE-BRED BREEDING	C62	頭	UNIT
01023900	活水牛, 純種配種用的除外	LIVE BUFFALO, OTHER THAN THOSE FOR PURE-BRED BREEDING	C62	頭	UNIT
01029000	活牛, 未列明或未包括在其他編號	LIVE BOVINE ANIMALS, NESOI	C62	頭	UNIT
01031000	活豬, 純種配種用	SWINE, LIVE, PURE-BRED BREEDING	C62	頭	UNIT
01039110	活豬, 未列明或未包括在其他編號, 每頭重量在10公斤以下	SWINE, LIVE, NESOI, WEIGHING LESS THAN 10 KG EACH	C62	頭	UNIT
01039120	活豬, 未列明或未包括在其他編號, 每頭重量在10公斤或以上但少於50公斤	SWINE, LIVE, NESOI, WEIGHING 10 KG OR MORE BUT LESS THAN 50 KG EACH	C62	頭	UNIT
01039200	活豬, 未列明或未包括在其他編號, 每頭重量在50公斤或以上	SWINE, LIVE, NESOI, WEIGHING 50 KG OR MORE EACH	C62	頭	UNIT

자료: 홍콩 통계청, <https://www.censtatd.gov.hk/hkstat/sub/sp230.jsp?productCode=B2XX0023>, 검색일자: 2019. 8. 27.

93) 홍콩통계청, <https://www.censtatd.gov.hk/trader/hocode/index.jsp>, 검색일자: 2019. 8. 27.



## 2. 관세율 제도

### 가. 관세율 분포

- WTO에서는 HS 코드를 기준으로 농산물과 비농산물을 구분하여 각 국가별 평균 관세율을 산출하고 있음<sup>94)</sup>
  - 농산물에는 동물성 생산품, 식물성 생산품, 곡물 및 그 조제품, 설탕 및 과자류, 음료 및 담배, 면섬유 등이 포함됨
  - 비농산물에는 농산물을 제외한 수산물, 광물 및 금속제품, 석유 및 화학제품, 목제품, 직물 및 의류, 기계 및 전자기기, 수송기기 등이 분류됨
- 홍콩의 관세율 분포를 살펴보면 2017년 수입된 농산품 및 비농산품 전체 품목 100%에 무관세가 적용되었음

〈표 2-III-1〉 홍콩 관세율 분포: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단위: %)

분포	무관세	0% 초과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15% 이하	15% 초과 25% 이하	25% 초과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농산물								
양허관세	100	0	0	0	0	0	0	0
2018년 MFN 실행관세	100	0	0	0	0	0	0	0
2017년 수입 <sup>1)</sup>	100	0	0	0	0	0	0	0
비농산물								
양허관세	39.8	0	0	0	0	0	0	0
2018년 MFN 실행관세	100	0	0	0	0	0	0	0
2017년 수입	100	0	0	0	0	0	0	0

주: 1) 전체 수입 중 해당 구간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된 비중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9*, 2019, p. 101.

94) 강성훈·이재선·노영예·김미정,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_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2, p. 77.

□ 홍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 수준을 산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동물성 생산품, 식물성 생산품, 곡물 및 그 조제품 등 농산물과 수산물, 광물 및 금속제품, 석유 및 화학제품, 목제품 등 비농산물 모두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음

〈표 2-Ⅲ-2〉 홍콩 산업별 관세율 수준

(단위: %)

품목	양허관세			MFN 실행관세			수입	
	평균 세율	무관세 비중 <sup>1)</sup>	최고 세율	평균 세율	무관세 비중	최고 세율	비중 <sup>2)</sup>	무관세 비중 <sup>3)</sup>
동물제품	0	100	0	0	100	0	1.4	100
낙농제품	0	100	0	0	100	0	0.3	100
과실 및 채소, 식물제품	0	100	0	0	100	0	1.0	100
커피, 차	0	100	0	0	100	0	0.2	100
곡물 및 그 조제품	0	100	0	0	100	0	0.5	100
종자, 기름	0	100	0	0	100	0	0.0	100
설탕 및 과자류	0	100	0	0	100	0	0.1	100
음료, 담배	0	100	0	0	100	0	0.7	100
면섬유	0	100	0	0	100	0	0.0	100
기타 농산물	0	100	0	0	100	0	0.1	100
어류 및 수산물	0	100	0	0	100	0	0.6	100
광물, 금속	0	100	0	0	100	0	14.3	100
석유제품	-	-	-	0	100	0	1.6	100
화학제품	0	100	0	0	100	0	3.8	100
목제품, 종이제품	0	100	0	0	100	0	0.8	100
직물	0	100	0	0	100	0	1.6	100
의류	0	100	0	0	100	0	2.0	100
가죽, 신발 등	0	100	0	0	100	0	1.6	100
비전기기계	0	100	0	0	100	0	10.7	100
전기기계	0	100	0	0	100	0	50.7	100
운송기기	0	100	0	0	100	0	1.2	100
기타 제조업 제품	0	100	0	0	100	0	6.8	100

주: 1) 해당 품목군의 전체 HS 6단위 중 무세인 HS 6단위의 비중  
 2) 전체 수입에서 해당 품목군이 차지하는 비중  
 3) 해당 품목군의 전체 수입 중 MFN 실행관세가 무세인 수입의 비중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9*, 2019, p. 101.

### 나. 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율

- 홍콩은 자유무역항이기 때문에 일반 수출입 상품에 대한 쿼터나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sup>95)</sup>
- WTO에 따르면 홍콩해관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한 조사를 수행하는 책임 기관(행정부)을 설립하지 않았음
  - 따라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법적체계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 다. 수출세

- 수출의 경우 별도의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만약 납부된 관세가 있을 시 홍콩 해관장의 동의하에 환급이 이루어짐<sup>96)</sup>
- 수출신고 수수료는 2018년 8월 1일부터 200홍콩달러가 부과되고 있음<sup>97)</sup>
- 홍콩 국내에서 제조된 의류 및 신발에는 의류산업 훈련 부과금이 물품 수출금액 1,000홍콩달러당 0.30홍콩달러로 부과되고 있음<sup>98)</sup>
  - 본 부과금은 의류산업훈련협회(Clothing Industry Training Authority)의 지원금으로 사용됨

95)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9*, 2019, p. 101.

96) WTO, *World Trade Policy*, 2018, p. 40.

97) WTO, *World Trade Policy*, 2018, p. 40.

98) WTO, *World Trade Policy*, 2018, p. 40.

## IV. 면세 및 환급제도

### 1. 면세제도

- 「과세물품조례」 제109장에서 면세제도 및 면세와 관련한 조건을 규정하는 위원에 대한 범위 및 정의, 입법위원회의 개정권한, 관세 환급에 대한 위원의 권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과세물품조례」 제109장에서 관세부과와 관련된 권한이 부여된 입법위원회는 결의를 통해 다음의 내용을 개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 과세 대상 상품 또는 과세 대상 상품에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어떤 의무를 부과하든 간에 어느 범위에서든 관세에 대한 부과, 감소, 폐지, 변경, 면제 또는 송금 등에 관련한 내용
  - 과세 대상 상품 또는 과세 대상 상품 범위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
  - 위원의 권한 강화(특정한 경우 또는 일반적으로 관세 환급)
  
- 「과세물품조례」 제109장 제6조에서는 관세 환급이 적용 가능한 대상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음
  - 과세 대상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관세 제품 중 위원의 서면 동의로 홍콩에서 파괴된 관세에 관한 물품

- 위원의 서면 동의하에 홍콩에서 수출되는 관세가 지불된 제품
  - 정부 화학자가 분석을 위해 샘플로 사용한 관세가 지불된 제품
  - 홍콩 외부 또는 부분적으로 또는 홍콩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60톤 이상의 선박의 관세가 지불된 연료
  - 입법 협의회가 결의로 정할 수 있는 기타 관세 지불 물품에 대해 관세 환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
  - 비과세물품의 경우 관세와 소비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보세구역 반입이 불필요하여 수입신고 이전에 도착된 터미널로부터 관련 화물을 바로 반출할 수 있음
- 홍콩해관장은 「과세물품조례」 제109장 및 「과세물품규례」 제109A 제12조에 따라 다음의 주어진 조건에 적합하거나 혹은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면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sup>99)</sup>
- 60톤 이상의 선박으로 등록된 선박, 예인선, 엔진비행테스트에 참여한 항공기 및 일반 항공기 등으로 홍콩 역외 또는 홍콩 역내 및 일부 역외지역에서 주둔하기 위해 필요한 용품으로 위원이 결정하는 수량
  - 60톤 이상의 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예인선(「탄화수소 오일의 마킹 및 염색규례」 109C를 준수해야 함)에 사용되는 연료탱크의 연료로 위원이 결정하는 수량
  - 엔진비행테스트에 참여한 항공기 및 일반 항공기 등으로 홍콩 역외 또는 홍콩 역내 및 일부 역외지역에서 주둔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탱크의 연료로 위원이 결정하는 수량
  - 홍콩에서 수출되는 물품
  - 위원의 동의하에 파기된 물품
  - 해관의 공고에 따라 정해지는 수량의 선박, 항공기, 기차 또는 차량의 승객 또는 승무원이 사용하고 수하물로 반입하는 물품(주류 및 담배 제외 수량)

99) 「과세물품규례」 제109A 제12조,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A?xpid=ID\\_438402566805\\_003](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A?xpid=ID_438402566805_003), 검색일자: 2019. 9. 23.

- 선박, 항공기, 기차, 차량의 승객 또는 승무원이 직접 사용하고 수하물로 수입한 주류 또는 담배 이외의 물품은 해관의 공고에 따라 정하도록 함
- 선박, 항공기, 기차, 차량의 승객 또는 승무원이 자신의 사용 및 수하물로 수입한 것
- 홍콩 입국장 도착 지역의 해관장이 승인한 허가받은 상점에서 승객 또는 승무원이 자신의 용도로 구매한 경우
- 교회 교단장이 인증받은 성찬 와인
- 해관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해 에틸알코올 및 메틸알코올, 재무 장관이 승인한 교육, 과학 또는 자선 기관에서 사용하는 에틸알코올 및 메틸알코올
- 법령(section) 64A (1)에 기술된 방식으로 제조된 주류로 홍콩의 어느 곳에서도 총보관량이 5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건물 내에 보관되는 양이 5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홈 브루잉, 비매품, 家中自釀, 不得售賣 및 유사한 단어를 적법하게 표시된 밀봉된 용기에 보관하는 경우
  - 즉각적으로 소비할 주류
- 위원이 재량에 따라 샘플 또는 광고물로 간주하며 상업적인 목적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물품
- 수출된 후 다시 재수입으로 예정된 물품으로 해관의 조건을 만족하는 물품
- 해관장의 재량에 따라 홍콩 거주자에게 보내진 선의의 개인적인 선물로 상업적 가치가 없으며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물품
- 해관장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 간주되는 물품
- 선의의 자선 단체에 기부되는 물품
- 「국제기구 및 외교 특권 조례(Diplomatic Privileges Ordinance 제190조)」에 따라 국제기구의 운영에 의하여 면책 또는 면세를 적용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해 수입한 물품으로써 「권한 및 면제 조례(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ivileges and Immunities) Ordinance 제558장)」, 「특권 및

면제( Privileges and Immunities (Joint Liaison Group) Ordinance조례 제36장), 「특권 및 면제(국제 적십자위원회) 조례(Privileges and Immunities(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Ordinance 제402장)」 또는 「영사 관계 조례(Consular Relations Ordinance제557장)」 등에 따른 물품

- 「탄화수소 오일의 마킹 및 착색규례(Dutiable Commodities (Marking and Colouring of Hydrocarbon Oil) Regulations 제109 C장)」에 따라 지정된 방식 및 비율로 마커 및 착색 물질이 첨가된 디젤유
- 허가된 저장소에 연료유를 혼합하는 데 사용되는 디젤유
- 상품 차량 이외의 차량의 연료 탱크에서 중국 본토에 차량이 도착한 후 사용하기 위한 연료
  - 실린더 용량 3000cm<sup>3</sup> 100L 면제
  - 실린더 용량 3000-10000cm<sup>3</sup> 200L 면제
  - 실린더 용량 10000cm<sup>3</sup> 3300L 면제
- 중국 본토에서 도착하는 상품 차량의 연료 탱크에 있는 연료로서 규정된 양으로 차량에 사용하기 위한 연료
- 정부 화학자에 의해 분석을 위해 샘플로 추출된 물품
- ATA Carnet<sup>100)</sup>에 따른 수입품

---

100) 직업용품, 전시용 상품, 상품 견본 등을 외국에 일시적으로 가지고 가서 얼마 후 다시 가지고 올 때 ATA Carnet(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관한 조약)에 의거하여 체약국 세관에서 ATA Carnet만으로 수출입통관절차를 취할 수 있음

## 2. 환급제도

- 「과세물품조례」 제109장 및 「과세물품규례」 제109A 제14조-제15조B에 따라 홍콩 해관장 및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기 지급되었던 세금을 환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sup>101)</sup>
  - 「과세물품조례」 제109장 제6조에서 언급되었던 환급 대상 물품 및 대상 조건에 대하여 「과세물품규례」 제109A 제14조-제15조B에서 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 관세 환급은 수입자가 관세 환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 과세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 영사 관련 물품, 샘플물품, 유람선 관련 물품 등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음<sup>102)</sup>
  - 홍콩특별행정구역(HKSAR)에서 수출을 위해 반출되는 물품으로 해관장 및 위원의 동의를 얻었을 때
  - 수입된 물품이 명세서에 기입된 수량, 상태가 계약과 다르거나 환적 중 손상을 입어 다시 재수출되어야 하거나 홍콩특별행정구역 내에서 파손되어 구역의 외부로 반출되는 물품으로 해관장 및 위원의 동의를 얻었을 때
  - 정부의 화학 분석 실험을 위해 수입된 샘플 물품으로 환급될 세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에 부과된 세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세물품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 이 경우 환급되는 관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에 부과된 관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영사관 사용 물품
    - 국제기구종사자 및 외교관으로 면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용 또는 소비를 위

101)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dutiable/payment/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dutiable/payment/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19; 「과세물품규례」 제109A 제14조-제15조B,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A?xid=ID\\_1438402566852\\_002](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A?xid=ID_1438402566852_002), 검색일자: 2019. 9. 19.

102) 「과세물품규례」 제109A 제14조-제15조B,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A?xid=ID\\_1438402566852\\_002](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09A?xid=ID_1438402566852_002), 검색일자: 2019. 9. 19.



- 해 관세를 지불한 물품을 공급한 사람이 일정한 조건을 준수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지불된 관세를 환불받을 권리가 있음
    - 일반적으로 또는 어떤 특정한 경우에 위원이 명시하는 조건을 준수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지불된 관세를 환불받을 권리를 가지게 됨
  - 위원은 정부 화학자의 과학적 분석을 위해 샘플로 채취된 물품에 대해 지불된 관세를 환급해줄 수 있음
    - 단 환불된 관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에 부과된 관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60톤 이상의 선박으로 등록되어 홍콩특별행정구역 역외에 사용된 연료유 및 특수 허버스에 사용된 연료유
    - 유료 연료는 법으로 정한 관세 전액을 지불한 연료를 의미함
- 실제 세금 환급이 적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관련 절차도 전산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홍콩 해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혹은 우편으로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환급이 결정됨<sup>103)</sup>
- 신청자는 증빙 서류와 함께 관세 환급 신청서(CED 28A / CED 314)를 해관에 제출해야 함

---

103) 이민근, 『과세물품에 대한 한국과 홍콩의 통관제도를 세관통제 관점에서 비교 연구』, 2014. 9, p. 9.

## V. 원산지제도

### 1. 비특혜 원산지제도

- 홍콩의 원산지제도는 특혜 원산지제도(Preferential Rules of Origin)와 비특혜 원산지제도(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로 분류됨
  - 비특혜 원산지제도는 일반적인 무역정책 또는 무역조치 시행에서 상품의 원산지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원산지 규정으로 관세부과, 반덤핑제도의 운용 등에 적용되는 제도임
  - 비특혜 원산지제도는 WTO 원산지협정에 의거하여 규정되며 지역협정 당사국에 적용되는 특혜원산지규정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특혜 원산지제도는 GATT 1994 제1조에 기술된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방적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데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의미함
    - 특혜 원산지제도의 경우 홍콩이 체결중인 FTA, CEPA등의 협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별도의 원산지 규정을 의미함
  
- 비특혜 원산지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가공 또는 자재와 관련된 물품의 경우 홍콩에서 제조 공정을 거쳤을 시 기본 자재의 형태, 성질, 형태 또는 유용성이 영구적 및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면 홍콩에서 실질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간주함<sup>104)</sup>

- 단순 희석, 포장, 보틀링(bottling), 건조, 단순 조립, 분류 또는 장식 등과 같은 공정은 제조공정으로 간주되지 않음
  - 제조 공정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표현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현지 부품에 기여된 홍콩의 비용 및 노동 가치, 부품 등을 고려하게 됨
  - 기본적인 원산지 결정을 위해서는 관련 제품의 25%의 기인 비용을 기본적으로 요구함
- 단 홍콩에서 여타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을 '홍콩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sup>105)</sup>
-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을 시 제조에 사용된 기본 재료의 형태, 성질, 형태 또는 유용성이 영구적 및 실질적으로 변경된 처리 또는 공정을 마지막으로 수행한 국가에서 제조된 경우
  - 물품이 완전히 재배되었거나 또는 채굴된 국가에서 생산된 것
  - 홍콩 통상 산업부(Trade and Industry Department)는 동 기준에 따라 수출 물품에 대하여 홍콩산이라는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함
  - 「제60H장 수출(원산지 증명)규례(出口(產地來源證)規例, Export (Certificates of Origin) Regulations」는 홍콩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신고 및 이에 따른 홍콩해관의 증거요청 권리, 보관 기록 및 검사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수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물품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sup>106)</sup>
- 모든 수입품에 대해 홍콩은 관세가 없는 자유항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범죄가 우려되는 경우를 별도로 제외하고, 원산지 결정이 요구되지는 않음

104) APEC Agreements and Declarations <http://www.asianlii.org/apec/other/agrmt/aroohk259/>, 검색일자: 2019. 12. 5.

105) APEC Agreements and Declarations <http://www.asianlii.org/apec/other/agrmt/aroohk259/>, 검색일자: 2019. 12. 5.

106) APEC Agreements and Declarations <http://www.asianlii.org/apec/other/agrmt/aroohk259/>, 검색일자: 2019. 12. 5.

- 단 수입품의 원산지는 무역 통계 목적으로 수입 신고서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모든 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계 목적으로 수출 신고서에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음
  - 홍콩 원산지 증명서(CHKO)에 따른 수출의 경우 원산지 결정 및 발급 여부는 홍콩 정부 무역부 또는 5개(인증서 발급기관 Government Approved Certification Organizations: 이하 GACO) 중 하나가 결정하도록 하며 수출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의 신청은 관련 상품의 수출 전에 이루어져야 함
- 홍콩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원산지 인증에 관한 문의는 무역부 인증 지점과 5개의 GACO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 승인 인증서 발급 기관은 다음과 같음<sup>107)</sup>
- 홍콩 상공 회의소(The 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
  - 홍콩 산업 연합(Federation of Hong Kong Industries)
  - 홍콩 중국 제조업체 협회(The Chines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Hong Kong)
  - 홍콩 인디언 상공 회의소(The Indian Chamber of Commerce, Hong Kong)
  - 중국 상공 회의소(The Chinese General Chamber of Commerce)
- 인증 조정위원회(Certification Coordination Committee)는 인증 정책 조정 및 인증서 발급 기관 간의 관행과 절차 표준화, 인증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원산지 인증을 담당하는 무역부의 사무국장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모든 GACO, 세관 및 소비세 부서 및 산업 부서의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음

107) APEC Agreements and Declarations <http://www.asianlii.org/apec/other/agrmt/aroohk259/>, 검색일자: 2019. 12. 5.

## 2. CEPA 원산지 규정

- 홍콩과 중국의 CEPA 원산지 규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sup>108)</sup>
  - 첫째, CEPA의 원산지규칙은 차별적 무역정책을 실시하는 데 이용되어 상대적으로 중국과 홍콩의 생산자들이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음
    - CEPA에서 중국은 2년 내에 홍콩 원산의 모든 화물의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시행하기로 양허하였으며, 홍콩이 원산지가 아닌 화물은 이러한 무관세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음
  - 둘째, 특정 상품에 대해 특수한 원산지규칙을 제정함으로써 CEPA는 중국과 홍콩 간의 중간상품 및 최종상품의 무역형태에 변화를 주게 될 것을 예정하여 합의 하였음
  - 셋째, CEPA의 원산지규칙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또 하나의 비관세장벽으로 기타 국가의 동일한 상품이나 경쟁상품이 주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방지하여 중국과 홍콩의 공업생산품에 대한 보호효과를 예정하여 합의하였음
  
- CEPA에 따라 무관세를 실시하는 물품에 대해 ① 일방에서 완전히 획득한 화물은 그 일방이 원산지이며 ② 일방에서 완전히 획득한 화물이 아닌 경우는 당해 일방에서 실질적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비로소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함
  
- 완전 획득이란 완전히 자국의 원료·부품만을 사용하여 제조 생산한 상품을 말하며, CEPA에서는 완전히 홍콩에서 생산한 제품과 재차의 생산 가공을 거쳐 획득한 상품을 의미함
  
- CEPA 부속문서 제3조에 의하면, “일방에서 완전히 획득한 화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함<sup>109)</sup>

108) 법무부, 『중국, 홍콩, 마카오 CEPA의 이해』, 2009. 12, pp. 125~126.

109) 법무부, 『중국, 홍콩, 마카오 CEPA의 이해』, 2009. 12, pp. 128~130.

- 당해 일방에서 채취 또는 추출한 광산품
  - 당해 일방에서 수확 또는 채집한 식물이나 식물상품
  - 당해 일방에서 출생하고 사양(飼養)한 동물
  - 당해 일방에서 위 소정의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당해 일방에서 수렵 또는 어로(漁撈)로 획득한 상품
  - 당해 일방의 영업허가증을 소지하고 국기(중국의 선박인 경우)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구기(區旗)(홍콩특별행정구의 선박인 경우)를 게양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잡은 어류 및 기타 해산품
  - 당해 일방의 영업허가증을 소지하고 국기(중국의 선박인 경우)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구기(區旗)(홍콩특별행정구의 선박인 경우)를 게양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잡은 어류 및 기타 해산물
  - 게양한 선박상에서 당해 일방의 영업허가증을 소지하고 국기(중국의 선박인 경우)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구기(區旗)(홍콩특별행정구의 선박인 경우)를 게양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잡은 어류 및 기타 해산물에 가공하여 획득한 상품
  - 당해 일방에서 수집한 것으로, 당해 일방의 소비과정 중에 발생한 원재료회수에 적합한 폐기물품
  - 당해 일방에서 가공제조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원재료회수에 적합한 폐기재료
  - 당해 일방에서 채취 또는 추출한 광산품 내지 당해 일방에서 수집한 것으로, 당해 일방의 소비과정 중에 발생한 원재료회수에 적합한 폐기물품을 이용하여 당해 일방에서 가공하여 얻은 상품
- 실질적 가공표준은 일방에서 완전히 취득한 화물이 아니면 일방 경내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한 후에는 당해 당사자를 원산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의미함<sup>110)</sup>

110) 법무부, 『중국, 홍콩, 마카오 CEPA의 이해』, 2009. 12, pp. 130~131.

- CEPA에서는 '제조 또는 가공 공정', '세목번호 변경', '증가백분비', '기타표준' 또는 '혼합 표준'을 사용하여 실질적 가공을 판단하는 표준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음<sup>111)</sup>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은 일방의 약내에서 가공한 후 얻은 화물에 기본적 특징을 부여한 주요 제조공정 또는 가공공정을 의미함
  - 세목번호 변경은 일방의 원산이 아닌 재료가 당해 일방의 역내에서 가공을 거쳐 생산된 후에, 획득한 상품이 상품명칭 및 코드번호 협조제도 중 4자리 등급의 세목분류에 변화가 발생하고 또한 당해 일방 이외의 국가·지역에서 더 이상 4자리 등급의 세목분류를 변경하는 어떠한 생산·가공·제조가 없는 것을 의미함
  - 완전히 획득한 원료·조립부품·노동가치·상품개발지출가치의 합계가 완제품수출의 FOB 가격 대비 30% 이상이고, 또한 최후의 제조·가공공정이 당해 일방의 경내에서 완성되어야 함
  - 기타 표준이란 상술한 '제조·가공 공정', '세목번호 변경', '증가백분비' 이외에 쌍방이 채택하기로 동의한 원산지 확정 방법을 의미함
  - 혼합 표준이란 상술한 두 개 이상의 표준을 동시에 사용하여 원산지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함
  - 역외가공방식을 통해 홍콩 밖 자회사 또는 역외에서 상품을 마무리 하는 것은 가능하나, 외부 공정을 한 제품의 경우에 원산지 증명을 신청하기 전, 완제품이 홍콩 역내에 위치해야 함
  - 만약 반제품 경우에는 무관세 수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함
  
- 다음의 가공 또는 처리는 단독으로 완성되었던지 서로 결부하여 완성되었던지에 상관없이 미소가공처리로 간주하며 상품의 완전취득 여부를 확정할 때 고려하지 않도록 함
  - 상품의 운송 또는 저장의 목적으로 진행한 가공 또는 처리
  - 상품을 실어 나르는 데 편리하도록 진행한 가공 또는 처리
  - 상품의 판매를 위해 진행하는 포장, 전시 등 가공 또는 처리

111) 법무부, 『중국, 홍콩, 마카오 CEPA의 이해』, 2009. 12, pp. 130~131.

- 원산지 상품은 직접운송 원칙에 따라 일방 역내에서 상대방 역내 부두로 직접 운송되어야 함
- 홍콩-마카오 CEPA의 원산지 규정은 홍콩-중국 CEPA의 원산지 규정과 주요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여 생략하도록 함<sup>112)</sup>

### 3. 홍콩 FTA 원산지 규정

- 완전생산기준(a goods wholly obtained test)은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제품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의미함 <sup>113)</sup>
  - 당사국에서 사육된 동물
  - 당사국에서 재배된 식물(과일류, 채소류) 등
  - 당해 일방에서 수렵 또는 포획, 어업 등을 통해 획득한 제품
  - 당해 일방에서 채취 또는 취득한 광산물
  - 체결국영해의 외부의 해양, 해저, 심토에서 채취한 물품으로 당사국이 관련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이용할 권리를 가진 물품
  - 당해 일방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당해 일방의 국기(또는 홍콩특별행정구 깃발)를 게양한 선박이 공해에서 어획한 어류와 기타 해산물
  - 당해 일방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당해 일방의 국기(또는 홍콩특별행정구 깃발)를 게양한 선박이 공해에서 어획한 어류로 가공한 제품
  - 당해국의 가공절차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 제조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생제품(recovered goods)

112) 외교부통상부, [http://www.mofa.go.kr/www/brd/m\\_4049/view.do?seq=27772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023](http://www.mofa.go.kr/www/brd/m_4049/view.do?seq=27772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023), 검색일자: 2019. 11. 29.

113) 홍콩 무역국 홈페이지상의 FTA별 원산지 규정 참조, <https://www.tid.gov.hk/english/ita/fta/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2.



- 역내 부가가치기준(Ad valorem percentage rule/Value added criterion)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특정한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제조 및 가공작업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원산지 판정 기준임<sup>114)</sup>
  - 홍콩, 중국-조지아 FTA 및 홍콩, 중국-칠레 FTA는 공제법을 적용하며 홍콩, 중국-조지아 FTA 40% 및 60%, 홍콩, 중국-칠레 FTA 40% 및 50%의 RVC를 규정하고 있음
    - 공제법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역내부가가치비율=가격-비원산지재료 가격/FOB×100의 공식으로 계산되며 가격은 FOB 가격을 의미함
  - 홍콩, 중국-뉴질랜드 FTA, 홍콩, 중국-ASEAN FTA는 공제법과 직접법을 모두 사용함(% 언급은 별도 없음)
    - 직접법은 역내산 재료가 많을 때 유리하게 적용되는 방식을 역내부가가치비율=원산지재료가격/조정가치×100의 공식으로 계산됨
    - 두 FTA 모두 40%의 RVC를 규정하고 있음
  - 홍콩, 중국-EFTA의 경우 MC법에 따라 20%의 부가가치 비율을 규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비율=비원산지재료/공장도가격×100의 공식으로 계산되며 상품가격 대비 사용된 비원산지재료비 가치가 일정한 비율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계산방법임
-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이란 사용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세번(HS CODE)과 다른 세번(HS CODE)의 제품이 생산된 경우, 제조·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함<sup>115)</sup>
  - 품목별 적용 기준을 살펴보면 대부분 CTH(Change of Tariff Heading, 4단위 변경기준)를 사용하나 FTA별 품목에 따라 CC(Change of Chapter, 2단위 변경기준), CTSH(Change of sub Heading, 6단위 변경기준)를 적용하기도 함

114) 홍콩 무역국 홈페이지상의 FTA별 원산지 규정 참조, <https://www.tid.gov.hk/english/ita/fta/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2.

115) 홍콩 무역국 홈페이지상의 FTA별 원산지 규정 참조, <https://www.tid.gov.hk/english/ita/fta/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2.

- 홍콩, 중국-조지아 FTA의 경우 CC, CTH를 홍콩, 중국-칠레 FTA는 CC, 홍콩, 중국-뉴질랜드 FTA는 CTH, CTSH, 홍콩, 중국-ASEAN FTA는 CTH, 홍콩, 중국-EFTA의 경우 CC, CTH를 적용하고 있음
- 미소기준은 최소허용기준이라고도 하며, 역외산 수입재료의 비율이 미미할 경우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으로써 10% 이하의 역외산 재료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누적기준(Accumulation)에 따라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재료(원산지재료)로 간주하여 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음
- 최소가공기준(Minimal process)에 따라 ‘불충분가공’(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이라고도 함)이 일어난 경우는 원산지 기준 판정을 위한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최소가공은 다음과 같은 공정을 의미함
  - 운송 또는 보관 중에 물품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
  - 포장개선 또는 물품의 상품성 개선을 위한 작업 또는 하역
  - 분류, 포장, 재포장 등 선적 준비작업
  - 단순조립작업
  - 최초의 물품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산지가 상이한 물품의 혼합
- 직접운송기준에 따라 계약당사국 간 직접운송이 된 제품을 인정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음
  - 단 단순 보관, 또는 경유를 위하여 6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계약국 외의 국가에서 보관된 물품의 경우 직접 운송되었다고 인정함
    - 지역적인 이유로 경유되었을 경우
    - 물품이 어떠한 절차나 가공 없이 단순 하역, 재적재되었을 경우
    - 계약국 외의 국가에서 환적될 시 세관이 통제하여 보관되었을 경우

## VI. 보세제도

### 1. 보세구역

#### 가. 특허보세구역

##### 1) 특허보세구역의 지정

- 해관장은 특별한 요건이나 제한을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받고 일정 기간 또는 1년을 주기로 특허를 발급하거나 갱신할 수 있음<sup>116)</sup>
  - 특허를 다른 이에게 이전하거나 특정 장소에 대하여 특허를 발급한 경우 다른 장소로 대체하는 등 특허를 변경할 수 있음
  - 또한 「과세물품 조례(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를 위반했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위반에 대한 판결과 관계없이 특허를 취소할 수 있음
  - 특허와 관련하여 해관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의 표와 같음

---

116) 「과세물품 조례」 제7조

〈표 2-VI-1〉 특허보세구역 수수료

(단위: 홍콩달러)

구분		연간 수수료
창고	일반보세창고, 공공보세창고	
	특허창고	제조 특허와 함께 발급하는 경우
		기타 경우
제조	주류	제조사
		양조장
		증류기(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교육, 과학, 자선 단체의 경우)
		증류소
		임시 특허
	담배 제조자	
	탄화수소 오일 제조자	

자료: 「과세물품 규제」 Schedule Part 1 내지 Part 4

- 특정 장소에 대한 특허를 신청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해관장 또는 특허를 부여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sup>117)</sup>
- 특허신청서에는 다음을 첨부하여야 함
- 신청서에 명시된 세부사항 및 해관장이 요구한 요건
  - 신청인 이외에 당해 장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요구한 요건
  - 시설요건이 요구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장소의 용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획서, 특허 구역에서 가동될 기계의 상세도면, 용도 및 구내의 위치
  - 특허 구역이 제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장치의 목록
  - 특허 구역이 정기적인 업무시간이 있는 경우 업무시간 또는 정기적이지 않은 경우 그렇다는 진술

117) 「과세물품 규제」 제22조

- 특허 갱신의 신청은 특허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이 되는 때부터 1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함<sup>118)</sup>
  
- 특정 장소에 대한 특허를 부여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거나 특허의 취소를 결정할 수 있음<sup>119)</sup>
  - 해관장은 특허의 부여, 갱신, 취소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
    - 신청인의 재정상태가 적정한지 여부
    - 신청인이 구비했거나 구비하기로 한 회계장부가 감사목적으로 충분한지 여부
    - 신청인이 재고관리, 기록보관, 보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약정한 시스템, 절차,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
    - 신청인과 책임자가 적합하고 적절한 사람인지 여부
    - 기타 관련 사실
  - 해관장은 특허 또는 갱신 신청을 거절하거나 특허를 취소하는 경우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특허의 발급을 신청한 신청인은 당해 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의 선행요건으로 보증, 현금 또는 기타 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음<sup>120)</sup>
  - 담보는 다음의 사항을 보증하여야 함
    - 당해 조례와 관련 규정 및 특허 요건의 준수
    - 관세의 납부
    - 과세대상 물품의 합법적인 이동 전까지 신청인의 점유하에 있는 동안 안전한 보관
  - 이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당해 담보는 정부에게 몰수됨

---

118) 「과세물품 규제」 제22AA조

119) 「과세물품 조례」 제8A조

120) 「과세물품 규제」 제27조

## 1)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 가) 보세창고

- 보세창고란 과세대상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일반보세창고, 공공보세창고, 특허창고로 해관장이 지정한 장소를 말함<sup>121)</sup>
  - 과세대상물품이란 「과세물품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관세가 면제되거나 아직 관세가 납부되지 않은 물품을 말함
  - 보세창고에는 해관장이 서면으로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대상물품 이외의 다른 물품을 보관할 수 없음<sup>122)</sup>

## (1) 시설요건

- 보세창고 관리인은 창고의 바깥에 창고임을 나타내는 표식과 창고 번호, 특허받은 물품의 성질을 표시해야 함<sup>123)</sup>
  - 표식은 영어와 중국어로 최소 75mm 높이의 글자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고 영구적이어야 함
    - “GENERAL BONDED WAREHOUSE FOR”, “一般保稅倉—”
    - “LICENSED WAREHOUSE FOR”, “私用保稅倉—”
    - “PUBLIC BONDED WAREHOUSE FOR”, “公眾保稅倉—”
- 모든 창고, 창고의 모든 부분, 창고의 또는 창고 내의 모든 설비는 양호하고, 청결한 상태로 건설 및 유지되어야 함<sup>124)</sup>

---

121) 「과세물품 조례」 제2조 제1항

122) 「과세물품 규제」 제88조

123) 「과세물품 규제」 제80조

124) 「과세물품 규제」 제81조

- 해관장이 요구하는 보세창고의 상태는 다음과 같음
  - 보세창고는 조명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함
  - 안전에 적절한 창문이 설치되어야 함
  - 문에는 세관공무원이 자물쇠를 걸거나 봉인을 부착할 수 있는 결쇠가 있어야 하며, 자물쇠로 잠긴 경우 세관공무원이 접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어야 함
  - 해관장이 창고에 자물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해관장의 동의 없이 변경 또는 수리를 할 수 없어야 함
  
- 해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보세창고 관리인은 세관공무원이 사용할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유지하여야 함<sup>125)</sup>
  - 당해 공간은 사무실과 화장실, 냉·난방시설, 조명, 가구, 사무용품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해관장이 요청한 시설에는 요금이 부과될 수 없음
  
- 또한 보세창고 관리인은 해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창고 보관물품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하여야 함<sup>126)</sup>
  - 창고 관리인은 물품이 처음 반입되었을 때의 포장을 변경하면 안 되며, 물품의 안전과 물품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을 깔끔하게 정리하여야 함
  - 또한 재고계정·기록을 통해 물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모든 포장에 고유한 표시를 하여야 함
  
- 모든 보세창고 관리인은 창고 내의 적절한 장소에 용기, 측정기, 계량기 및 저울을 구비하고 유지하여야 함<sup>127)</sup>
  - 당해 기구들은 과세대상 물품의 검사, 시험, 견본 추출, 병입, 혼합, 변성, 재포장, 조정, 폐기 또는 기타 처리를 위하여 사용됨

---

125) 「과세물품 규제」 제83조

126) 「과세물품 규제」 제83A조

127) 「과세물품 규제」 제84조

(2) 물품의 보관 및 반출·입

- 일반보세창고, 공공보세창고의 관리인은 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물품을 창고 내에 반입하여야 함<sup>128)</sup>
  - 홍콩 내 선박의 선장, 홍콩 밖에서 도착한 차량의 책임자, 홍콩국제공항의 항공기의 책임자, 선(기)주, 용선(기)인, 선박·항공기의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일반보세창고, 공공보세창고의 관리인은 즉시 선박·항공기·차량에서 과세대상물품을 창고로 이동시켜야 함<sup>129)</sup>
    - 다만 당해 물품이 창고가 특허받은 종류의 물품이 아니거나 물품의 보관을 위한 창고 내 공간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 창고 내에서 과세대상물품의 견본 채취, 재포장, 병입, 혼합, 변성 또는 기타 처리는 해관장의 허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sup>130)</sup>
  - 당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관장에게 작업의 성질, 창고의 이름 및 번호, 작업이 시작되는 날짜 및 시간을 통지하여야 함
  - 세관공무원의 감시하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도 작업을 시작하거나 이행할 수 없음
    - 다만 해관장이 서면으로 허가한 경우는 제외함
  - 과세대상물품은 최소 이동 물량 미만으로 컨테이너에 재포장될 수 없음
  - 견본은 관세가 납부될 때까지 창고에서 반출될 수 없음
  
- 창고에서 하나의 탁송품으로 이동되는 하나의 종류·브랜드·제조용 물질·혼합물인 과세대상물품은 최소 물량 이상이어야 함<sup>131)</sup>

128) 「과세물품 규제」 제89조

129) 「과세물품 규제」 제90조

130) 「과세물품 규제」 제95조

131) 「과세물품 규제」 제97조



- 물품별 최소 반출 물량은 다음과 같음
    - 주류: 8l
    - 켈런: 2,000, 시가: 200, 기타 제조 담배: 1.5kg, 비제조 담배: 15kg
    - 탄화수소 오일: 40l
  - 다만 견본이거나 해관장의 서면 허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 해관장은 창고 내에 3년 동안 남아있는 과세대상물품을 화주가 이동하지 않거나 재반입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당해 물품을 매각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할 수 있음<sup>132)</sup>
- 통지에는 과세대상물품의 상세, 화주의 성명(아는 경우에 한함), 물품이 창고에 반입된 일자, 통지 후 최소 3개월 이후의 매각 예정일자가 포함되어야 함
    -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관보에 게시하여야 하며, 매각은 관보 게시 후 최소 3개월 이후에 이루어져야 함
  - 통지를 받은 화주가 매각 예정일 이전에 물품을 이동하거나 재반입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관장은 공매를 통하여 물품을 매각할 수 있음
  - 공매로 물품이 판매된 경우 판매대금에서 판매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 정부와 물품이 매각되기 전 보관되었던 창고의 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세, 수수료, 요금을 공제한 후 잔액이 있으면 당해 금액은 재무부에 예치되며, 공매 후 12월 내에 화주가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정부에 몰수됨
  - 물품의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해관장이 판단할 때 물품의 상태와 가격이 판매대금으로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폐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 또는 세관공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세창고 관리인은 물품이 창고에서 반출·입되거나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재고계정 또는 기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당해 재고장부 또는 기록을 24개월 동안 창고 내에 보관하여야 함<sup>133)</sup>

132) 「과세물품 규제」 제91조

133) 「과세물품 규제」 제98조

- 재고계정 또는 기록에 기록된 정보의 사본은 전자서비스를 통하여 해관장에게 송부되어야 함
  - 또한 세관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창고 관리인은 검사를 위하여 재고계정·기록을 준비하여야 하며, 사본 또는 세관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또한 보세창고 관리인은 창고에 반출·입된 물품의 이동, 창고사업과 관련하여 지급 또는 수령한 금액과 관련된 모든 서류의 사본을 관련 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함<sup>134)</sup>
- 관련된 것이란 운송지시서, 물품수취증, 송장, 신용전표, 청구서, 선하증권, 항공 화물운송장, 원장, 계산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을 말함
    - 서류에는 발급된 것, 발급을 위해 준비되었지만 발급되지 않은 것, 수신된 것이 모두 포함됨
  - 관련 일이란 다음의 날짜를 말함
    - 창고에서 반출·입된 물품의 이동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 물품을 창고에서 반출한 날
    - 기타의 경우 서류가 발급, 준비 또는 수신된 날
- 일반보세창고 및 공공보세창고 관리인은 매일, 특허창고 관리인은 매주 창고에 반출·입되는 모든 과세대상물품, 창고에서 이행되는 모든 작업, 해관장이 요구하는 기타 관련 사항을 해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sup>135)</sup>
- 보고는 정오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보고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까지 해야 함
    - 해관장이 별도로 지정한 경우 보고 주기는 지정한 기간으로 함
  - 탄화수소 오일 창고의 관리인은 매 월의 첫 업무일 또는 해관장이 별도로 지정한 경우 당해 일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하여야 함

134) 「과세물품 규제」 제98A조

135) 「과세물품 규제」 제100조

- 이월된 모든 종류의 탄화수소 오일의 재고잔량
- 창고에서 수령한 오일의 양
- 창고 내 오일의 작업, 생산, 처리 및 사용 상세
- 관세를 납부하고 인도하거나 사용한 오일의 양
-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인도한 오일의 양
- 허가를 받고 출고한 오일의 양
- 수출한 오일의 양
- 비축유로 인도된 오일의 양
- 이월한 탄화수소 오일의 재고잔량

- 보세창고 관리인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과세대상물품의 부족분 또는 잉여분을 발견한 경우 재고계정 또는 기록에 이를 작성하고, 해관장에게 24시간 내에 보고 하여야 함<sup>136)</sup>
  - 탄화수소 오일의 경우 보세창고 관리인은 정기 보고에 따라 부족분 또는 잉여분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함

### (3) 보세창고 장치 물품의 관세 부과

- 일반보세창고, 공공보세창고, 특허창고의 특허권자는 보관하거나 보관해왔던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 의무를 물품이 허가를 받아 이동될 때까지 부담함<sup>137)</sup>
  - 특허권자는 자신의 관리하에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물품의 이동에 대하여 불법 및 「과세물품 조례」의 위반으로 간주됨
    - 물품의 부족분은 자연적 소모·누출, 사건 및 사고, 회계상 실수 등 해관장이 특허권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봄

---

136) 「과세물품 규제」 제99조

137) 「과세물품 조례」 제29조

- 이에 따라서 보세창고 보관물품의 부족분에 대한 관세평가 시 실제 물품의 양, 성질,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관장은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증거를 이용하여 관세평가를 할 수 있음
- 이러한 증거가 없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해관장이 물품의 양, 성질을 결정하거나 관세 산출을 위한 물품의 가격으로 간주되는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4) 보세창고 외 장치

- 해관장은 과세대상물품이 오직 수출용으로 추가가공되거나 재포장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경우 해관장이 승인한 장소에 운송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서면으로 허가할 수 있음<sup>138)</sup>
- 해관장은 당해 허가를 위하여 요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화주에게 보증, 현금 또는 기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 담보는 허가에 부과된 요건의 준수, 물품의 수출, 물품의 안전한 보관을 보장하여야 함
- 담보가 보장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담보는 정부에게 몰수됨

나) 보세제조장

(1) 공장

- 공장이란 과세대상물품 또는 관세납부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특허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함<sup>139)</sup>

---

138) 「과세물품 조례」 제28A조

139) 「과세물품 규제」 제28조

- 해관장의 명시적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장 내에는 제조를 위한 물품 또는 재료만 반입되어야 함<sup>140)</sup>
  
- 모든 공장의 바깥에는 창고임을 나타내는 표식과 공장 번호, 특허받은 물품의 성질을 표시해야 하고,<sup>141)</sup> 해관장의 요구사항에 따라 담으로 에워싸여야 하며, 건설·유지·청소되어야 함<sup>142)</sup>
- 표식은 영어와 중국어로 최소 75mm 높이의 글자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고 영구적이어야 함<sup>143)</sup>
  - “LICENSED FACTORY FOR”, “領有牌照工廠”
  
- 물품은 공장 내에서 전부가 제조되어야 하며, 제조가 완료되기 전까지 이동될 수 없음<sup>144)</sup>
- 해관장의 허가 또는 서면허가서 없이는 과세대상물품은 공장에서 이동될 수 없음
  
- 과세대상물품을 제조하는 모든 공장은 홍콩 내에서 제조된 과세대상물품의 보관과 관련된 규정의 목적상 특허창고로 간주됨<sup>145)</sup>
- 공장 내의 모든 물품은 제조된 물품과 비제조 물품, 과세대상물품과 관세납부물품을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sup>146)</sup>
  
- 모든 공장의 제조자는 재고장부와 제조장부를 보관하여야 하며, 제조기간 동안 하루에 한 번 이상 그 세부사항을 기재하여야 함<sup>147)</sup>

---

140) 「과세물품 규제」 제30조

141) 「과세물품 규제」 제29조

142) 「과세물품 규제」 제30조

143) 「과세물품 규제」 제29조

144) 「과세물품 규제」 제32조

145) 「과세물품 규제」 제36조

146) 「과세물품 규제」 제33조

147) 「과세물품 규제」 제34조

- 또한 주마다 해관장이 따로 정한 경우 당해 기간마다 또는 해관장이 제출하라고 통지한 때에 공장의 반출·입 물품, 제조물품을 보고하여야 함
  - 보고는 기한의 정오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의 정오 전까지 해관장에게 제출되어야 함

(2) 양조장

- 양조장이란 맥주를 양조하거나 제조하기 위하여 특허받은 자에게 허가된 구역으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포함함<sup>148)</sup>
  - 해관장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구역 내에서는 맥주 양조 또는 제조 외의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양조 또는 제조된 맥주 이외의 주류를 구역에 가지고 오거나 보관할 수 없음<sup>149)</sup>
  - 맥주는 제조가 완료되기 전까지 특허구역내에서 반출될 수 없음<sup>150)</sup>
- 특허구역은 벽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여야 하며, 공장 내의 모든 부분의 문 바깥에는 해당 부분의 사용용도를 영어 및 중국어로 표시하여야 함<sup>151)</sup>
  - 사용용도는 특허구역에 대한 특허가 발급되는 때에 신청서와 함께 해관장에게 제출하였던 계획서에 따름
- 특허구역은 항상 양호하고, 청결한 상태로 건설 및 유지되어야 하며, 해관장의 서면동의 없이 구조변경, 부분의 용도변경을 할 수 없음<sup>152)</sup>
  - 특허구역의 모든 부분은 조명이 설치되어야 함

---

148) 「과세물품 규제」 제37조

149) 「과세물품 규제」 제39조

150) 「과세물품 규제」 제46조

151) 「과세물품 규제」 제38조

152) 「과세물품 규제」 제38조

- 해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특허인은 사무실과 화장실, 냉·난방시설, 조명, 가구, 사무 용품을 갖추고 있는 세관공무원이 사용할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유지하여야 함
- 특허인은 특허구역에 양조장부를 보관하여야 하며, 항상 조사를 위하여 공개해야 함<sup>153)</sup>
  - 특허인은 양조장부에 맥주의 양조 또는 제조 사업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유지하거나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해관장이 정한 사업과 관련한 특정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재하도록 해야 함
- 특허인은 특허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사업과 관련된 상세사항을 해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상세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28일 이내에 해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sup>154)</sup>
  - 해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상세사항은 다음과 같음
    - 특허구역에서 제조되는 모든 맥주의 브랜드명, 상세설명 및 표시용량
    - 맥주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
    - 맥주 종류에 따른 제조과정
    - 각 제품의 판매가격
- 또한 특허인은 구내에 재고장부를 영어 및 중국어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sup>155)</sup>
  - 다음의 사항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즉시 또는 당해 경우가 발생한 날의 마지막 날 전에 장부에 기재하여야 함
    - 특허구역에 들어온 곡물, 당밀, 설탕 기타 발효성 물질의 양, 맥아와 물의 혼합물, 맥아즙을 만들기 위해 양조한 물질의 양
    - 제조된 맥주의 양

---

153) 「과세물품 규제」 제44조

154) 「과세물품 규제」 제45A조

155) 「과세물품 규제」 제48조

- 제조된 맥주를 처분한 방법
- 특허구역에서 이동된 맥주의 양

- 특허인은 매월 14일 이전에 맥주 양조 또는 제조와 관련된 사항을 해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sup>156)</sup>
  - 14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3) 증류소

- 증류소는 주정을 보관하거나 주류를 발효 또는 증류하기 위한 곳으로 특허인 또는 증류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인 증류자에 의하여 운영됨
  - 증류소에서 생산되지 않은 주류, 발효 및 증류에 사용되는 재료·기구 외의 물품은 증류소 내에 반입하거나 보관할 수 없음<sup>157)</sup>
  - 발효 중인 재료는 증류소에서 이동될 수 없으며, 발효된 재료는 증류를 통해 알코올이 모두 제거되지 않는 한 증류소에서 이동될 수 없음
- 모든 증류소의 바깥에는 표식과 증류소 번호를 표시해야 하고,<sup>158)</sup> 해관장의 요구 사항에 따라 벽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여야 하며, 항상 양호하고 청결한 상태로 건설·유지되어야 함<sup>159)</sup>
  - 표식은 영어와 중국어로 최소 75mm 높이의 글자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고 영구적이어야 함<sup>160)</sup>
    - “LICENSED DISTILLERY NO.”, “領有牌照酒房編號”

---

156) 「과세물품 규례」 제49조

157) 「과세물품 규례」 제57조

158) 「과세물품 규례」 제51조

159) 「과세물품 규례」 제52조

160) 「과세물품 규례」 제51조



- 해관장이 요구하는 증류소의 상태는 다음과 같음<sup>161)</sup>
    - 오직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거리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조명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함
    -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소화기 및 소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함
    - 과세대상 주류를 저장하는 하나 이상의 저장소가 있어야 함
  - 해관장의 동의 없이 변경하거나 수리, 각 부분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음
  - 해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증류자는 사무실과 화장실, 냉·난방시설, 조명, 가구, 사무용품을 갖추고 있는 세관공무원이 사용할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유지하여야 함
  - 해관장은 주정저장고, 증류기, 주정파이프, 발효용기, 응축기, 기타 기구 및 장소에 자물쇠 또는 봉인을 하도록 할 수 있음<sup>162)</sup>
- 주정저장고는 과세대상물품 저장과 관련한 규정의 목적상 특허창고로 간주되며, 이 경우 저장고를 위한 별도의 특허는 필요 없음<sup>163)</sup>
- 저장고의 바깥에는 특허창고라는 표시 대신 다음의 표시를 영구적이고 식별 가능한 형태로 하여야 함
    - “SPIRIT STORE”, “酒庫”
  -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류는 주정 저장고로부터 이동될 수 없음
    - 다만 동일한 증류소 내의 다른 주정 저장고로 이동하는 경우는 허가가 필요 없음
  - 해관장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당해 증류소에서 증류된 주류 외의 주류를 주정 저장소에 반입할 수 없음
- 증류자는 해관장에게 서면으로 증류소에서 발효를 위해 사용된 일반 경비를 신고하여야 하며, 서면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한 일반 경비를 변경할 수 없음<sup>164)</sup>

---

161) 「과세물품 규제」 제52조  
162) 「과세물품 규제」 제53조  
163) 「과세물품 규제」 제54조  
164) 「과세물품 규제」 제55A조

- 일반 경비란 증류 공정의 일부로서 발효를 위해 투입되는 원재료의 양을 말함
  
- 주류는 관세 평가 후에 주정저장고 및 증류소에서 이동될 수 있음<sup>165)</sup>
  - 변성된 주정은 정부의 화학자가 주류가 충분히 변성되었음을 증빙한 후에 이동할 수 있음
  
- 증류자는 주류의 발효에 사용되는 물품의 반출·입 기록 장부를 보관하여야 함<sup>166)</sup>
  - 이는 과세대상물품의 보관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장부 또는 기록에 추가하여 보관되어야 함
  
- 증류자는 주 1회 또는 해관장이 지정한 날에 해관장에게 보고해야 함<sup>167)</sup>
  - 보고의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함
    - 전 주에 이월된 과세대상 주류의 잔량
    - 전 주에 이월된 원재료의 잔량
    - 생산된 주류의 양
    - 변성된 주류의 양
    - 관세를 납부한 주류의 양
    - 투입된 원재료
    - 사용된 원재료 양
    - 재고로 남아있는 원재료 잔량
    - 재고로 남아있는 과세대상 주류의 잔량

---

165) 「과세물품 규제」 제60조

166) 「과세물품 규제」 제61조

167) 「과세물품 규제」 제62조

## 나. 세관창고

- 세관창고(Customs and Excise warehouse)란 해관장이 지정하여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해관 내의 게시판에 그 상세를 공고한 장소를 말함<sup>168)</sup>
  - 세관창고는 일반보세창고, 공공보세창고, 특허창고와 같은 보세창고에는 포함되지 않음
  
- 세관창고에 「과세물품 조례」의 적용대상 물품을 보관하고자 하는 자는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기 전에 해관장의 서면허가를 받아야 함<sup>169)</sup>
  - 당해 조례 적용물품을 세관창고에 보관하기 위하여 보관을 시작한 때부터 48시간 이후 하루에 포장당 2.3홍콩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함<sup>170)</sup>

## 2. 보세운송

- 선박, 차량, 항공기, 철도 구내에 있는 「과세물품 조례」 적용대상 물품은 일반보세창고 특허권자 또는 유효한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자에게 이동·반출·송부할 수 없음<sup>171)</sup>
  - 다음의 경우 특허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sup>172)</sup>
    - 과세대상물품이 당해 조례에 따른 면세대상이거나 경유 물품 또는 항공 환적 화물인 경우
    - 당해 조례 적용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선박, 차량, 기차, 항공기의 선주, 용선인, 대리인, 선장, 기타 책임자가 적하목록에 적절히 기재하고, 당해인이 물품의 법적 이익이나 보상을 갖지 않는 경우

168) 「과세물품 조례」 제2조 제1항

169) 「과세물품 규제」 제103A조

170) 「과세물품 규제」 Schedule Part 7 제5조

171) 「과세물품 조례」 제23조

172) 「과세물품 조례」 제17조 제3AD항 내지 제3AG항

- 당해 조례 적용물품을 항공기에서 직접 세관창고, 일반보세창고, 특허창고로 이동시키는 경우
  - 당해 조례 적용물품을 카오룽(Kowloon) 역의 기차에서 카오룽 역 내의 세관 창고로 이동시키는 경우
  - 또한 물품이 수입된 선박, 차량, 기차, 항공기에서 홍콩 내로 처음 이동된 후 관세가 납부된 경우 당해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물품은 최소 이동 물량 이상이 실린 컨테이너에 안전하게 봉인되어 수입, 수출 또는 운송되어야 함<sup>173)</sup>
- 물품별 최소 이동 물량은 다음과 같음
    - 주류: 8l
    - 켈런: 2,000, 시가: 200, 기타 제조 담배: 1.5kg, 비제조 담배: 15kg
    - 탄화수소 오일: 40l
  - 최소 이동 물량은 보다 큰 컨테이너 내에서 완전히 밀봉된 1개 또는 2개 이상의 컨테이너에 실려야 함
    - 컨테이너가 단순히 묶여있거나 고정된 경우 별도의 컨테이너로 간주되며, 모든 허가 및 선적서류에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함
  - 동일 물품은 동일한 컨테이너에 동일한 양으로 포장되어야 하며, 서로 다른 물품은 동일한 컨테이너에 포장될 수 없음
- 해관장의 서면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컨테이너에는 내용물에 대한 상세가 최소 50mm 높이로 식별가능하고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야 함<sup>174)</sup>
- 만약 수출용인 경우 적절한 화인, 일련번호와 최소 25mm 높이의 영문 또는 한자로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함
    - “FOR EXPORT”, “出口用”

173) 「과세물품 규제」 제5조

174) 「과세물품 규제」 제6조

- “AIRCRAFT STORES”, “飛機補給品”
- “SHIP STORES”, “船舶補給品”
- 해관장은 수출되거나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되는 과세대상물품에 대하여 “HKDNP”라는 표시를 하게 할 수 있음
- 컨테이너가 서로 적층될 때 당해 표시가 하나라도 명확하게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수의 표시를 하여야 함

## VII. 수출입 요건

### 1. 수출입 금지 및 제한

#### 가. 전략물자

- 홍콩은 홍콩이 대량학살무기 확산의 도관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상업용, 산업용 또는 연구용의 첨단기술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략 물자의 수출·입을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sup>175)</sup>
- 해관은 전략물자 무역 통제의 집행기관으로서 다음의 책임을 가짐
  - 수출·입 물품의 물리적 검사
  - 수출·입 면허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의 진위 확인
  - 정보 및 기밀의 수집
  - 위반사항의 조사 및 기소
- 무역산업부 총국장의 수입 면허 또는 수출 면허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략물자를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없음<sup>176)</sup>

---

175) 홍콩 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controls/control/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controls/control/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3.

- 전략물자는 화기, 폭탄 등과 같은 군용물품, 핵물질, 화학물질, 전자기기 등 이중용도물품이 해당됨<sup>177)</sup>
- 환적화물에 대한 면제를 받은 자가 수입 또는 수출하는 항공화물 또는 경유물품은 면허가 필요 없으나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된 전략물자<sup>178)</sup>는 제외됨

〈표 2-Ⅶ-1〉 전략물자

구분	예시
군용물품	화기, 탄약, 폭발물, 폭탄, 로켓, 탱크, 독성물질 등 장비 및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이중용도물품	핵물질·시설·장비, 화학물질, 미생물, 독소, 전자기기, 컴퓨터, 센서, 레이저, 내비게이션, 항공기기, 해양기기, 추진체, 우주선 및 관련 장비

자료: 홍콩 무역산업부, “Strategic Trade Control Pamphlet,” 2016. 2.

〈표 2-Ⅶ-2〉 항공 환적화물 전략물자 면허 면제 대상(2019. 1. 1. 기준)

회사명	SCTREX1) No.
CARGOLUX AIRLINES INTERNATIONAL S. A.	000001
HONG KONG AIR CARGO TERMINALS LIMITED	000003
CHINA AIRLINES LIMITED	000006
UPS PARCEL DELIVERY SERVICE LIMITED	000007
ASIA AIRFREIGHT TERMINAL COMPANY LIMITED	000009
JARDINE AIRPORT SERVICES LIMITED	000010
LINEHAUL EXPRESS (HK) LTD	000012
FEDERAL EXPRESS CORPORATION	000015
KOREAN AIR LINES CO., LTD	000016

176) 「수출입 (전략물자) 규제」 제2조

177) 구체적인 대상은 「수출입 (전략물자) 규제」 Schedule 1 참조, [https://www.elegislation.gov.kh/hk/cap60G!en@2017-07-03T00:00:00?xid=ID\\_1438403523957\\_002](https://www.elegislation.gov.kh/hk/cap60G!en@2017-07-03T00:00:00?xid=ID_1438403523957_002)

178) 구체적인 대상은 「수출입 (전략물자) 규제」 Schedule 2 참조,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G!en@2017-07-03T00:00:00?xid=ID\\_1438403523957\\_002](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G!en@2017-07-03T00:00:00?xid=ID_1438403523957_002)

〈표 2-Ⅶ-2〉의 계속

회사명	SCTREX1) No.
TNT EXPRESS WORLDWIDE (HK) LTD	000017
JAPAN AIRLINES CO., LTD	000020
GATEWAY GLOBAL LOGISTICS (HK) LIMITED	000021
DHL AVIATION (HONG KONG) LIMITED	000022
FEDERAL EXPRESS (HONG KONG) LIMITED	000023
EXPEDITORS HONG KONG LIMITED	000025
KINTETSU WORLD EXPRESS (HK) LIMITED	000026
CATHAY PACIFIC SERVICES LIMITED	000027
HONG KONG AIR CARGO INDUSTRY SERVICES LIMITED	000028
VANTEC HITACHI TRANSPORT SYSTEM (HONG KONG) LIMITED	000029

주: Air Transshipment Cargo Exemption Scheme for Specified Strategic Commodities  
 자료: 홍콩 무역산업부, [https://www.stc.tid.gov.hk/english/circular\\_pub/2019\\_stc01.html](https://www.stc.tid.gov.hk/english/circular_pub/2019_stc01.html), 검색일자: 2019. 9. 4.

- 특정 활동에 사용될 의도나 가능성이 있거나 특정 활동에 사용될 것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특정 물품 또는 특정 물품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기술 문서는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없음<sup>179)</sup>
- 특정 물품이란 다음의 물품을 말함<sup>180)</sup>
- 화학물질, 독소, 미생물 또는 기타 생물학적 물질
  - 화학물질 등의 유해한 효과로부터 보호 또는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백신, 변성독소, 단백질, 면역 글로블린
  - 화학물질, 백신 등의 개발, 생산, 보관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 화학물질, 백신 등의 처리에 사용되거나 화학물질, 백신 등의 개발, 생산으로 발생한 폐기물의 폐기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179) 「수출입 (전략물자) 규제」 제2조

180) 「수출입 (전략물자) 규제」 Schedule 3



- 화학 물질, 백신 등의 감지, 식별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 핵무기, 핵무기·생화학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의 개발, 생산, 처리, 보관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물질

○ 특정 활동이란 다음의 활동을 말함<sup>181)</sup>

- 생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처리, 감지, 식별, 보관
- 무기의 개발 및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독소, 미생물, 기타 생물학적 물질의 개발, 생산, 처리, 감지, 식별, 보관
- 생화학무기의 개발, 생산으로 발생한 폐기물의 폐기
- 무기의 개발 및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독소, 미생물, 기타 생물학적 물질의 개발, 생산으로 발생한 폐기물의 폐기

## 나. 수출입 금지 물품

- 수출입 금지 물품이란 「수출입 조례」 및 기타 홍콩의 법령에 따라서 수출·수입이 금지되거나 통제되는 물품을 말함<sup>182)</sup>

- 수출입 금지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허가 또는 증명을 받아야 하며 부과된 요건을 따라야 함

### 1) 수출입 금지 물품

- 가) 「수출입 조례」에 따른 물품

-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입 (일반) 규례」 Schedule 1에 규정된 물품을 수입할 수 없음<sup>183)</sup>

181) 「수출입 (전략물자) 규례」 Schedule 4

182) 홍콩 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prohibited\\_articles/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prohibited_articles/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4.

183) 「수출입 조례」 제6C조

- 수입 금지 물품은 다음과 같음<sup>184)</sup>
  - 농약
  - Pharmacy and Poisons Ordinance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약
  - Chinese Medicine Ordinance Schedule 1에 규정된 중국 한약재
  - Chinese Medicine Ordinance Schedule 2에 규정된 5가지 중국 한약재(능소화, 제천오, 제초오, 위령선, 용담)
  - Chinese Medicine Ordinance 제2조에 따른 중국 전매 의약품
  - 미가공 다이아몬드
  - 냉동 또는 냉장된 소고기·양고기·돼지고기·송아지고기·어린양고기, 이와 같은 고기에서 파생된 냉동 또는 냉장된 내장
  - 냉동 또는 냉장된 가금·오리·거위·칠면조의 사체 또는 당해 사체의 부분
  - 이와 같은 조류의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된 기타 부분
  - Hazardous Chemicals Control Ordinance의 제3조가 적용되는 당해 조례의 제7조의 화학물질
  - Hazardous Chemicals Control Ordinance의 제3조가 적용되는 당해 조례의 제8조의 화학물질을 일부 포함하는 물질
  - 광디스크 마스터링 및 복제 장비
  
- 수출면허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입 (일반) 규례」 Schedule 2에 규정된 물품을 규정된 국가 또는 지역에 수출할 수 없음<sup>185)</sup>
  - 수출 금지 물품과 수출 금지 국가 또는 지역은 다음의 표와 같음<sup>186)</sup>

184) 「수출입 (일반) 규례」 Schedule 1

185) 「수출입 조례」 제6D조

186) 「수출입 (일반) 규례」 Schedule 2

〈표 2-Ⅷ-3〉 수출 금지 물품 및 국가·지역

물품	국가 또는 지역
살충제	모든 국가
Pharmacy and Poisons Ordinance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약	모든 국가
Chinese Medicine Ordinance Schedule 2에 규정된 5가지 중국 한약재(능소화, 제천오, 제초오, 위령선, 용담)	모든 국가
Chinese Medicine Ordinance 제2조에 따른 중국 전매 의약품	모든 국가
미가공 다이아몬드	김벌리 프로세스가 발효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또는 지역
Hazardous Chemicals Control Ordinance의 제3조가 적용되는 당해 조례의 제7조의 화학물질	홍콩 밖의 모든 지역
Hazardous Chemicals Control Ordinance의 제3조가 적용되는 당해 조례의 제8조의 화학물질을 일부 포함하는 물질	홍콩 밖의 모든 지역
가루 분유	홍콩 밖의 모든 지역
광디스크 마스터링 및 복제 장비	홍콩 밖의 모든 지역

자료: 「수출입 (일반) 규제」 Schedule 2

- 다만 수출입 금지 규정은 경유물품, 환적화물 등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sup>187)</sup>
- 경유물품
    - 미가공 다이아몬드는 컨테이너가 봉인되어 있고, 컨테이너가 훼손되거나 봉인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만 수출입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환적화물에 대한 면제를 받은 자가 수입 또는 수출하는 환적화물
    - 광디스크 마스터링 또는 복제 장비는 해관장이 환적통지에 대한 승인을 하고, 수입 또는 수출 시 당해 승인이 유효한 경우만 해당됨
  - 홍콩을 출국 또는 입국하는 자의 개인 수화물로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또는 선박·차량·항공기의 승무원·승객이 소비·사용을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다음의 물품으로 수출·입 목적상 합리적 양의 것

187) 「수출입 (일반) 규제」 제6조

- Pharmacy and Poisons Ordinance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약
- Chinese Medicine Ordinance Schedule 1에 규정된 중국 한약재
- Chinese Medicine Ordinance Schedule 2에 규정된 5가지 중국 한약재(능소화, 제천오, 제초오, 위령선, 용담)
- Chinese Medicine Ordinance 제2조에 따른 중국 전매 의약품
- 홍콩으로 입국하는 자의 개인수화물로 개인용도 또는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15kg을 초과하지 않는 다음의 물품으로 Game, Meat, Poultry and Eggs Regulations 제2조에 따른 보건증명서가 첨부된 것
  - 냉동 또는 냉장된 소고기·양고기·돼지고기·송아지고기·어린양고기, 이와 같은 고기에서 파생된 냉동 또는 냉장된 내장
  - 냉동 또는 냉장된 가금·오리·거위·칠면조의 사체 또는 당해 사체의 부분
  - 이와 같은 조류의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된 기타 부분
- 홍콩을 출국하는 16세 이상의 자의 개인수화물로 수출되는 가루분유로 다음에 해당되는 것
  - 최근 24시간 동안 홍콩을 떠나지 않은 자가 총순중량 1.8kg를 초과하지 않게 수출하는 것
  - 36개월 미만의 유아와 함께 최근 24시간 동안 홍콩을 1회 이상 떠난 자가 봉인되지 않은 상태로 홍콩에서 출발하여 다음 목적지까지 여행하는 기간 동안 아이가 소비하는 합리적인 양을 초과하지 않는 만큼 수출하는 것
- 기타 총국장이 수입 또는 수입 면허에 따른 요청사항을 서면으로 면제한 자가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

나)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물품

- 홍콩은 공공보건, 동물건강, 안전, 보안 및 환경보호 또는 국제협약 및 조약의 준수를 위하여 특정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sup>188)</sup>

188) WTO, *Trade policy review*, 2019. 1, p. 37.

- 오존파괴 물질, 유해 폐기물, 특정 무선통신 장비, 동·식물, 쌀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면허, 허가, 증명 등을 받아야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있음

〈표 2-Ⅶ-4〉 기타 법령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구분	물품	관련 법령	요건
수입/수출	멸종위기 동·식물	Protection of Endangered Species of Animals and Plants Ordinance	농업·수산·보호국의 면허
수입	살아있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Public Health (Animals and Birds) Ordinance / Rabies Ordinance	농업·수산·보호국의 허가
수입	식물 및 식물 해충	Plant (Importation and Pest Control) Ordinance	농업·수산·보호국의 면허 / 인증
수입	개, 고양이 등 광견병에 걸린 동물의 사체 및 제품	Rabies Ordinance	농업·수산·보호국의 면허
수입/수출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제조에 필수적인 화학 물질	Control of Chemicals Ordinance	해관의 승인
수입/수출	각성제, 최면제, 진정제 등의 마약	Dangerous Drugs Ordinance	보건부의 면허 및 증명서
수입/수출	총기 및 탄약	Firearms and Ammunition Ordinance	경찰청의 면허
수입	식품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	식품·환경 위생부의 보건증명서
수입	사람의 시체·유해, 살아있는 유해곤충·해충·세균, 미생물, 박테리아 배양물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Ordinance	보건부의 허가
수입	자동차	Motor Vehicles (First Registration Tax) Ordinance	교통부에 최초 등록세 납부
수입/수출	오존파괴물질	Ozone Layer Protection Ordinance	무역·산업부의 면허
수입/수출	무선통신장비	Telecommunications Ordinance	무선통신당국의 허가 / 판매자 면허
수입/수출	방사선 물질 및 조사 장치	Import (Radiation) (Prohibition) Regulations	보건부의 면허

〈표 2-Ⅶ-4〉의 계속

구분	물품	관련 법령	요건
수입/수출	쌀	Reserved Commodities(Control of Imports, Exports and Reserve Stocks) Regulation	무역·산업부의 면허
수입	육류, 가금류 및 계란	Imported Game, Meat, Poultry and Eggs Regulations	식품·환경 위생부의 허가/ 보건 증명서
수입/수출	모래	Sand Ordinance	토목공학부의 허가
수입	무연 담배제품	Smokeless Tobacco Products (Prohibition) Regulations	식품·환경 위생부에서 금지
수입/수출	폐기물	Waste Disposal Ordinance	환경보호부의 허가
수입/수출	유해화학물질	Hazardous Chemicals Control Ordinance	환경보호부의 허가
수입/수출	무기	Weapons Ordinance	경찰청에서 금지

자료: 홍콩 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prohibited\\_articles/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prohibited_articles/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17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수출입 금지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

### 가) 금지 물품의 수입

- 금지 물품을 수입한 선박·항공기·차량의 소유주는 당해 물품의 수입이 면허의 요건 및 조건에 따라 허가된 경우 「수출입 조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유효한 수입면허가 발급될 때까지 당해 물품을 점유하고 있어야 함<sup>189)</sup>
- 그 외의 경우 해관장이 선주 등에게 금지 물품을 이동 또는 보관하라는 서면 지시를 주기 전까지 당해 물품을 점유하고 있어야 함

189) 「수출입 조례」 제7조

- 「수출입 조례」에 따라 금지 물품에 대한 수입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당해 물품이 수입된 후 7일 이내에 면허증을 선박·항공기·차량의 소유주에게 제시하여야 함<sup>190)</sup>
  - 면허증을 제시받은 선주 등은 물품이 수입면허 요건에 따라 수입이 허가된 것을 확인한 경우 수하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수 있음
  - 또한 면허증을 제시받은 후 7일 이내에 면허증과 선박·항공기·차량의 적하목록의 사본 또는 부분을 총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수출입 조례」에 따라 수입면허를 받은 탁송품 중 일부만 수입된 경우 허가를 받은 자는 배서한 수입면허증과 탁송품의 일부만 수입되었다는 진술과 서명이 있는 신고서를 당해 물품이 수입된 후 7일 이내에 선주 등에게 제시하여야 함<sup>191)</sup>
  - 면허증과 신고서를 받은 선주 등은 물품이 수입면허 요건에 따라 수입이 허가된 것을 확인한 경우 수하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수 있음
  - 면허증과 신고서를 제시받은 후 7일 이내에 면허증에 배서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반환하고, 신고서와 선박 등의 적하목록 사본 또는 부분을 총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나) 금지 물품의 수출

- 선박·항공기·차량의 소유주는 금지 물품의 수출면허가 「수출입 조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될 때까지 당해 물품을 접수할 수 없음<sup>192)</sup>
  - 또는 금지 물품에 대한 수출면허가 발급되었다는 총국장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당해 물품에 대한 운송을 수락할 수 없음
  
- 「수출입 조례」에 따라 수출면허가 발급된 경우 화주는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선주

---

190) 「수출입 조례」 제8조  
191) 「수출입 조례」 제9조  
192) 「수출입 조례」 제10조

등에게 면허증을 송부하거나 면허번호 및 면허신청서 식별을 위한 참조번호를 고지하여야 함<sup>193)</sup>

- 선주 등은 수출면허가 발급되었다는 총국장의 통지를 받은 경우 물품을 수출한 후 14일 이내에 총국장에게 수출면허번호를 고지하고, 선박·항공기·차량의 적하목록의 사본 또는 부분을 송부하여야 함
- 기타의 경우 선주 등은 물품을 수출한 후 14일 이내에 총국장에게 수출면허증과 선박 등의 적하목록 사본 또는 부분을 송부하여야 함

## 2. 수출입 면허

□ 과세대상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함<sup>194)</sup>

- 과세대상 물품이란 다음의 「과세물품 조례」 적용 대상 물품으로 관세가 납부되지 않은 물품을 말함<sup>195)</sup>
  - 주류
  - 담배
  - 탄화수소 오일(항공유, 경유, 휘발유, 등유)
  - 메틸알코올

□ 「과세물품 조례」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에 부과된 모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당해 조례 적용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없음<sup>196)</sup>

- 면허 또는 면허의 면제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조례 적용물품을 수입할 수 없음

193) 「수출입 조례」 제11조

194) Office of Dutiable Commodities Administration, "User Guidebook for Dutiable Commodities," 2019. 2, p. 6.

195) 「과세물품 조례」 제1조, 제3조

196) 「과세물품 조례」 제17조



- 당해 조례 적용물품을 면허 없이 수입한 자는 수입 후 즉시 수입면허 또는 수입 및 수출면허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면허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대상 물품 또는 관세 환급이 적용된 관세 납부물품을 수출할 수 없음
- 다만, 다음의 경우 면허가 요구되지 않음
  - 과세대상물품이 당해 조례에 따른 면세대상이거나 경유 물품 또는 항공 환적 화물인 경우
  - 당해 조례 적용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선박, 차량, 기차, 항공기의 선주, 용선인, 대리인, 선장, 기타 책임자가 적하목록에 적절히 기재하고, 당해인이 물품의 법적 이익이나 보상을 갖지 않는 경우
  
- 수입 및 수출면허를 신규신청, 갱신, 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대상 물품 시스템(Dutiable Commodities System: DCS)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sup>197)</sup>
  - 과세대상 시스템은 <https://www.dcs.customs.gov.hk>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음
  - 신청서는 유효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회사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에 따른 활동을 이행할 책임자 한 명 또는 두 명을 지정하여야 함<sup>198)</sup>
    - 책임자는 회사의 직원이어야 하며, 홍콩의 해관과 연락이 가능한 홍콩에 등록된 거주자여야 함
  
- 수입 및 수출면허의 기한은 1년이며, 면허자는 면허가 만료되기 1개월이 되기 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sup>199)</sup>
  - 다만 갱신 신청은 면허 만료 2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면허 만료가 2개월이 남으면 DCS에서 자동으로 면허자에게 갱신 통지를 송부함

197) Office of Dutiable Commodities Administration, 2019, p. 6.

198) Office of Dutiable Commodities Administration, 2019, p. 8.

199) Office of Dutiable Commodities Administration, 2019, p. 6.

- 수입 및 수출면허를 받은 자는 연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sup>200)</sup>
  - 면허 절차를 완료한 경우 해관은 신청인에게 DCS를 통하여 수수료 납부와 담보제공을 위한 지급통지서를 발급함
  - 신청인은 지급통지서를 인쇄한 후 중국은행(Bank of China (Hong Kong)) 지점, 수표예치기,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수수료와 담보를 납부하여야 함
  - 수수료와 담보의 납부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면허 요건 및 납부 확인 통지서를 DCS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및 담보의 납부가 확인되면 DCS에서 전자 면허 증명서가 발급됨

〈표 2-VII-5〉 수입 및 수출 면허수수료

(단위: 홍콩달러)

구분		연간 수수료	
수입 및 수출	수입 및 수출 면허		1,320
	수입면허	자가사용 또는 상업용 단일선적 물품이 과세가격으로 2,000홍콩달러이하인 경우	수입물품 관세의 10%(최소 2홍콩달러)
		500kl 이하의 탄산수소 오일을 보관할 수 있는 특허창고 관리자의 경우	1,320

자료: 「과세물품 규제」 Schedule Part 1

- 「과세물품 조례」의 적용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선박·항공기·차량의 소유주·용선인·대리인 또는 선장·기장·운전자는 물품이 홍콩에 도착하거나 홍콩을 출발한 후 14일 이내에 해관장에게 물품에 대한 진술을 제출하여야 함<sup>201)</sup>
  - 수입 또는 수출 진술서에는 제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해관장이 요구한 세부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진술서는 과세대상 물품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함

200) Office of Dutiable Commodities Administration, 2019, pp. 7~8.

201) 「과세물품 조례」 제22조

- 「과세물품 조례」 적용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선박·항공기·차량의 적하목록이 「수출입 (등록) 규례」에 따라 제출된 경우 수입 또는 수출 진술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함<sup>202)</sup>
  - 적하목록은 수입 또는 수출 진술서에 포함되도록 요구되는 물품 관련 상세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진술서의 제출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함
  - 다만 당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관장은 선주 등에게 서면 통지하여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진술서가 제출되어야 함
  
- 「과세물품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선박·항공기의 소유주·용선인·대리인 또는 선장·기장은 물품이 홍콩에 도착하거나 홍콩을 출발한 후 14일 이내에 해관장에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는 당해 조례 적용 물품을 운송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제출하여야 함<sup>203)</sup>
  - 선박·항공기의 「수출입 (등록) 규례」에 따른 적하목록이 진술서의 제출 기한 내에 제출된 경우 당해 진술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됨
  - 당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관장은 선주 등에게 서면 통지하여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진술서가 제출되어야 함

---

202) 「과세물품 조례」 제22조

203) 「과세물품 조례」 제22조

## VIII. 권리구제제도

- 홍콩은 「수출입 조례」, 「과세물품 조례」 등에서 관세 관련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관장, 국장 또는 기타 공무원의 결정, 처분, 부작위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자는 당해 결정 등의 통지를 받았거나 결정 등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 등에 반대한다는 서면통지를 행정장관에게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sup>204)</sup>
  - 이의는 기한 중 더 늦은 날까지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장관이 특별히 별도로 지정한 경우 당해 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제기된 이의에 대하여 행정장관은 결정 등을 확인, 변경, 반대할 수 있으며, 다른 결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그러나 행정장관, 판사·지방법사·치안판사 또는 기타 법원의 결정, 처분,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음
  
- 민원인이 해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세관의 책임자에게 확인이 가능하며, 민원조사팀과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음<sup>205)</sup>

---

204) 「수출입 조례」, 제6조

205) 홍콩 해관, [https://www.customs.gov.hk/en/complaint\\_system/channels/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complaint_system/channels/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19.

- 민원제기 시 개인정보제공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나 기타 관련 필요정보의 수집에 동의하고, 민원제기서에 서명함으로써 민원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음
- 민원조사팀의 책임자는 민원담당관으로 해관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민원의 조사를 감시할 책임이 있음<sup>206)</sup>
  - 민원담당관은 민원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민원 조사 및 평가 패널에 조사의 결과와 권고사항을 전달함
- 민원 조사 및 평가 패널은 모든 민원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보장하며, 모든 민원에 대한 조사의 결과와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함<sup>207)</sup>
  - 민원 조사 및 평가 패널은 행정 및 인적 자원부의 부청장 또는 무역통제 책임자가 의장을 맡음
  - 민원 조사 및 평가 패널이 승인한 조사의 결과는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답변됨
- 민원인이 민원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이의제기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sup>208)</sup>
  - 이의제기위원회는 이의신청의 근거를 심사하고 민원 조사 및 평가 패널에 의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권고사항을 승인할 의무가 있음
  - 이의제기위원회의 의장은 부청장으로 당해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임

---

206) 홍콩 해관, [https://www.customs.gov.hk/en/complaint\\_system/investigation/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complaint_system/investigation/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19.

207) 홍콩 해관, [https://www.customs.gov.hk/en/complaint\\_system/investigation/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complaint_system/investigation/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19.

208) 홍콩 해관, [https://www.customs.gov.hk/en/complaint\\_system/appeals/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complaint_system/appeals/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19.

- 민원 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민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sup>209)</sup>
- 해관의 민원 담당자와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투명하며 예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함
  - 민원을 해결하고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세부사항을 제공하여야 함
  - 특정 조사는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양해하여야 하며, 정부와 민원인이 원하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 공공자원 보호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문제를 계속 취급할 수는 없음
  - 민원담당자에게 민원을 특별히 고려하게 하기 위한 유인책을 제공하면 안 되며, 당해 행동은 뇌물수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함
  - 민원을 어떻게, 누가 처리할지 지시하지 않아야 함
- 과세대상물품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과세물품 조례」, 「과세물품 규례」에서 개별 규정에 명시하고 있음
- 해관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은 과세대상물품에 대한 면허, 특허 또는 허가를 발급·갱신·변경·취소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권한의 행사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자는 행정 이의제기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음<sup>210)</sup>
  - 해관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의 과세대상물품에 대한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액, 권한의 행사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자는 행정 이의제기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음<sup>211)</sup>
    - 행정 이의제기위원회는 당사자와 위원회가 관세가 납부되어야 함을 인정할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를 해야 함<sup>212)</sup>
    - 위원회의 관세평가는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 해관장의 관세평가와 동일하게 취급됨

209) 홍콩 해관, [https://www.customs.gov.hk/en/complaint\\_system/note/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complaint_system/note/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19.

210) 「과세물품 조례」 제7조

211) 「과세물품 조례」 제26조 내지 제26A조

212) 「과세물품 조례」 제26B조

- 일반보세창고, 공공보세창고, 특허창고의 특허권자가 설명할 수 없는 보관물품의 이동이 발생한 경우 관세 납부를 위하여 해관장은 관세평가를 하며, 당해 결정에 대한 불만이 있는 자는 행정 이의제기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음<sup>213)</sup>
- 과세대상물품에 대한 면허, 특허 또는 허가 발급 시 관련 요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는 요건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정부에 의하여 몰수되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있는 자는 행정 이의제기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음<sup>214)</sup>

---

213) 「과세물품 조례」 제29조

214) 「과세물품 규제」 제27조

## IX. 벌칙제도

### 1. 세관공무원의 권한

#### 가. 일반적인 권한

##### 1) 검사 및 조사

- 세관공무원과 공무원은 「수출입 조례」의 목적상 면허 등과 관련한 장소·서류·물품 등을 조사할 수 있음<sup>215)</sup>
  - 세관공무원 등은 당해 조례에 따라 등록된 장소나 면허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장소에 합리적인 시간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을 멈추게 하여 탑승하고 조사할 수 있음
  - 또한 면허증·이와 관련된 서류와 정보·면허증 발급과 관련하여 해관장 등에게 제출한 서류, 물품의 원산지 또는 성질과 관련된 서류, 당해 조례에 따라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기록·기타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음
    - 제출 받은 서류를 검사하거나 그 사본을 가져갈 수 있음

---

215) 「수출입 조례」 제20조



- 검사 및 조사를 위하여 면허와 관련된 물품의 견본을 대가의 지급 없이 채취할 수 있음
  - 세관공무원 등이 견본을 채취하는 경우 검사 및 조사 후 직접 화주에게 반환하거나 해관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함
- 어떤 물품이든 그와 관련된 자가 당해 조례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물품을 검사할 수 있음
- 홍콩으로 입국하거나 홍콩을 출국하는 사람을 수색할 수 있음
  - 다만 수색하고자 하는 자와 동성의 자가 없거나 공공의 장소에 있지 않은 경우 수색할 수 없음
- 세관공무원 등은 면허를 발급받은 자 또는 그들의 직원·고용인·대리인에게 당해 조례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2) 신원 확인

- 세관공무원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은 물품이 홍콩에 수입되기 위하여 선박·항공기·차량에 실려 있는 경우 「수출입 조례」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품의 수하인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류 또는 상세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sup>216)</sup>
- 이 경우 세관공무원 등은 선박·항공기·차량의 소유주에게 물품을 선박 등에서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이동하거나, 이동의 허락을 금지하도록 통지할 수 있음
  - 물품이 선주 등이 운영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 보관 중인 경우 통지의 사본은 당해 장소를 운영하는 자에게로 송부되어야 하며, 그들은 물품을 이동시킬 수 없음

---

216) 「수출입 조례」 제20A조

- 물품이동 금지를 통지한 세관공무원은 수하인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상세사항을 확인한 경우 물품을 당해 장소에서 이동하는 것을 통지를 통해서 허가할 수 있음
- 물품이동 금지통지를 받은 선주 등은 물품이동 허가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하인의 신원 또는 상세정보를 얻은 경우 통지서에 명시된 공무원에게 당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나. 특별한 권한

### 1) 수색 및 압수

- 세관공무원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은 「수출입 조례」를 위반한 범죄가 합리적으로 의심되거나 범죄의 증거가 있는 물품과 관련된 장소를 수색하거나 당해 물품을 압수할 수 있음<sup>217)</sup>
  - 세관공무원 등은 관련 장소·구역에 출입하여 수색하거나 선박·항공기·차량을 멈춰 세우고 탐승·검색·수색할 수 있으며, 당해 물품을 압수할 수 있음
  - 당해 조례를 위반했거나 위반하였을 범죄를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당해 조례에 따른 범죄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총중량 250톤 이하 선박과 차량을 압수 할 수 있음
  - 총중량 250톤을 초과하는 선박은 행정서기관 동의 없이 12시간 이상, 항공기는 6시간 이상 억류할 수 없으며, 행정서기관의 서면 명령에 따라 250톤 초과 선박은 추가로 12시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항공기는 6시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억류할 수 있음<sup>218)</sup>
    - 행정서기관의 서면 명령에는 명령이 효력이 있는 시간을 기재하여야 함

---

217) 「수출입 조례」 제21조

218) 「수출입 조례」 제22조

- 세관공무원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은 「수출입 조례」에 따라 면허된 물품의 제조, 가공, 생산, 보관, 분배 또는 판매와 관련된 구역 또는 장소에 출입하여 수색할 수 있음<sup>219)</sup>
  - 세관공무원 등에게 물품, 면허증 등을 압수당한 소유주는 압수된 물품, 면허증 등의 사진을 찍거나 기타 다른 형식의 사본을 만들 수 있음
  
- 세관공무원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은 치안판사의 영장이나 부보좌관 이상의 세관공무원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 있는 구역에는 출입 및 수색할 수 없음<sup>220)</sup>
  - 치안판사는 압수될 수 있는 물품이 국내 장소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정보가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 등에게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수색할 것을 승인하는 영장을 발급할 수 있음
  - 부보좌관 이상의 세관공무원은 압수할 물품이 국내 장소에 있고 즉시 수색하지 않으면 물품이 당해 장소에서 이동할 것이라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세관공무원 등이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수색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승인할 수 있음

## 2) 체포 및 구금

- 세관공무원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은 「수출입 조례」를 위반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자를 추가 조사하기 위하여 영장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음<sup>221)</sup>
  - 세관공무원 등은 체포한 자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야 하며,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Police Force Ordinance에 따라 다루어야 함
  - 치안판사에게 기소되지 않은 상태로 체포한 자를 48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음

---

219) 「수출입 조례」 제21조

220) 「수출입 조례」 제22조

221) 「수출입 조례」 제23조

- 세관공무원 등은 체포를 피하려는 자에게 체포를 위해 필요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음
- 세관공무원 등이 체포를 하려는 자가 출입했다고 믿을만한 장소의 거주자 또는 관리인은 세관공무원 등의 요청에 따라 그를 출입시키고 조례 위반자로 의심되는 자를 찾기 위한 합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세관공무원 등이 당해 장소에 출입하지 못한 경우 당해 장소의 출입·수색을 위한 영장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조례 위반 의심자에게 도망갈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하여 당해 장소를 출입·수색할 수 있으며, 문이나 창문을 부술 수 있음

### 3) 물리력 사용

- 세관공무원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은 「수출입 조례」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음<sup>222)</sup>
  - 다음과 같은 경우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음
    - 당해 조례에 따라 출입과 수색이 가능한 장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 당해 조례에 따라 중지·탐승·이동·역류·수색할 수 있는 선박, 항공기, 차량의 중지·탐승·이동·역류·수색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 당해 조례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방해하는 자나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 당해 조례에 따라 중지·탐승·수색할 수 있는 선박, 항공기, 차량에 수색이 완료되기 전까지 누구도 접근·탐승·하선(하기·하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 당해 조례의 위반에 따른 범죄자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자와 그의 재산 및 소지품을 수색하는 경우

---

222) 「수출입 조례」 제24조

#### 4) 잠금 및 봉인

- 세관공무원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은 「수출입 조례」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장소·구역,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물품을 잠그거나 봉인할 수 있음<sup>223)</sup>
- 세관공무원 등이 장소 등을 잠그고 봉인한 경우 이를 훼손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범죄이며, 5천홍콩달러의 벌금 및 3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다만 자물쇠 또는 봉인을 선의로 훼손하거나 조작했다고 믿을 수 있는 경우 법적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임
  - 선의란 사람의 상해를 방지하거나 장소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말함

#### 다. 세관공무원 권한에 대한 벌칙

- 세관공무원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의 권한과 관련된 「수출입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며, 그에 따른 벌칙이 부과됨<sup>224)</sup>
- 다음의 자는 만홍콩달러의 벌금 및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 당해 조례에 따라 세관공무원 등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거나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
  - 세관공무원 등이 권한을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여한 요구사항, 지시, 요청을 준수하지 않은 자
  - 물품 이동 금지 통지를 준수하지 않은 자
  - 수하인의 신원 및 상세사항에 대한 정보를 통지하지 않은 자
- 고의로 잘못된 보고를 하거나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세관공무원 등에게 제출한 자는 만홍콩달러의 벌금 및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

223) 「수출입 조례」 제25조

224) 「수출입 조례」 제26조

## 2. 벌칙

### 가. 밀수

#### 1) 밀수 목적의 운송수단

- 물품을 홍콩 내·외로 밀수하기 위하여 선박·항공기·차량의 설비, 구조를 변경하거나 변경된 설비, 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임<sup>225)</sup>
  - 이를 위반한 자는 약식판결에 따라 50만홍콩달러의 벌금과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기소에 의한 판결에 따라 200만홍콩달러의 벌금과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
  - 선박 등의 설비, 구조가 다음과 같은 경우 반대의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밀수를 위하여 변경된 것으로 간주됨
    - 해관장, 세관공무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선박 등이 밀수를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의도가 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 홍콩 내에서 선박 등의 가짜 격벽·벃머리·측면·바닥, 물품을 은폐할 목적으로 개조된 비밀·위장 장소 또는 밀수 목적으로 개조된 구멍·파이프·기타 장치가 발견된 경우
  
- 총중량 250톤 이하의 선박을 밀수 목적으로 건조한 자는 약식판결에 따라 50만홍콩달러의 벌금과 2년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기소에 의한 판결에 따라 200만홍콩달러의 벌금과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sup>226)</sup>
  - 다음의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밀수 목적으로 건조된 총중량 250톤 이하의 선박을 수선 또는 유지한 자

225) 「수출입 조례」 제14조

226) 「수출입 조례」 제14A조

- 총중량 250톤 이하의 선박에 탑승한 자로 당해 선박이 밀수를 위하여 사용됨을 알고 있는 자
- 밀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중량 250톤 이하 선박의 선장 또는 기타 선박의 책임자
- 밀수를 위하여 건조 중인 총중량 250톤 이하의 선박 또한 건조된 것으로 간주함
- 다음과 같은 경우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당해 선박이 밀수를 위하여 건조되었거나 건조 중이거나 사용되었다고 간주됨
  - 해관장, 세관공무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선박이 밀수를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의도가 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 선박의 가짜 격벽·뱃머리·측면·바다, 물품을 은폐할 목적으로 개조된 비밀·위장 장소 또는 밀수 목적으로 개조된 구멍·파이프·기타 장치가 발견된 경우
  - 또는 선박에서 총전력이 168kW를 초과하는 선외 엔진을 하나 이상 장착한 설비, 연료탱크·용량이 81기를 초과하는 연료 탱크·선외 엔진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연료탱크 또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이나 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금속 도금이 발견된 경우

## 2) 물품 상세 제공 의무

- 선박·항공기·차량의 관계자는 선박 등이 홍콩에 도착하거나 홍콩에서 출발할 때 선박 등으로 수입 또는 수출되는 화물의 적하목록을 세관공무원 또는 조사원에게 제공하여야 함<sup>227)</sup>
  - 세관공무원에게 밀수 단속을 위하여 선박 등에 탑승하여 화물을 조사하고, 선박 등을 검색하도록 허락하여야 함
  - 선박 등의 관련자란 다음의 자를 말함
    - 선박의 경우 선장 또는 선박 대리인
    - 항공기의 경우 기장 또는 항공기의 소유주

227) 「수출입 조례」 제15조

- 기차를 제외한 차량의 경우 차량의 책임자
- 기타의 경우 기차로 화물을 홍콩으로 운송하는 대리인
- 적하목록 제공, 화물 조사 및 선박 검색 규정을 위반한 자는 천홍콩달러의 벌금과 1개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 적하목록이란 물품의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기록으로 모든 수입 또는 수출화물은 해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적하목록에 기재하여야 함<sup>228)</sup>
  - 해관장은 적하목록에 기재되어야 하는 화물의 상세사항과 탁송품의 상세사항을 신문을 통하여 고시함
  
- 누구도 선박 또는 항공기 소유주의 동의 없이 화물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 할 수 없으며, 누구도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홍콩을 떠나는 차량에 화물을 실을 수 없음<sup>229)</sup>
  - 이를 위반한 자는 만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
  
- 적하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는 위반행위에 따른 유죄이며, 처벌 받을 수 있음<sup>230)</sup>
  - 당해 위반자는 약식판결 시 50만홍콩달러의 벌금과 2년의 징역형을, 기소에 의한 판결 시 200만홍콩달러의 벌금과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른 기소에 대하여 피고는 합리적인 주의를 하였어도 적하목록에 없는 화물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 변호할 수 있음
  - 물품을 점유 또는 운반·이동·예치·은닉·보관·은폐하는 것을 돕거나 기타 물품을 취급하는 자가 고의로 적하목록 없이 물품을 수출하려 하거나 수출하려는 자를 돕는 경우 유죄이며 처벌받을 수 있음

---

228) 「수출입 조례」 제17조

229) 「수출입 조례」 제16조

230) 「수출입 조례」 제18조



- 이 경우 약식판결 시 50만홍콩달러의 벌금과 2년의 징역형을, 기소에 의한 판결 시 200만홍콩달러의 벌금과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

- 선주는 해관장, 세관공무원, 그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박이 홍콩에 도착하기 전 3개월 동안 들렀던 모든 장소, 항구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sup>231)</sup>
  -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 200홍콩달러가 부과될 수 있음

## 나. 규정의 위반

### 1) 「수출입 조례」 위반

- 「수출입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유죄로 판결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
  - 면허가 취소·철회·중지된 경우 종이로 발급된 면허증을 소지한 면허자와 사본을 소지한 자는 즉시 이를 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5천홍콩달러의 벌금과 3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sup>232)</sup>
  - 전략물자 또는 특정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 물품이나 특정 물품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기술문서를 면허 없이 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약식 판결에 따라 50만홍콩달러의 벌금과 2년의 징역, 기소에 따른 판결에 의해 무제한의 벌금과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sup>233)</sup>
  - 수출입 금지 물품(광디스크 마스터링 및 복제 장비 제외)를 면허 없이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0만홍콩달러의 벌금과 2년의 징역의 처벌을 받음<sup>234)</sup>
  - 광디스크 마스터링 및 복제 장비를 면허 없이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약식 판

231) 「수출입 조례」 제19조

232) 「수출입 조례」 제3조

233) 「수출입 조례」 제6A조

234) 「수출입 조례」 제6C조 내지 제6D조

결 시 50만홍콩달러의 벌금과 2년의 징역, 기소에 따른 판결에 의해 200만홍콩달러의 벌금과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sup>235)</sup>

- 금지물품을 수입한 선박·항공기·차량의 소유주가 수입면허가 제시될 때까지 또는 해관장의 이동·보관 통지가 있을 때까지 당해 물품을 점유하지 않은 경우 50만홍콩달러의 벌금과 1년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sup>236)</sup>
- 국장에게 수입면허 및 적하목록 송부 규정,<sup>237)</sup> 부분 선적 시 국장에게 수입면허 및 적하목록 송부 규정,<sup>238)</sup> 국장에게 수출면허 및 적하목록 송부 규정을<sup>239)</sup> 위반한 경우 5천홍콩달러의 벌금에 처함
- 수출입 금지 물품의 조사 및 보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만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sup>240)</sup>
- 명백한 소유주 없이 발견된 금지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라는 해관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만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에 처하게 됨<sup>241)</sup>

## 2) 「과세물품 조례」 위반

- 「과세물품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백만홍콩달러의 벌금과 2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됨<sup>242)</sup>
  - 다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기의 처벌을 받음
    - 제16조의 세관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방해
    - 제17조의 특정 물품의 처리 및 점유 제한

235) 「수출입 조례」 제6C조 내지 제6D조

236) 「수출입 조례」 제7조

237) 「수출입 조례」 제8조

238) 「수출입 조례」 제9조

239) 「수출입 조례」 제11조

240) 「수출입 조례」 제12조

241) 「수출입 조례」 제13조

242) 「과세물품 조례」 Schedule 2

- 제19조의 수출을 위해 적재된 물품의 재하역 금지
  - 제20조의 수입 및 수출 제한
  - 제22조의 수입 및 수출 진술
  - 제23조의 선박·항공기·차량에서의 물품 이동
  - 제24조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창고 등
  - 제36조의 허위 진술, 은폐, 훼손된 면허 또는 허가
  - 제37조의 문서 위조 등
  - 제38조의 면허 또는 허가의 사용 및 이전의 제한
  - 제38A조의 면세 물품이 과세되는 경우
  - 제56조의 판매되는 주류의 용량 및 무게
  - 제58조의 증류 또는 발효 물질의 불법 점유 등
  - 제61조의 증류 등 혼합 주류
  - 제68조의 담배 재배 제한
  - 제71조의 메틸알코올 컨테이너 표시
  - 제73조의 메틸알코올 보관
- 치안판사는 관세의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자에게 당해 범죄에 대한 벌금과 금고 외에 과세대상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sup>243)</sup>
- 해관장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자에게 범죄를 가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중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함<sup>244)</sup>
- 범죄를 가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sup>245)</sup>
- 제17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의한 과세대상 물품의 점유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과세대상 물품이 홍콩의 입국 지점에서 사람에 의해 운송되거나 세관공

243) 「과세물품 조례」 제46조

244) 「과세물품 조례」 제47A조

245) 「과세물품 조례」 Schedule 3

무원이 탑승한 홍콩 도착 선박·항공기·차량·기차에 적재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한 신고를 하였으며, 해관장에 의해 평가된 관세가 만홍콩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5배의 벌금이 부과됨

- 제34A조에 의한 홍콩으로 입국하는 자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단계의 벌금이 부과됨
- 해관장은 범죄를 가중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의 액수를 기재하여 서면통지해야 하며, 당해 통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sup>246)</sup>
  - 위반자의 상세
  - 가중된 범죄의 상세
  - 물품의 상세
  - 위반자가 기소되는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최대의 처벌
  - 위반자가 가중된 벌금을 납부하든지, 치안판사에게 범죄사함을 다루게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 기타 해관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3) 「과세물품 규제」 위반

- 「과세물품 규제」를 위반한 경우 약식판결에 따라 처벌되며, 추가로 당해 규정에 따라 몰수당함<sup>247)</sup>
- 다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50만홍콩달러의 벌금과 12개월의 징역형이, 때 연속되는 위반 시 100만홍콩달러의 벌금과 2년의 징역형이 판결됨
  - 제5조 수입·수출·이동하는 물품의 포장 및 수량
  - 제10조 관세납부
  - 제31조 공장 내 불필요한 물품 금지

246) 「과세물품 규제」 제105조

247) 「과세물품 규제」 제104조

- 제32조 공장 내에서 전체 제조
  - 제35조 (공장) 보고
  - 제39조 (양조장) 사업
  - 제40조 (양조장) 기계 등
  - 제41조 (양조장) 무게 및 용량
  - 제44조 양조 장부
  - 제46조 양조장으로부터 맥주의 이동
  - 제49조 (양조장) 보고
  - 제52조 증류소 건설
  - 제54조 특허창고로 간주되는 주정 보관소
  - 제55A조 (증류소) 일반경비 신고
  - 제58조 (증류소) 발효
  - 제61조 제1항 증류주 생산자에 의한 기록보관
  - 제63조 수입 주류의 원산지 증명서
  - 제66조 특정 주류의 표준 품질
  - 제67조 특정 주류의 표시
  - 제83A조 (창고) 물품의 조사를 위한 제시 및 보관 방법
  - 제84조 (창고) 심사를 위한 설비 등
  - 제95조 (창고) 견본 채취와 기타 물품의 처리
  - 제97조 (창고) 최소 이동 수량
  - 제98조 (창고) 물품 기록
  - 제99조 (창고) 부족분 및 잉여분
- 다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만홍콩달러의 벌금과 12개월의 징역형에 처함
- 제6조 (물품 운송) 컨테이너의 표시
  - 제7조 선박 및 항공기 창고
  - 제8조 승객 및 승무원의 과세대상 물품 소지 허용 수량
  - 제9조 해관장에게 송부된 외국 하역증명서 및 창고 수령증

- 제22A조 (면허 및 허가) 문서 보관
- 제25조 허가서 양도
- 제29조 공장 표시
- 제30조 공장 건설
- 제33조 (공장) 보관
- 제34조 제조 장부
- 제38조 (양조장) 건설
- 제45A조 (양조장) 신고
- 제48조 (양조장) 재고장부
- 제51조 증류소 표시
- 제55조 (증류소) 컨테이너
- 제57조 증류소에 반출·입되는 재료의 제한
- 제60조 관세납부된 주류와 변성 주정의 증류소로부터의 이동
- 제62조 증류주 생산자의 보고
- 제80조 창고의 표시
- 제81조 창고의 건설
- 제83조 (창고) 세관공무원을 위한 사무 공간
- 제85조 창고 개방시간 통지
- 제87조 (창고) 금연 등
- 제88조 (창고) 오직 과세대상 물품만 보관
- 제89조 (창고) 허가에 따른 물품 반입
- 제90조 창고로의 물품 반입 요청
- 제93조 (창고) 손상된 컨테이너
- 제98A조 창고 관리인의 서류 보관
- 제100조 (창고) 해관장 보고
- 제101조 (창고) 비용
- 제103조 (창고) 출석을 위한 요금 지불

- 치안판사는 관세의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자에게 당해 범죄에 대한 벌금과 금고 외에 과세대상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해관장은 「과세물품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범죄를 가중할 수 있음<sup>248)</sup>
  - 범죄를 가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sup>249)</sup>
    - 제9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창고 관리인이 발견 또는 발생한 부족분이나 잉여분을 재고계정에 기록하지 않거나 24시간 내에 해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관장에 의해 평가된 관세가 만홍콩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1단계의 벌금이 부과됨

---

248) 「과세물품 조례」 제47A조

249) 「과세물품 조례」 Schedule 3

## X. AEO 제도

### 1. 개요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WCO의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SAFE Framework)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로 국제 공급망 안전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물품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세관과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말함<sup>250)</sup>
  - 대다수의 WCO 회원국은 SAFE Framework를 구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홍콩의 주요 교역국은 AEO 제도를 도입하였음
  
- 이에 따라 홍콩도 2010년부터 AEO 제도의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인증체계에 따라 해관에서 관리하고 있음<sup>251)</sup>
  - 사전 결정된 보안 표준을 충족한 업체에게 AEO 인증이 부여되며, 당해 업체는 적절한 세관 절차상 혜택을 받게 됨
  - AEO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수출업체, 화물 운송 주선인, 창고 운영자, 운송 업체 등과 같은 국제 공급망과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인증될 수 있음

---

250) 홍콩 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aeo/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aeo/index.html), 검색 일자: 2019. 9. 20.

251) 홍콩 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aeo/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aeo/index.html), 검색 일자: 2019. 9. 20.



## 2. AEO 신청 및 요건

### 가. AEO 인증의 신청

- AEO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공무원이 서류를 심사할 수 있도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sup>252)</sup>
  -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sup>253)</sup>
    - 회사 소개서(배경 및 조직 소개, 주요 사업 활동, 운영 절차, 보안 인증(있는 경우))
    - 법인 증명서 사본
    - 연간 회사 등록처 보고서
    - 사업 등록증 사본, 지점 등록증 사본
    - 회사 조직도
    - 회사 배치도
    - 공급망 절차도
    - 최근 2년간 회계 감사 보고서
    - 자체평가 설문지 및 근거 서류
  - 신청서는 해관의 공급망 안전 관리부의 사무실<sup>254)</sup>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이메일<sup>255)</sup>을 통해 발송할 수 있음
- 
- 서류심사와 별도로 세관공무원은 회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에 요약된 정보가 정확하

252) 홍콩 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process/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process/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20.

253) 홍콩 해관, "Application Form for Hong Kong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Programme," 2018, p. 3.

254)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Office of Supply Chain Security Management, Room 3219, 32/F, Customs Headquarters Building, 222 Java Road, North Point, Hong Kong

255) aeo@customs.gov.hk

계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함<sup>256)</sup>

- 세관과 기업 간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공공검증을 통해 참여 기업은 세관공무원의 지원을 받아 보안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
- 검증에는 AEO 프로그램하에서 기업이 수행하기로 동의한 공급망 보안 절차의 검증도 포함됨
- 주요한 보안조치의 신뢰성과 효과는 위험관리 원칙을 참조하여 평가됨
- 필요한 경우 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선택적인 검증도 이루어질 수 있음

□ AEO 인증 심사에 필요한 기간은 해관에 제출된 정보의 완전성, 기업의 사업 운영에 대한 복잡성 및 공동 검증이 수행되는 사업장의 수에 따라 달라짐<sup>257)</sup>

- 심사는 해관이 기업의 인증 기준 준수 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할 때마다 보완에 대한 조언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 심사가 완료되면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는 3년간 유효한 AEO 인증서가 발급됨<sup>258)</sup>

## 나. AEO 인증의 기준

□ AEO 인증에는 신청인의 내부정책 및 운영절차가 AEO 프로그램에 따라 사전 결정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평가가 필요하며, 당해 기준의 충족 여부는 자체평가 설문지를 통하여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관에서 검증함<sup>259)</sup>

-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AEO 프로그램에 규정된 보안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함을

256) 홍콩 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process/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process/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20.

257) 홍콩 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process/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process/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20.

258) 홍콩 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process/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process/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20.

259) 홍콩해관, "Hong Kong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Programme Self-assessment Questionnaire," 2015. 2, p. 1.

입증하기 위해 기준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근거서류를 해관에 제출할 수 있음

- AEO 인증을 위한 기준은 크게 일반 기준과 안전 및 보안 기준으로 구분됨
  - 일반 기준은 법규 준수도, 상업 기록의 보관, 재정 건전성으로 구분되어 평가됨
  - 안전 및 보안기준은 구내 보안 및 출입통제, 인적 보안, 화물 보안, 운송 보안, 거래업체 보안, 보안 교육 및 훈련, 정보의 교환·접근 및 기밀 유지, 위험 관리 및 사고 복구, 측정·분석 및 개선으로 구분되어 충족 여부를 판단함
  
- AEO 프로그램은 국제 공급망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인증 단계를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이는 인증 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에 따라 달라짐<sup>260)</sup>
  - 1단계 인증 업체는 일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안전 및 보안 기준 중 위험 관리 및 사고 복구, 측정·분석 및 개선은 평가하지 않음

〈표 2-X-1〉 AEO 인증 기준 및 단계

기준		1단계	2단계
일반기준	법규준수도	✓	✓
	상업기록의 보관	✓	✓
	재정건전성	✓	✓
안전 및 보안 기준	구내 보안 및 출입통제	✓	✓
	인적 보안	✓	✓
	화물 보안	✓	✓
	운송 보안	✓	✓
	거래업체 보안	✓	✓
	보안 교육 및 훈련	✓	✓
	정보의 교환·접근 및 기밀 유지	✓	✓
	위험 관리 및 사고 복구		✓
	측정·분석 및 개선		✓

자료: 홍콩 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status/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status/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20.

260) 홍콩 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status/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status/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20.

〈표 2-X-2〉 AEO 인증 자체평가 설문서

기준	질문
법규준수도	지난 2년간 회사, 관리자, 파트너, 독점 소유자, 신청 사업의 책임자가 관세 범죄나 사기, 부정, 부패와 관련한 기타 범죄로 판결받거나 소환된 적이 있나
상업기록의 보관	상업서류, 인증서, 면허증, 허가증, 증명서 또는 기타 수입이나 수출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기 위한 기록시스템을 갖추고 있나
	계획된 주기에 따라 시스템과 기록에 대한 내부감사를 시행하나
	상업기록을 식별, 보관, 검색, 유지, 폐기를 통제하는 절차가 존재하나
	비인가된 접근으로부터 전자화된 기록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조치가 존재하나
재정건전성	최근 2회계연도 동안 감사보고서의 사본, 기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서류의 사본을 가지고 있나
구내 보안 및 출입통제	주요 출입구, 내·외부의 창문과 문에 잠금장치 또는 접근을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나
	주요 출입구, 내·외부의 창문과 문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수선하여 유지하고 있나
	접근을 통제하는 장치(자물쇠, 열쇠 등)를 통제할 수 있는 직원을 지정하고 있나
	구역의 내·외부, 출입구, 화물을 처리하고 보관하는 구역에 적절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나
	구내에 출입하는 차량 및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있나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미인가된 접근을 보고하는 절차와 훈련을 마련하고 있나
	화물을 가공하고 보관하는 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보안하고 있나
	알람, CCTV 감시 시스템 및 보안직원 채용과 같은 구내를 적절히 보안하기 위한 기술이나 절차를 가지고 있나
인적 보안	예비 직원에게 채용 시 이전에 관세 범죄 또는 사기, 부정, 부패를 포함한 기타 범죄로 인하여 판결받은 적이 있는지 신고하도록 요청하나
	현재 직원에게 관세 범죄 또는 사기, 부정, 부패를 포함한 기타 범죄로 인한 판결을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나
	직원에게 회사의 구내에 있는 때에 사원증을 항상 착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나
	계약이 종료된 직원의 구내 또는 정보 시스템에 접근하는 권한을 즉시 취소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나

〈표 2-X-2〉의 계속

기준	질문
화물 보안	화물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안 정책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나
	화물을 보안 지역에 보관하고, 미인가 된 접근을 제한, 감지, 보고하는 절차가 있나
	회사에 물품을 송부하거나 회사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나
	화물 운영을 감독하고, 확립된 절차에 따라 발견된 이상을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직원을 배치하나
	배송과정 동안 화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있나
	보안 봉인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발견된 이상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나
	운송수단의 구조물과 잠금장치가 훼손되지 않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기 위한 절차가 있나
	정기검사와 감사를 통하여 보관된 화물과 재고를 감시하는 절차가 있나
운송 보안	운송수단을 보안 지역에 보관하나
	불법 물품을 숨길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운송수단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검사 기록을 유지하나
	언제든 운송수단과 화물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의 작동자에게 보안 규정, 절차, 지침을 제공하나
	현지 운송 과정에서 운송수단의 활동과 화물의 상황을 추적하고 감시하기 위한 절차가 있나
	운송수단과 관련한 이상을 보고하기 위한 절차가 있나
거래업체 보안	계약 관계를 맺기 전에 거래업체를 검토하고 선택하는 절차가 있나
	거래업체와의 계약서, 협약서에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업체에 보안준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보안선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나
	계약서 또는 보안선언에 기재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를 검토하나
보안 교육 및 훈련	국제 공급망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구체적인 보안 훈련을 제공하나
	직원이 회사의 보안 및 안전 조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의사소통 채널이 있나
	교육을 위한 지침, 유인물이 올바르게 지속되도록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나

〈표 2-X-2〉의 계속

기준	질문
정보의 교환·접근 및 기밀 유지	미인가된 접근이나 오용에 대하여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정책과 관리 조치를 마련하고 있나
	요용 및 미인가된 변경으로부터 화물 정보를 식별가능하고, 완전하며, 정확하게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나
	정보 보안 위반 또는 위반 시도를 식별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있나
	민감한 정보는 인가된 직원만 이용하고, 문서를 적절히 보관, 이전, 폐기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나
	예기치 못하게 사업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삭제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설비를 마련하고 있나
위험 관리 및 사고 복구	위기에 대처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전체 보안 시스템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비상 계획이 있나
	직원에게 비상계획의 상세사항을 알리기 위한 절차가 있나
	사고 또는 위험상황에서 적절한 법적 집행기관에 제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고를 적절히 조사하고 분석하는 절차가 있나
	직원들이 비상조치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정기적인 훈련을 시행하나
측정·분석 및 개선	사업 환경 내에서 보안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직원을 지정하고 있나
	보안 정책과 관행의 갱신을 포함하여 보안관리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나
	보안 및 위험 평가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직원이 자신의 책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모든 평가 절차와 보고서가 검사를 위해 적절히 보관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나
	전체 보안 관리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해 채택된 권장사항이 적시에 적절하게 구현되도록 하는 절차가 있나

자료: 홍콩 해관(2015)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다. 사후관리

- AEO 인증이 완료되어 인증서를 받은 업체는 자발적으로 AEO 인증에서 부여한 표준의 준수를 유지하여야 함<sup>261)</sup>
  -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AEO 상태에 영향을 주는 사업의 변동사항 또한 해관에 통지하여야 함
  
- AEO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인증업체는 인증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해관에 인증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음<sup>262)</sup>
  - 또한 인증업체는 유효기간 동안 언제든지 서면으로 인증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이 철회되면 AEO 지위와 AEO에 따른 혜택도 모두 없어짐
  
- 해관은 AEO 지위를 중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음<sup>263)</sup>
  - AEO 기준의 미충족을 포함하여 수정되지 않는 보안 취약점, 관세 위반의 존재 등의 상황에 AEO 지위는 중지됨
  - AEO 지위가 중지된 이후에도 필요한 보안을 하지 못하거나 심각한 관세 위반이 발생한 경우 해관은 AEO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인증이 취소되면 업체의 AEO 지위와 AEO에 따른 혜택도 모두 없어지며, 2년 내에 AEO 인증을 재신청할 수 없음

---

261) 홍콩 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post/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post/index.html), 검색 일자: 2019. 9. 20.

262) 홍콩 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post/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post/index.html), 검색 일자: 2019. 9. 20.

263) 홍콩 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post/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post/index.html), 검색 일자: 2019. 9. 20.

### 3. AEO 혜택

#### 가. AEO 혜택

- AEO는 강화된 보안 공급망과 개선된 사업성과의 통합을 주요 목적으로 함<sup>264)</sup>
  - AEO는 업체가 공급망에 참여하는 때에 보안 관행의 무결성을 보장하도록 하며, 업체 내의 자산과 기능의 관리를 최적화하도록 도움
  - 최초 AEO 인증 신청 시 자체 평가를 통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의 간소화를 이룰 수 있음
  
- 이러한 보안 강화에 따른 이익 이외에 AEO 업체는 세관 검사 감소, 우선 통관과 같은 무역 원활화 등의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음<sup>265)</sup>
  - AEO 인증업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음
    - 세관 검사 감소
    - 우선 통관
    - 안전한 거래자로서의 영업권 향상
    - 경쟁력 및 시장성 강화
    - 재고 분실, 도난 감소
    - 상호인정약정에 따른 상대국에서 부여된 혜택

---

264) 홍콩 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benefits/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benefits/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20.

265) 홍콩 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benefits/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benefits/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20.



## 나. 상호인정약정에 따른 혜택

- 홍콩은 외국의 AEO 혜택을 홍콩 AEO 업체가 받아 홍콩 AEO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국가와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sup>266)</sup>
  - MRA의 확대를 통한 안전한 국제 공급망을 확보하고, 국제무역센터 또는 지역 물류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홍콩이 MRA를 체결한 나라는 중국 본토, 인도, 우리나라,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캐나다임<sup>267)</sup>
  - 우리나라는 홍콩과 2014년 8월 24일 MRA를 체결하여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sup>268)</sup>
    - 인증업체에 대한 수입 검사율 축소
    - 화물검사 시 우선 검사 등으로 신속통관 가능
    - 천재지변, 테러 등 물류장애로 정상적인 수출입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우대조치하여 지속적 보장
  
- 홍콩의 AEO 업체가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입신고를 위하여 홍콩 AEO 인증번호를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함<sup>269)</sup>
  - 우리나라의 수입자는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해외공급자 코드를 부여받아야 하며, 해외공급자 코드 신청 시 AEO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규 코드를 받거나 기존 코드를 업데이트하여야 함

266) 홍콩 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aeo/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aeo/index.html), 검색 일자: 2019. 9. 20.


267) 홍콩 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mra/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mra/index.html), 검색 일자: 2019. 9. 20.

268) 관세청, 『AEO MRA 100% 활용하기』, 2014. 9. 17, p. 17.

269)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Hong Kong Customs Implements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on Authorized Economic Operators with the Korean and Mainland Customs," 2014. 8. 28, p. 4.

- AEO 인증 지위가 반영된 해외공급자 코드를 사용하여 수입신고하면 AEO에 따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의 AEO 업체로부터 홍콩으로 수입하는 경우 홍콩의 업체는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AEO 인증을 받은 회사의 상호와 주소, 화물 정보를 운송인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함<sup>270)</sup>
- 이와 같은 정보를 받은 운송인은 해관에 신고하는 운송수단의 적하목록에 기재하여야 함

[그림 2-X-1] 홍콩-우리나라 MRA에 따른 적하목록 작성 예시

SEA IMPORT CARGO MANIFEST					1. PAGE NO. 21
2. Master Reference No.		3. Export / Import			
4. Name of Carrier NAMSUNG SHIPPING CO., LTD	5. Name of Ship WIGASUS TERA	6. Voyage No. 14075	7. Call Sign VTCM	8. Nationality of Ship MARSHALL ISLAND	
9. Port of Loading SEHON, KOREA	10. Port of Arrival HONGKONG, HONG KONG		11. Date of Arrival 2014-06-01	12. Name of Carrier Agent NAMSUNG SHIPPING CO., LTD	
13. No.	14. Container No. / Seal No.	15. Mark and Number	16. Description of Goods	17. 1) No. of PEGS 2) Gross Weight 3) Measurement 4) Service Term	
13.1 B/L No. 13.2 Shipper 13.3 Consignee 13.4 Notify NSL18901409729 20 XE HONGKONG LOGISTICS (KOREA) CO., LTD. (NO OP) -AS PER ATTACHED RIDER- SEOUL, KOREA TO KIDS ORION MODERN TERMINAL, BERKE OAK, KWAI CHUNG, N.T., HONG KONG TEL: (852) 2316 1881 / FAX: (852) 2071 0812 *AS PER AS CONSIGNEE	14.1 TORU1873493 (852) / NLS12123 		16.1 SHIPPERS LOAD & COUNT 16.2 SAID TO BE 16.3 NICE 16.4 AS PER ATTACHED RIDER- PLACE OF DELIVERY: HONGKONG CY	17.1 489 17.2 8008 17.3 4,888 CBM 17.4 15018CBM (CY/CY)	

자료: 관세청, 2014, p. 18.

270)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2014. 8, p. 4.

#### 다. AEO 로고의 사용

- AEO 인증 업체는 AEO 로고를 홍보 자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써 대중은 당해 업체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음<sup>271)</sup>
- 인증 업체는 AEO 인증서에 지정된 유효기간 동안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AEO 인증이 만료된 후 갱신되지 않으면 로고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함
- 로고를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 견본을 해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관은 약 7일 간의 처리 기간 후에 사용 가능한 로고 디자인을 승인함

[그림 2-X-2] 홍콩 AEO 로고



자료: 홍콩 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guide/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guide/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20.

---

271) 홍콩 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guide/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guide/index.html), 검색일자: 2019. 9. 20.

## 제3편 수출입 통관 절차

### I. 수출입 통관 절차

- 수입이란 물품을 홍콩으로 가지고 오거나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수출이란 물품을 홍콩에서 가지고 나가거나 가지고 나가도록 하는 것을 말함<sup>272)</sup>
- 홍콩은 중국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구역 「홍콩기본법」에 따라 별도의 관세영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홍콩으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함<sup>273)</sup>
  - 따라서 중국 본토에서 물품을 수입하거나 중국 본토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도 수입 신고 또는 수출신고해야 함

---

272) 「수출입 조례」 제2조

273) 홍콩해관, “How to Complete and Lodge Import / Export Declarations,” 2018, p. 1.

## 1. 일반 수출입 통관 절차

### 가. 사전 적하목록 제출

- 선박·항공기·차량의 관계자는 세관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선박 등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적하목록을 세관공무원 또는 조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함<sup>274)</sup>
  - 선박 등의 관계자는 다음의 자를 말함
    - 선박의 경우 선장 또는 선박 대리인
    - 항공기의 경우 기장 또는 항공기의 소유주
    - 기차를 제외한 차량의 경우 차량의 책임자
    - 기차의 경우 기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홍콩 내의 대리인
- 적하목록은 서면, 전자기록 또는 특정 기관(Service Provider: SP)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sup>275)</sup>
  - 특정 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함<sup>276)</sup>
    - Brio Electronic Commerce Limited
    - Global e-Trading Services Limited
    - Tradelink Electronic Commerce Limited

### 1) 해상 및 철도 화물

#### 가) EMAN

- 적하목록 전자 서비스(Electronic System for Cargo Manifests: EMAN)는 특정

---

274) 「수출입 조례」 제15조

275) 「수출입 조례」 제15조

276) 「수출입 조례」 Schedule 2

기관이 정부와 협약하여 항공·철도·해상·내수 운송인에게 적하목록을 제출하기 위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sup>277)</sup>

- 운송인은 EMAN을 이용하여 적하목록을 적시에 안전하게 해관, 통계조사부, 무역산업부에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음

□ 물품이 수입 또는 수출되기 전 물품정보를 요청하는 「수출입 조례」 제15조에 따라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EMAN은 해상·내수·철도 화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sup>278)</sup>

□ 홍콩해관은 원활한 물품 통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하목록 전자 시스템(Electronic System for Cargo Manifests: EMAN)을 통하여 운송인에게 적하목록 요청서(Manifest Demand)를 송부하여 적하목록의 제출을 요구함<sup>279)</sup>

- 당해 메시지를 받은 운송인은 물품 운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해관에 물품 통관을 위한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함<sup>280)</sup>

□ 적하목록 요청서는 수입자를 확인하기 위한 물품 유치 통지서(Detention Notice

277) 홍콩해관, “How to Submit Cargo Manifests by Using Electronic Service for Air, Rail, Ocean and River Carriers(EMAN Guidebook),” 2019. 8, pp. 1~2.

278) 홍콩해관, 2019, p. 7.

279) 홍콩해관, 2019, p. 18.

280) EMAN에서는 사후 제출 적하목록과 구분하기 위하여 Statement 1 cargo manifest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야 함(홍콩해관, 2019, p. 8)

This manifest does not contain all the particulars prescribed under Section 17 of the Import and Export Ordinance (Cap 60). It is to be submitted to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solely for the purpose of Section 15 of the Import and Export Ordinance. I understand that submissions of the manifest containing full particulars are required under Regulations 11 and 12 of the Import and Export (Registration) Regulations, Sections 8, 9 and 11 of the Import and Export Ordinance, Regulations 6DAC and 6DAE of the Import and Export (General) Regulations, Regulations 6B and 6BB in the Eighth Schedule of the Import and Export (General) Regulations, and Regulations 5, 6 and 8 of the Reserved Commodities (Control of Imports, Exports and Reserve Stocks) Regulations. Submissions in compliance of these provisions will be made separately in due course.

Form 1)와 함께 발송되며,<sup>281)</sup> 당해 통지를 받은 운송인은 선박에서 물품을 이동하거나 이동 허가를 하지 않아야 함<sup>282)</sup>

- 운송인은 의사소통의 오류로 인한 정당한 승인 없는 물품 이동이나 지연 운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통지를 받은 후 30분 이내에 해관에 물품 유치 통지서를 접수통보해야 함<sup>283)</sup>

#### 나) e-SCC

□ 전자 해상 통관(e-Sea Customs Clearance: e-SCC)은 운송 주선인 또는 물류 회사가 혼재 화물<sup>284)</sup>의 통관을 위해 사전에 물품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sup>285)</sup>

- 해상 운송 주선인은 House B/L의 물품 정보를 Excel 또는 CSV 파일을 전자 메일로 해관에 제출할 수 있음<sup>286)</sup>

□ 혼재 화물의 물품 정보를 사전에 제출하고자 하는 운송 주선인은 선적 국가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전자메일로 House B/L 정보를 송부하여야 함<sup>287)</sup>

- 전자메일에는 선적항, 선하증권 번호, 연락처 등 물품 정보가 요약된 헤더 파일과 House B/L 정보가 첨부되어야 함
  - 필요한 경우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도 함께 송부하여야 함

---

281) 홍콩해관, 2019, p. 18.

282) 「수출입 조례」 제20A조

283) 홍콩해관, 2019, p. 19.

284) 운송 주선인이 화주가 다른 화물을 집화하여 운송을 의뢰하고 각 화주에게 House B/L을 발행한 화물

285)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escs/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escs/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2.

286)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escs/about/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escs/about/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2.

287)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escs/sub\\_method/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escs/sub_method/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2.

- House B/L 정보를 송부받은 해관은 물품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출입 조례」 제20B조에 따른 물품 유치 통지서(Detention Notice Form 2)를 발급함<sup>288)</sup>
  - e-SCC 제도에 따라 House B/L 정보를 사전에 제출한 물품은 수하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물품 유치 통지서(Detention Notice Form 1)는 발급되지 않음<sup>289)</sup>
    - 다만 중국 남부 항구, 대만 등 근거리에서 운송된 화물의 경우 House B/L 정보가 물품이 도착한 후에 제출되므로 Detention Notice Form 1이 발급될 수 있음<sup>290)</sup>
  
- e-SCC에서는 운송 기간별로 선적국가를 구분하여 물품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이에 따른 해관의 처분의 종류 및 기간을 명시하고 있음<sup>291)</sup>
  - 운송 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도착 예정일 2일 전에, 운송 기간이 4일 이상 10일 미만인 물품은 도착 예정일 1일 전에 물품 정보가 제출되어야 하며, 해관은 필요한 경우 물품 유치 통지서(Form 2)를 물품 도착 전에 발급함
  - 운송 기간이 3일 이하인 물품은 실제 도착일 1일 후에 물품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관은 필요한 경우 신원 확인을 위한 물품 유치 통지서(Form 1)을 물품 도착 전에, 물품 검사를 위한 물품 유치 통지서(Form 2)를 물품 정보 제출 1일 후에 발급함

---

288)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escc/sub\\_method/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escc/sub_method/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2.

289)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escc/benefits\\_and\\_costs/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escc/benefits_and_costs/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2.

290)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escc/sub\\_method/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escc/sub_method/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2.

291)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escc/sub\\_method/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escc/sub_method/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2.



〈표 3-1-1〉 e-SCC 물품 정보 제출 일정

구분	해상 운송기간	국가	제출일정	세관처분 <sup>1)</sup>	
				Form 1	Form 2
A	10일 이상	모든 아메리카 국가 모든 유럽 국가 호주, 뉴질랜드 모든 아프리카 국가 모든 대서양 및 인도양 섬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 파키스탄 모든 인도 항구(첸나이, 투티코린, 비사카파트남 제외)	도착 예정일 2일 전	-	선박 도착 전
B	4~10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인도 항구(첸나이, 투티코린, 비사카파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캄보디아, 일본, 한국 모든 중국 항구(상해, 심천, 광둥성, 광서성, 복건성, 해남성 제외) 모든 태평양 섬	도착 예정일 1일 전	-	선박 도착 전
C	3일 이하	남부 중국 항구(상해, 심천, 광둥성, 광서성, 복건성, 해남성) 대만, 필리핀, 베트남	실제 도착일 1일 후	선박 도착 전	물품 정보 제출 1일 후

주: 1) 필요한 경우에 한함

자료: 홍콩 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esc/sub\\_method/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esc/sub_method/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2.

## 2) 항공 화물

- 홍콩 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항공 화물은 항공 화물 통관 시스템(Air Cargo Clearance System: ACCS)을 통하여 물품 정보를 제출할 수 있음<sup>292)</sup>

292)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ecargo/air/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ecargo/air/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2.

- ACCS는 항공 화물의 통관을 위하여 고안된 시스템으로 모든 종류의 항공 화물에 대한 통관을 처리함
- ACCS를 통하여 화물 작업자와 세관은 직접 물품 정보와 통관 지시사항을 주고 받을 수 있음

### 3) 육상 화물

- 차량을 통하여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과 관련한 정보를 수입 또는 수출 예정일의 14일 전 이후에 해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sup>293)</sup>
  - 차량이란 「도로교통 조례 (Road Traffic Ordinance)」 제374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로 다음의 것을 제외함<sup>294)</sup>
    - 개인 소유의 버스
    - 개인 소유의 차
    - 개인 소유의 라이트 버스
    - 공공 버스
    - 공공 라이트 버스
  -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물품을 차량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는 벌금에 처함<sup>295)</sup>
    - 당해 물품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금지 물품인 경우 50만홍콩달러의 벌금과 2년의 징역에 처함
- 물품 정보는 전자기록 형태로 도로 화물 시스템(Road Cargo System: RCS)을 통하여 제출되어야 함<sup>296)</sup>
  - 포장 물품의 경우 제출해야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sup>297)</sup>

293) 「수출입 (전자 화물 정보) 규례」 제4조

294) 「수출입 (전자 화물 정보) 규례」 제3조

295) 「수출입 (전자 화물 정보) 규례」 제4조

296) 「수출입 (전자 화물 정보) 규례」 제4조

297) 「수출입 (전자 화물 정보) 규례」 Schedule 1 Part 1

- 포장 명세 및 포장 번호
- 각 포장 내에 들어있는 물품의 명세
- 각 포장의 송하인 이름 및 주소
- 각 포장의 수하인 이름 및 주소
- 홍콩으로 수입되는 예정일(가능한 경우)
- 홍콩에서 수출되는 예정일(가능한 경우)
- 벌크 화물은 다음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sup>298)</sup>
  - 물품의 총중량 및 총 용적
  - 물품의 수량(가능한 경우)
  - 물품의 명세
  - 물품의 송하인 이름 및 주소
  - 물품의 수하인 이름 및 주소
  - 홍콩으로 수입되는 예정일(가능한 경우)
  - 홍콩에서 수출되는 예정일(가능한 경우)
- 물품 정보를 제출받은 해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통관 화물 관리 번호를 승인하여 정보 제출자에게 발급함<sup>299)</sup>
  - 통관 화물 관리 번호는 전자 기록 형태로 발급됨
- 정보 제출자와 물품이 수입 또는 수출될 차량의 책임자가 다른 경우 정보 제출자는 발급받은 통관 화물 관리 번호를 차량 책임자에게 전달하여야 함<sup>300)</sup>
  - 또한 해관장에게 제출한 물품 정보 중 물품 명세를 차량의 책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함

298) 「수출입 (전자 화물 정보) 규례」 Schedule 1 Part 2

299) 「수출입 (전자 화물 정보) 규례」 제5조

300) 「수출입 (전자 화물 정보) 규례」 제6조

-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할 차량의 책임자는 통관 화물 관리 번호와 「도로교통 조례」 제374조에 따른 차량 등록 표시를 해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sup>301)</sup>
  - 당해 정보는 RCS를 통해 전화로 전달하거나 RCS를 통하여 전자 기록 형태로 송부하여야 함
  - 당해 정보를 제출한 차량의 책임자는 통관 지점에 출입하기 전 최소 30분 또는 RCS가 지시한 시간을 기다려야 함
  - 차량을 이용하여 홍콩 내·외로 물품을 운송하는 자가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벌금에 처함
    - 당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지 물품임을 알고 차량을 이용하여 홍콩 내·외로 물품을 운송한 자가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만홍콩달러의 벌금과 2년의 징역이 부과됨
  
- 통관 화물 관리 번호가 제출된 물품의 명세와 해관장이 승인한 통관 화물 관리 번호와 관련된 물품의 명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됨<sup>302)</sup>
  - 명세와 일치하지 않은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지물품이고, 그 사실을 알고 수입 또는 수출을 한 자는 50만홍콩달러의 벌금과 2년형의 징역에 처함
  
- 세관 공무원은 통관 지점에 설치된 영상 표시장치를 통하여 차량을 정차하거나 차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를 통과하라는 지시를 차량 책임자에게 할 수 있음<sup>303)</sup>
  - 당해 지시를 받은 차량 책임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 벌금과 6개월 징역에 처함

301) 「수출입 (전자 화물 정보) 규제」 제7조

302) 「수출입 (전자 화물 정보) 규제」 제8조

303) 「수출입 (전자 화물 정보) 규제」 제9조

- 홍콩을 출발하거나 도착한 차량이 물품을 운송하지 않는 경우 차량의 책임자는 물품을 운송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여야 함<sup>304)</sup>
  - 이러한 표시는 해관장이 제공한 장치를 통해 통관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에 처함
  
- 해관장은 통관 지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통관 지점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통관 지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함<sup>305)</sup>
  - 차량의 통관 지점은 다음과 같음<sup>306)</sup>
    - Lok Ma Chau Boundary Control Point
    - Man Kam To Boundary Control Point
    - Sha Tau Kok Boundary Control Point
    - The Clearance Area of the Shenzhen Bay Port Hong Kong Port Area, being the area set out in Part 1 of Schedule 1 to the Shenzhen Bay Port Hong Kong Port Area Ordinance(Cap. 591)
    - Hong Kong-Zhuhai-Macao Bridge Hong Kong Port

## 나. 물품 검사 및 반출

- 홍콩으로 수입되는 선박·항공기·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세관공무원이 검사하기 원하는 경우 검사의 편의를 위하여 물품의 수하인에게 검사를 위한 장소로 물품을 이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sup>307)</sup>
  - 운송되는 물품이 금지 물품인 경우 당해 요구는 선박·항공기·차량의 소유자에게 통지될 수 있음
  - 이러한 통지의 사본은 물품을 이동하여야 하는 장소의 운영인에게 송부되어야 함

304) 「수출입 (전자 화물 정보) 규례」 제10조

305) 「수출입 (전자 화물 정보) 규례」 제13조

306) 「수출입 (전자 화물 정보) 규례」 Schedule 2

307) 「수출입 조례」 제20B조

- 통지를 받은 수하인, 선주 등 운영인은 통지에 명시된 장소에서 물품을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음<sup>308)</sup>
  - 물품의 이동 금지는 다음 경우까지 유지되어야 함
    - 세관공무원이 물품 검사를 완료한 경우
    - 세관공무원이 수하인, 선주 등 운영인에게 물품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서면으로 알린 경우
  
- 물품 검사를 위한 유치 통지서(Detention Notice Form 2)는 EMAN 등을 통하여 검사를 위해 선택된 수입 물품에 대해 발급되며, 운송인·터미널 운영인·물품보관 장소의 책임자는 반출 통보를 받을 때까지 물품의 안전을 책임져야 함<sup>309)</sup>
  - 유치된 물품에 대한 검사가 불필요하거나 후속 조치의 편의를 위해 다른 장소로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해관은 운송인 등에게 물품 반출 통보를 함
  - 물품 반출 통보를 받은 운송인 등은 물품을 반출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음

#### 다. 사후 적하목록 제출

- 물품을 홍콩으로 가지고 오거나 홍콩에서 가지고 나가는 운송인은 물품의 출발일 또는 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함<sup>310)311)</sup>

308) 「수출입 조례」 제20B조

309) 홍콩해관, 2019, p. 18.

310) 홍콩해관, 2019, p. 7.

311) EMAN에서는 사전 제출 적하목록과 구분하기 위하여 Statement 2 cargo manifest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야 함(홍콩해관, 2019, pp. 8~9)

This manifest is to be submitted, whichever is applicable and appropriate, to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and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required under Section 15 of the Import and Export Ordinance, Regulations 11 and 12 of the Import and Export (Registration) Regulations, Sections 8, 9 and 11 of the Import and Export Ordinance, Regulations 6DAC and 6DAE of the Import and Export (General) Regulations,

- 해관은 적하목록을 수집하는 권한을 통계 작성을 위하여 통계조사부에 위임하였으며, 적하목록의 사본 또는 발췌본은 무역통제를 위하여 무역산업부에 제출함
  
- 홍콩에 도착하는 모든 선박·항공기·차량으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홍콩을 떠나는 모든 선박·항공기·차량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적하목록은 「수출입 적하목록 공고」에 규정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해관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되어야 함<sup>312)</sup>
  - 선주·선장, 기주·기장, 차량주·차량 책임자 또는 기차로 운송되는 경우 화주의 대리인은 선박 등이 도착한 후 14일 이내에 특정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 적하목록에는 물품 상세, 중량 및 용적, 화인, 선하증권 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적하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세부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해관장의 요구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약식벌금 만홍콩달러가 부과됨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출 방법,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태만한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당해 이유가 해소된 후 적하목록 제출을 하지 않거나 태만한 경우 약식벌금 천홍콩달러가 부과됨
    - 약식판정 다음 날부터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태만이 계속되는 경우 매일 백홍콩달러의 벌금이 추가됨

Regulations 6B and 6BB in the Eighth Schedule of the Import and Export (General) Regulations, and Regulations 5, 6 and 8 of the Reserved Commodities (Control of Imports, Exports and Reserve Stocks) Regulations.

312) 「수출입 (등록) 규례」 제11조 내지 제12조

〈표 3-1-2〉 수입물품 적하목록 세부사항

포장 화물		벌크 화물	
해상 운송	기타 운송	해상 운송	기타 운송
포장의 번호, 상세, 총중량 및 총용적	포장의 번호, 상세, 총중량 또는 총용적	화물의 명세, 총중량 및 용적	화물의 명세, 총중량 또는 총용적
각 포장을 구분하는 표시 또는 나타내는 번호 각 포장에 들어있는 물품 상세 각 포장의 송하인 성명 및 주소 각 포장의 수하인 성명 및 주소 각 포장에 선박·항공기·차량에 선적된 장소 각 포장의 탁송품과 관련된 선하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항공수하물 노트 및 참조번호 환적화물 여부 표시 적용 가능한 경우 수입면허 번호 선박·항공기·차량의 편명, 도착일 및 번호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 컨테이너 번호, 냉동 컨테이너 여부 표시		적용 가능한 경우 화물의 수량 적용 가능한 경우 화물을 구분하는 표시 및 나타내는 번호 화물의 송하인 성명 및 주소 화물의 수하인 성명 및 주소 화물이 선박·항공기·차량에 선적된 장소 화물의 탁송품과 관련된 선하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항공수하물 노트 및 참조번호 환적화물 여부 표시 적용 가능한 경우 수입면허 번호 선박·항공기·차량의 편명, 도착일 및 번호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 컨테이너 번호, 냉동 컨테이너 여부 표시	

자료: 「수출입 적하목록 공고」 제2조

〈표 3-1-3〉 수출물품 적하목록 세부사항

포장 화물		벌크 화물	
해상 운송	기타 운송	해상 운송	기타 운송
포장의 번호, 상세, 총중량 및 총용적	포장의 번호, 상세, 총중량 또는 총용적	화물의 명세, 총중량 및 용적	화물의 명세, 총중량 또는 총용적
각 포장을 구분하는 표시 또는 나타내는 번호 각 포장에 들어있는 물품 상세 각 포장의 송하인 성명 및 주소 적용 가능한 경우 각 포장의 수출자로서 수출 면허상 수출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각 포장의 도착항 또는 도착지 각 포장의 탁송품과 관련된 선하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항공수하물 노트 및 참조번호 환적화물 여부 표시 적용 가능한 경우 수출면허 번호 선박·항공기·차량의 편명, 출발일 및 번호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 컨테이너 번호, 냉동 컨테이너 여부 표시		적용 가능한 경우 화물의 수량 적용 가능한 경우 화물을 구분하는 표시 및 나타내는 번호 화물의 송하인 성명 및 주소 적용 가능한 경우 화물의 수출자로서 수출 면허상 수출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화물의 도착항 또는 도착지 화물의 탁송품과 관련된 선하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항공수하물 노트 및 참조번호 환적화물 여부 표시 적용 가능한 경우 수입면허 번호 선박·항공기·차량의 편명, 출발일 및 번호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 컨테이너 번호, 냉동 컨테이너 여부 표시	

자료: 「수출입 적하목록 공고」 제3조



- 「수출입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전 제출한 적하목록이 「수출입 적하목록 공고」에 따른 세부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특정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된 경우 「수출입 (등록) 규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적하목록 제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sup>313)</sup>
  - 이 경우 「수출입 조례」 제15조에 따른 적하목록이 제출된 때에 「수출입 (등록) 규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적하목록이 제출된 것으로 봄
  -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입 조례」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적하목록에는 「수출입 (등록) 규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세부사항이 추가되어야 함

## 라. 수입·수출 신고

- 모든 수출·입 물품은 수출·입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통계조사부가 무역통계를 작성하는 데 이용되므로 제 때에 정확한 신고서 제출이 필요함<sup>314)</sup>
  - 무역통계는 상품 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홍콩의 무역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 경제정책에 대한 결정의 기초로 활용됨
- 신고 면제 물품<sup>315)</sup> 외의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모든 자는 물품이 수입되거나 수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입 또는 수출 신고서를 해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sup>316)</sup>
  - 물품이 하나의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으로 수입되거나 수출된 경우 또는 품목번호 4자리 코드가 동일한 물품이 동일한 운송수단으로 동일한 국가에서 탁송되거나 동일한 국가로 탁송된 경우 단일의 신고를 해야 함
    - 다만 식품이 수입되거나 의류가 수출된 경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함

313) 「수출입 (등록) 규례」 제12A조

314) 홍콩해관, 2018, pp. 1~3.

315) 구체적인 대상은 제2편 제2장 2. 신고와 납부 참조

316) 「수출입 (등록) 규례」 제4조 내지 제5조

- 신고 기한에도 불구하고 각 탁송품의 가격이 천홍콩달러 미만인 동일 품목번호 물품이 빈번하고 정기적으로 동일한 국가에서 탁송되거나 동일한 국가로 탁송되는 경우 해관장의 승인을 얻어 월별 신고를 할 수 있음
  - 이 경우 각 월 7일 이전에 전월에 수입하거나 수출한 물품의 세부사항을 제출해야 함

□ 수출·입 신고는 물품에 따라 다음의 6개의 형식으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함<sup>317)</sup>

- 수입신고서 Form 1: 수입 물품(식품, 신고 요금 면제 물품 제외)
- 수입신고서 Form 1A: 홍콩 수출입 품목분류 목록(HKHS) 부록 1에서 정한 식품
- 수입신고서 Form 1B: 다음의 신고 요금 면제 물품
  - 순도 995 이상의 골드 바(HKHS 제7108.1210호, 제7108.2010호)
  - 현지 항공사가 소유하거나 전세낸 항공기의 수리 또는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항공기 부분품 또는 부속품(수입 신고는 현지 항공사가 해야 함)
  - 현지 해상 또는 항공 화물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화물 컨테이너의 수리 또는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수입 신고는 현지 해상 또는 항공 화물 운송업자가 해야 함)
- 수출/재수출 신고서 Form 2: 수출 물품(홍콩에서 제조된 의류, 신고 요금 면제 제외)
- 수출 신고서 Form 2A: HKHS 부록 2에서 정한 의류로 홍콩에서 제조된 것
- 수출/재수출 신고서 Form 2B: 다음의 신고 요금 면제 물품
  - 순도 995 이상의 골드 바(HKHS 제7108.1210호, 제7108.2010호)
  - 현지 항공사가 소유하거나 전세 낸 항공기의 수리 또는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항공기 부분품 또는 부속품(수출 신고는 현지 항공사가 해야 함)

---

317) 홍콩해관, 2018, p. 4.

〈표 3-1-4〉 별도의 수입 신고가 필요한 식품

HS code	품명
제1류	살아있는 동물
제외	0101.2910 경주용 말
	0106.11 영장류
	0106.12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0106.13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의 동물(카멜리대과)
	0106.14 토끼
	0106.19 기타 살아있는 포유동물
	0106.2029 거북 및 자라(거북목의 파충류)(비식용의 것)
	0106.2090 기타 파충류(비식용의 것)
	0106.31 뱀금류
	0106.32 앵무류(패럿류·패러키투류·금강앵무류·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0106.3990 기타 조류(비식용의 것)
	0106.41 벌
	0106.49 기타 곤충류
	0106.9090 기타 살아있는 동물(비식용의 것)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제외	0301.11 민물의 관상용 활어
	0301.19 기타 관상용 활어
	0305.5930 건조한 해마류(염장했는지는 상관없으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305.5940 건조한 실고기류(염장했는지는 상관없으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제0504호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제9류	커피·차·마테·향신료

〈표 3-1-4〉의 계속

HS code		품명
제10류		곡물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제외	1108.1400	매니옥(카사바) 전분
	1108.1900	기타 전분
	1108.2000	이눌린
	제1109호	밀의 글루텐(건조했는지 상관없다)
제1210호		흙(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나 펠릿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루플린
제1212호		로커스트콩(해조류와 그 밖의 조류·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 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리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제외	1212.29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해조류와 기타 조류
제1501호		돼지의 지방(라드를 포함한다)과 가금의 지방(제0209호나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제1517호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제외	1703.9010	비식용의 당밀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제2209호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품
2922.4210		글루탐산 나트륨

자료: HKHS 부록 1

〈표 3-1-5〉 별도의 수출 신고가 필요한 의류

HS code		품명
3926.20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한다)
4015.90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제외하고,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4203호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제4303호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과 그 밖의 모피제품
제4304호		인조모피와 그 제품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제외	6406.1000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
	6406.2000	바깥 바닥과 뒷굽(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제6504호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6505호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직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6506호		그 밖의 모자(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외	6506.10	안전모자
제6507호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모자의 프레임·챙·턱끈
9113.902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자료: HKHS 부록 2

□ 수출·입 신고서는 특정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특정 기관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전자 기록으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음<sup>318)</sup>

318) 홍콩해관, 2018, pp. 14~15.

- 정부에서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한 특정 기관은 다음과 같음
    - Brio Electronic Commerce Limited (<http://www.brio.com.hk>)
    - Global e-Trading Services Limited (<http://vip.ge-ts.com.hk>)
    - Tradelink Electronic Commerce Limited (<http://www.tradelink.com.hk>)
  - 또는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종이 양식의 신고서를 작성하면 특정 대리인은 당해 정보를 전자 메시지로 전환하여 특정 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음
    - 대리인이 제공하는 전환 서비스는 시간 및 비용이 대리인마다 다를 수 있음
- 수입자 또는 수출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신고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식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최대 200홍콩달러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sup>319)</sup>
- 식품을 제외한 모든 수·출입 물품은 물품가격 4만 6천홍콩달러까지 0.2홍콩달러, 이를 초과하는 경우 천홍콩달러마다 0.125홍콩달러의 요금이 부과됨
    - 다만 홍콩에서 제조된 의류를 수출하는 경우 신고 요금에 추가하여 의류 산업 교육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sup>320)</sup>
  - 신고 요금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수출·입 신고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sup>321)</sup>

〈표 3-1-6〉 수·출입 신고 요금

(단위: 홍콩달러)

구분	물품	요금	최대 요금
수입	식품을 제외한 물품	46,000에 0.2 + 추가 1,000당 0.125	200
	HKHS 부록 1의 식품	물품 금액과 상관없이 0.2	-
	요금 면제 물품	-	-
수출	의류를 제외한 물품 <sup>1)</sup>	46,000에 0.2 + 추가 1,000당 0.125	200
	HKSHS 부록 2의 의류 <sup>2)</sup>	46,000에 0.2 + 추가 1,000당 0.125 + 1,000당 0.3	-
	요금 면제 물품	-	-

주: 1) 원산지가 홍콩인지 여부를 불문함

2) 홍콩에서 제조된 것에 한함

자료: 홍콩해관, 2018, pp. 15~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19) 「수출입 (등록) 규례」 제8조

320) 홍콩해관, 2018, p. 16.

321) 「수출입 (등록) 규례」 제8조

- 해관장은 제출된 수출·입 신고서의 일부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수정될 때까지 신고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으며, 승인이 거절된 신고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sup>322)</sup>
  - 수입자 또는 수출자는 신고서를 제출하고 30분 후 신고서가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메일을 확인하여야 함<sup>323)</sup>
  - 신고가 승인되면 신고인은 승인 메시지를 송부받으며, 거절되면 오류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고의 또는 부주의로 해관장에게 정확하지 않은 신고를 제출한 자는 만홍콩달러의 약식 벌금이 부과됨<sup>324)</sup>
  - 합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태만한 경우 합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가 소멸된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태만한 경우 약식 벌금 천홍콩달러가 부과됨
    - 또한 벌금 부과일 다음 날부터 미신고 또는 신고 태만이 계속되는 날까지 매일 백홍콩달러의 벌금이 추가됨
    - 기한보다 늦게 수출·입 신고를 제출한 자는 벌금 외에 다음의 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함<sup>325)</sup>

〈표 3-1-7〉 수출·입 신고 지연 가산세

(단위: 홍콩달러)

신고된 물품 가격	제출일별 가산세		
	수출·입 후 14일~1개월 14일	수출·입 후 1개월 14일~2개월 14일	수출·입 후 2개월 14일~
20,000 이하	20	40	100
20,000 초과	40	80	200

자료: 홍콩해관, 2018, p. 16.

322) 「수출입 (등록) 규례」 제4조 내지 제5조

323) 홍콩해관, 2018, p. 14.

324) 「수출입 (등록) 규례」 제4조 내지 제5조

325) 「수출입 (등록) 규례」 제7조

## 2. 특수 수출입 통관 절차

### 가. 금지 물품

- 금지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적재하거나 할 선박·항공기·차량의 소유주에게 면허증을 제시하여 수출·입 허가를 받은 것을 확인받은 후 물품을 반출 또는 적재할 수 있음<sup>326)</sup>
  - 수입 면허는 물품이 수입된 후 7일 이내에 선주 등에게 제시되어야 하며, 선주 등은 제시받은 면허증과 적하목록 사본을 7일 이내에 무역산업부의 총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수출자는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 면허를 송부하거나 면허번호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선주 등은 수출 후 14일 이내에 무역산업부의 총국장에게 면허증과 적하목록을 송부하여야 함
  
- 홍콩은 여러 기관에서 관할하는 금지 물품의 수출·입 면허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관단일창구(Trade Single Window)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현재 12개의 수출·입 문서를 발급하고 있음<sup>327)</sup>
  - 통관단일창구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유료 문서의 경우 발급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함

326) 「수출입 조례」 제7조 내지 제11조

327) 홍콩 무역단일창구, [https://www1.tradesinglewindow.hk/portal/en/about\\_tsw/index.html](https://www1.tradesinglewindow.hk/portal/en/about_tsw/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11.



〈표 3-1-8〉 통관단일창구 발급 문서

(단위: 홍콩달러)

문서명	첨부서류	관할 정부기관	수수료
관리 화학물질 수입/수출 승인	송장 선적 요청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판매 계약서 수입목적이 명시된 수입자의 전문 수입국의 수입승인서/ 수출국의 수출승인서	해관	-
홍콩을 통하여 중국으로 운송되는 비 미국산 냉동 닭 조제품 증명	선하증권 사업자등록증 수출국의 건강증명서 수입면허 또는 환적화물 면제 증명서 위임장 적하목록	해관	-
홍콩 자연산 모래 최종 사용자 증명	수입자, 최종 사용자,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약정서 계약서 사본	토목·공학부	-
무선통신 송신 장치 수입/수출 허가	홍콩 신분증 여권 또는 기타 신원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무선통신 당국	150
농약 수입/수출 면허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송장	농업·수산 보호국	-
광디스크 마스터링 및 복제 장치 면허	사업자 등록증 또는 홍콩 신분증 계약서/송장 포장명세서 운송 요청서 수입 면허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해관	-
오존파괴물질 수입/환적 면허	포장명세서 송장 선하증권	환경보호부, 무역 산업부	845 / 1,210

〈표 3-1-8〉의 계속

(단위: 홍콩달러)

문서명	첨부서류	관할 정부기관	수수료
관리 화학물질 면허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사업자 등록증 수입/수출 합의서 포장명세서 송장 구매 요청서 제품 설명서	환경보호부	-
관리 화학물질 환적 허가	사업자 등록증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선적 요청서 송장 판매 계약서 수입 목적을 명시한 수입자의 전문 수출국의 수출 승인서 수입국의 수입 승인서	해관	950
모래 이동 허가	모든 당사자 간의 계약서 수출국의 수출면허	토목·공학부	-
광디스크 마스터링 및 복제 장치 환적 통지	사업자 등록증/홍콩 신분증 통과 선하증권/ 통과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계약서/송장 포장명세서 선적 요청서 수입자/수출자 위임장	해관	-
무선통신 송신 장치 환적 통지	-	무선통신 당국	-

자료: 홍콩 무역단일창구, [https://www1.tradesinglewindow.hk/portal/en/useful\\_information/annex\\_g.html](https://www1.tradesinglewindow.hk/portal/en/useful_information/annex_g.html); [https://www1.tradesinglewindow.hk/portal/en/useful\\_information/ummary\\_support\\_docs/index.html](https://www1.tradesinglewindow.hk/portal/en/useful_information/ummary_support_docs/index.html); [https://www1.tradesinglewindow.hk/portal/en/useful\\_information/summary\\_fees/index.html](https://www1.tradesinglewindow.hk/portal/en/useful_information/summary_fees/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11.

## 나. 휴대품

- 홍콩은 입국하는 여행객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Red and Green 채널 시스템을 운영하여 신고 여부에 따라 통관지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328)</sup>
  - 홍콩에 도착한 여행객은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 Green 채널에서, 신고가 필요한 경우 Red 채널에서 심사를 받아야 함
  - Green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 물품 검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홍콩은 수·출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휴대품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면세한도를 초과한 과세대상 물품, 금지 또는 관리 물품의 경우 신고가 필요함<sup>329)</sup>
  - 과세대상 물품의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초과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Red 채널을 이용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함
  - 금지 또는 관리 물품의 경우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물품을 압수당하고 기소당할 수 있음

〈표 3-1-9〉 통관단일창구 발급 문서

물품		면세한도	면세요건
주류		20℃에서 30도 이상인 주류 1l	18세 이상 여행객이 휴대 개인용으로 사용 홍콩 신분증 소유자의 경우 홍콩 외에서 24시간 이상 체류
담배	담배	19개피	개인용으로 사용(상업적 목적 금지)
	시가	1개 또는 25g	
	기타 제조담배	25g	

자료: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passenger\\_clearance/duty\\_free/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passenger_clearance/duty_free/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12.

328)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passenger\\_clearance/red\\_green/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passenger_clearance/red_green/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12.

329)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passenger\\_clearance/red\\_green/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passenger_clearance/red_green/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12.

- 면세한도 내의 과세대상 물품이 면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금지 또는 관리 물품이 없는 경우 Green 채널을 이용할 수 있음<sup>330)</sup>
  - Green 채널을 이용한 자는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신고한 과세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
  - 또한 유효한 면허 또는 허가 없이 금지 또는 관리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기소되고 물품을 압수당할 수 있음

---

330)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passenger\\_clearance/red\\_green/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passenger_clearance/red_green/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12.

## II. 환적 절차

- 홍콩은 환적되는 화물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출·입 요건 면제 제도, 중국이 체결한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환적화물이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수입물품을 말함<sup>331)</sup>
  - 통과선하증권 또는 통과항공화물운송장에 따라 홍콩 외의 지역에서 또 다른 홍콩 외의 지역으로 탁송되어야 함
  - 수입된 선박·항공기·차량에서 하역된 후 수출되기 전까지 동일한 선박 등에 재적재되거나 다른 선박 등에 옮겨지는 물품으로 당해 선박 등에 바로 옮겨지는지 또는 수입 후 수출될 때까지 홍콩에 하역되어 보관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함

### 1. 환적화물 면제 절차

#### 가. 면제 대상

- 환적화물 면제 제도에 등록된 선박회사·항공사·운송주선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들이 처리하는 환적화물은 수입 및 수출 면허가 면제됨<sup>332)</sup>

---

331) 「수출입 조례」 제2조

332) 홍콩 무역산업부, [https://www.tid.gov.hk/english/import\\_export/tces/tces\\_maincontent.html](https://www.tid.gov.hk/english/import_export/tces/tces_maincontent.html), 검색일자: 2019. 12. 12.

- 다음의 환적화물에 대하여 당해 제도에 따른 면제가 주어짐
  - 「수출입 (일반) 규례」 Schedule 1 Part 1 및 Schedule 2 Part 1에 따른 의약품 및 약, 다만 Dangerous Drugs Ordinance 제2조에 따른 위험 마약은 제외함
  - Reserved Commodities (Control of Imports, Exports and Reserve Stocks) Regulations의 Schedule에 따른 쌀
  - 「수출입 (일반) 규례」Schedule 1 Part 1에 따른 냉동 또는 냉장된 육류 및 가금류
  - 「수출입 (일반) 규례」 Schedule 1 Part 1 및 Schedule 2 Part 1에 따른 중국 한약재
  - 「수출입 (일반) 규례」 Schedule 2 Part 1에 따른 가루 분유
  - 「수출입 (일반) 규례」 Schedule 1 Part 1 및 Schedule 2 Part 1에 따른 미가공 다이아몬드

#### 나. 면제 등록<sup>333)</sup>

- 환적화물에 대한 면제를 받고자 하는 선박회사, 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인은 환적화물 면제 제도에 등록을 하여야 함
  -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산업부의 적하목록 확인과에 인편 또는 우편<sup>334)</sup>으로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함
  
- 화물운송주선인이 환적화물 면제제도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현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를 대신하여 환적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지정되어야 함

333) 홍콩 무역산업부, "Transshipment Cargo Exemption Scheme: Invitation for New Registration /Renewal of Registration," 2019. 9. 2.

334) Room 1604, 16/F, Trade and Industry Tower, 3 Concorde Road, Kowloon City, Hong Kong

- 화물운송주선인은 등록 신청 시 현지 선박회사 등이 발급한 대리 협약서, 위임장 등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기존 등록자에게 발급된 면제 증명서는 2019년 만료되므로 2020년 및 2021년에 환적화물에 대한 면허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2019년 12월 2일까지 등록을 갱신하거나 신규 신청해야 함
  - 기존 등록자가 기한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019년 12월 31일 내에 갱신 승인이 불가능하므로 유효한 면제 증명서가 승인될 때까지 2020년 및 2021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당해 제도에 따른 등록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 기존 등록자는 무역산업부에 등록 중단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 갱신 또는 신규 신청 제출을 완료한 신청인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또는 발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면제 증명서를 발급받음
  - 등록자는 매월 15일 이전 전월에 처리한 환적화물에 대해 보고해야 함
    - 처리한 환적화물이 없는 경우도 실적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고를 해야 함
  
- 월별 보고 미제출을 포함한 등록 요건의 위반이 적발된 선박회사 등은 2020년 및 2021년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청인은 면제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위법이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 다. 면제 요건

### 1) 미가공 다이아몬드 외의 환적화물<sup>335)</sup>

- 환적화물이 홍콩에 있는 기간 동안 물리적 점유는 환적화물 면제제도에 따라 등록된 자가 가져야 하며, 홍콩에서 추가적 가공 또는 대체가 이루어질 수 없음
  - 환적화물은 등록된 자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장소 내에서 다른 물품들과 분리되어 별도로 보관되어야 함
  - 등록인은 당해 제도에 따라 등록된 다른 선박회사, 항공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인으로부터 환적화물을 인수하거나 그들에게만 인계하여야 함
  
- 등록인은 필요한 경우 권한 있는 세관공무원에게 보관 장소, 환적화물, 관련 장부 및 기록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함
  - 등록인은 처리한 환적화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 화물의 명세·수량
    - 화주의 성명·주소, 물품 도착 통지인·화주 대리인의 성명·주소
    - 화물의 최초 선적항·목적항
    - 홍콩에 화물이 도착한 날짜, 홍콩에서 화물이 출발하는 날짜
    - 화물의 반출·입 운송인 성명
    - 홍콩으로 수입되고 홍콩에서 수출되는 화물의 항해·비행·차량의 일련번호
    - 화물 관련 Master·House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화물의 원산지, 화물의 표식 또는 라벨에 대한 명세
  
- 당해 제도에 따른 면제는 양도가 불가능하며, 등록된 소유권자 또는 파트너가 변경된 경우 신규 등록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함

<sup>335)</sup> 홍콩 무역산업부, 2019, Appendices 1



- 등록인은 즉시 무역산업부 총국장에게 서면으로 신규 등록신청서 또는 등록 사항의 수정 신청서에서 신고된 등록내용의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함
-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환적화물이 수출·입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입 및 수출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 등록인은 화물을 인수하거나 화물을 인계할 선박회사 등의 면제 증명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화물운송주선인은 환적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현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지정하여야 등록이 가능함
  - 대리인으로 지정된 화물운송주선인이 선박회사 등의 대리를 중단한 경우 총국장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화물운송주선인이 하나 이상의 선박회사 등의 대리인을 유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제 증명서를 총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2) 미가공 다이아몬드<sup>336)</sup>

- 환적화물이 홍콩에 있는 기간 동안 물리적 점유는 환적화물 면제제도에 따라 등록된 자가 가져야 하며, 홍콩에서 추가적 가공, 판매 또는 대체가 이루어질 수 없음
  - 환적화물은 등록된 자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장소 내에서 다른 물품들과 분리되어 별도로 보관되어야 함
  - 등록인은 환적되는 미가공 다이아몬드가 컨테이너에 봉인되며, 컨테이너가 훼손되지 않고 봉인이 온전히 유지되도록 보장하여야 함
  - 등록인은 당해 제도에 따라 등록된 다른 선박회사 등 또는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제도에 따른 미가공 다이아몬드 환적 면제제도에 의해 등록된 자로부터 환적 화물을 인수하거나 그들에게만 인계하여야 함

---

336) 홍콩 무역산업부, 2019, Appendices 2

- 등록인은 필요한 경우 권한 있는 세관공무원에게 보관 장소, 환적화물, 관련 장부 및 기록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함
  - 등록인은 처리한 환적화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 미가공 다이아몬드의 명세, 수량·질량
    - 화주의 성명·주소, 물품 도착 통지인·화주 대리인의 성명·주소
    - 미가공 다이아몬드의 최초 선적항·목적항
    - 홍콩에 미가공 다이아몬드가 도착한 날짜, 홍콩에서 미가공 다이아몬드가 출발하는 날짜
    - 미가공 다이아몬드를 반출·입한 운송인 성명
    - 홍콩으로 수입되고 홍콩에서 수출되는 미가공 다이아몬드의 항해·비행·차량의 일련번호
    - 화물 관련 Master·House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화물의 원산지, 화물의 표식 또는 라벨에 대한 명세
    - 환적화물에 첨부된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 참조번호
  
- 당해 제도에 따른 면제는 양도가 불가능하며, 등록된 소유권자 또는 파트너가 변경된 경우 신규 등록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함
  - 등록인은 즉시 무역산업부 총국장에게 서면으로 신규 등록신청서 또는 등록 사항의 수정 신청서에 신고된 등록내용의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함
  
- 면제는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제도가 발효되었거나 킴벌리 프로세스에서 허가한 국가·지역에서 또는 당해 지역으로의 환적에만 적용됨
  - 킴벌리 프로세스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되거나 목적지로의 수입되는 미가공 다이아몬드는 무역제재를 받지 않음
  
- 당해 제도에 따라 환적되는 미가공 다이아몬드의 수입 및 수출 적하목록은 환적화물이 수출·입된 후 14일 이내에 총국장에게 제출되어야 함

- 적하목록이 송부되는 때에 홍콩이 환적항임을 표시하여 선적항에서 발급된 통과 선하증권 또는 통과 항공화물운송장이 환적화물의 증거로 제공되어야 함
  - 선적항에서 통과 선하증권 또는 통과 항공화물운송장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항에서 미가공 다이아몬드를 송하 처리한 등록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정당하게 발급하였다면 승인될 수 있음
- 만약 적하목록이 전자서비스를 통하여 송부되었다면 통과 선하증권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당해 제도에 따른 면제번호 또는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제도에 따른 면제번호는 적하목록에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 등록인은 2년간 환적화물에 대하여 발급된 통과 선하증권 등을 보관하여야 함

## 2. 환적화물 증명절차

- 홍콩해관은 중국과 FTA 체결상대국 간에 수출·입되는 물품이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FTA 환적화물 원활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sup>337)</sup>
  - FTA에서는 제3국을 경유한 탁송품이 세관 통제하에 있거나 제3국의 지정된 장소에만 머무른 경우 등에는 체결상대국 간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 혜택을 적용할 자격을 부여함
  - 이에 따라 홍콩해관은 수출입업자에게 세관 감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적화물이 홍콩에 머무르는 동안 추가적인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를 발급함

337)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fta/introduction/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fta/introduction/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13.

가. 적용 범위

- FTA 환적화물 원활화 제도는 중국이 체결한 12개의 FTA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대하여 적용함<sup>338)</sup>
  - FTA 체결상대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13개 협정적용을 위하여 비가공증명서가 발급되며,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FTA 체결상대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대만, 한국, 호주에 대하여만 당해 제도가 적용됨
  - 또한 당해 제도에 따라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출입업자는 각 협정에서 정한 제3국에서의 작업 범위, 보관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표 3-Ⅱ-1〉 FTA 환적화물 원활화 제도 적용 범위 및 경유 기간

협정	적용 여부		최대 경유기간
	상대국→중국	중국→상대국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	○	60일
중국-한국 FTA	○	○	3개월
중국-호주 FTA	○	○	12개월
중국-ASEAN 포괄적 경제협력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	X	-
중국-파키스탄 FTA	○	X	-
중국-싱가포르 FTA	○	X	3개월
중국-아이슬란드 FTA	○	X	-
중국-스위스 FTA	○	X	-
중국-칠레 FTA	○	X	3개월
중국-코스타리카 FTA	○	X	3개월
중국-페루 FTA	○	X	3개월
중국-호주 FTA	○	X	6개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	X	-

자료: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fta/scope/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fta/scope/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13.

338)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fta/scope/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fta/scope/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13.

## 나. 발급 기준

### 1)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되는 경우<sup>339)</sup>

- 수하인 또는 대리인이 특혜관세 적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운송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중국해관은 홍콩해관 또는 중국 조사 및 시험 유한회사(China Inspection Co. Ltd.: CIC)가 발급한 비가공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음
  - 환적화물이 홍콩을 거쳐 해상 또는 항공으로 운송된 경우 국제 정기선 선박회사, 민간항공 운송사, 국제특송회사가 발급한 단일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어야 함
    - 통과 선하증권에는 원산지 국가의 영역 내에 소재한 출발지점과 중국 영역 내의 도착지점이 동일한 페이지에 나타나 있어야 함
    - 다만 중국해관은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통과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라도 비가공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
  - 중국-한국 FTA와 같이 원산지 국가와 전자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FTA가 적용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전체 운송경로 내내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 번호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면 됨
  
- 상기의 두 가지 경우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입자는 비가공증명서 제출을 위하여 다음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함
  - 홍콩에 머무르는 동안 CIC의 검사 및 검역 요구를 받은 컨테이너 화물 및 벌크 화물의 경우 수입자는 CIC가 발행한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CIC의 검사 및 검역을 위한 경우 외에 봉인이 개방된 컨테이너 화물, 홍콩에 머무르는 동안 검사 및 검역을 받지 않은 벌크화물은 홍콩해관이 발급한 비가공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39)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fta/principle/mainland/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fta/principle/mainland/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16.

- 홍콩에 머무르는 동안 개방 및 훼손되지 않은 컨테이너 화물의 비가공증명서는 홍콩해관 또는 CIC가 발급하였는지 불문함
- 중국해관의 요청으로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입자는 중국해관에 수입신고서를 하는 때에 비가공증명서와 증명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중국해관은 전자데이터를 교환한 경우 전자정보와 수입신고서의 증명서 정보가 일치하는 때에는 비가공증명서 사본을 요구하지 않음

**2) 홍콩을 거쳐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 중국-대만 ECFA에 따라 홍콩을 경유하여 대만으로 수출되는 모든 화물은 홍콩해관이 발급한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sup>340)</sup>
- 중국을 출발한 화물이 홍콩을 거쳐 한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중국-한국 FTA를 적용받기 위하여 다음에 따라야 함<sup>341)</sup>
  - 단일 통과 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은 벌크화물이 홍콩에서 일정 기간 보관된 경우 홍콩해관이 발급한 비가공증명서가 필요함
    - 홍콩의 지정된 장소(① Kwai Tsing 1-9 Container Terminals, ② Tuen Mun River Trade Terminal, ③ Super Terminal One, ④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 ⑤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⑥ Asia Airfreight Terminal, ⑦ DHL Central Asia Hub)에서 7일 이내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
  - 컨테이너 화물은 홍콩에서 컨테이너가 개방되어 컨테이너 번호나 봉인 번호가 변경된 경우, 벌크화물은 집하·적재·적출·재포장된 경우 홍콩해관이 발급한 비

340)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fta/principle/taiwan/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fta/principle/taiwan/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16.

341)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fta/principle/korea/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fta/principle/korea/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16.

가공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일 통과 선하증권이란 운송경로, 출발 및 도착 항구/지점, 화물의 명세 및 수량 등 선적정보를 보여주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말함<sup>342)</sup>
  - 컨테이너 화물은 전체 운송경로 내내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 번호가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었음을 증명하는 단일 통과 선하증권이 있어야 함
  - 벌크화물은 전체 운송경로 내내 화물의 명세, 포장 개수 및 중량이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었음이 단일 통과 선하증권을 통해 증명되어야 함
  
- 홍콩을 경유하여 호주로 수출되는 환적화물은 홍콩해관이 발급하는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sup>343)</sup>
  - 수입자는 비가공증명서 없이 호주세관에 근거서류와 함께 특혜세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표 3-Ⅱ-2〉 FTA 협정별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구분		중국행	대만행	한국행		호주행
단일 통과 선하증권이 발급되는 경우		불필요	필요	불필요		불필요
단일 통과 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컨테이너 화물	불필요	필요	불필요		불필요
	벌크화물	필요	필요	미보관	불필요	불필요
				임시보관 <sup>1)</sup>	불필요	
보관	필요					
홍콩에서 집하, 적재, 적출, 재포장된 화물		필요 (세관감시)	필요 (세관감시)	필요 (세관감시)		불필요

주: 1) 지정된 장소에서 7일 이내의 보관에 한함  
 자료: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fta/principle/summary/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fta/principle/summary/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16.

342)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fta/principle/summary/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fta/principle/summary/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16.  
 343)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fta/principle/australia/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fta/principle/australia/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16.

### 다. 발급 절차<sup>344)</sup>

- FTA 원활화 제도에 따라 비가공증명서를 처음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홍콩해관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함
  - 법인 등록 제도에 따라 등록된 신청인은 회사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정보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해관에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단순히 사업자 등록 번호와 FTA 참조번호를 기재하면 됨
  
-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탁송품이 홍콩에 도착하기 최소 하루 전까지 신청서와 관련 근거서류를 해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하여야 하는 근거서류는 다음과 같음
    - 화물과 관련된 통과 선하증권
    - 화물과 관련된 원산지 증명서
    - 포장명세서(홍콩에서 집하·적재·적출·재포장되는 화물에 한함)
    - 화주의 위임장(필요한 경우)
    - 홍콩에 머무르는 환적기간 동안 보관 기록(한국행 화물에 한함)
    - 기타 화물 관련 근거 서류
  - 신청서류는 다음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발송하여야 함
    -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물: fta\_china\_application@customs.gov.hk
    - 대만, 한국으로 수출하는 화물: fta\_others\_application@customs.gov.hk
  
- 신청서를 받은 해관은 운송방식 및 처리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신청인은 서류심사를 위한 수수료 155홍콩달러를 납부하여야 하며, 홍콩에서 집하 또는 재포장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sup>344)</sup>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fta/procedure/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fta/procedure/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16.



- 신청인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빨리 해관에 납부 영수증을 전자메일로 송부하여야 함
  - Kwai Chung 세관, Customs Command Centre, HACTL Super Terminal
    1. 홍콩국제공항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납부
  - 홍콩 우체국에서 납부(모바일 우체국은 제외)
  - 납부서에 명시된 편의점에서 납부
  -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전화서비스를 통한 납부

〈표 3-Ⅱ-3〉 비가공증명서 수수료

(단위: 홍콩달러)

구분	운송방식	처리방법	수수료
A	항공·육상·해상으로 도착한 탁송품	집하(적재·적출)	625
B	항공으로 도착한 탁송품	집하(재포장 또는 기타)	910
C	육상·해상으로 도착한 탁송품	집하(재포장 또는 기타)	1,470
D	항공·육상·해상으로 도착한 탁송품	서류 심사	155

주: A 내지 C는 기본요금이며, 기본요금은 서비스가 8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경우 재청구됨  
 자료: 홍콩해관,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fta/procedure/index.html](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fta/procedure/index.html),  
 검색일자: 2019. 12. 16.

- 수수료를 납부받은 해관은 서류심사와 가능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게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함
  - 수입자는 특혜세율의 적용을 위하여 비가공증명서와 근거서류를 수입체약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수입체약국은 특혜세율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 홍콩해관에서 발급한 비가공 증명서상의 정보와 탁송품을 확인할 수 있음

## 참고문헌

- 강성훈·이재선·노영예·김미정,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_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2.
- 관세청, 『AEO MRA 100% 활용하기』, 2014. 9.
- 법무부, 『중국, 홍콩, 마카오 CEPA의 이해』, 2009. 12.
- 세계법제정보센터, 『홍콩 수출입 관련 법령 및 제도』, 2015. 2. 6.
- 이영근, 『과세물품에 대한 한국과 홍콩의 통관제도를 세관통제 관점에서 비교 연구』,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2014. 3.
- 외교통상부, 『홍콩·마카오 개황』, 2018. 4.
- \_\_\_\_\_, 『아시아, 대양주』, 『2017년 외국의 통상환경』,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 2017. 12.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외국 관세행정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 2017. 3.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홍콩』, 2011. 4.
- 홍콩 무역산업부, “Strategic Trade Control Pamphlet,” 2016. 2.
- \_\_\_\_\_, “Transshipment Cargo Exemption Scheme: Invitation for New Registration / Renewal of Registration,” 2019. 9. 2.
- 홍콩 해관, “Application Form for Hong Kong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Programme,” 2018.

\_\_\_\_\_, “Hong Kong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Programme Self-assessment Questionnaire,” 2015.

\_\_\_\_\_, “How to Complete and Lodge Import / Export Declarations,” 2018.

\_\_\_\_\_, “How to Submit Cargo Manifests by Using Electronic Service for Air, Rail, Ocean and River Carriers(EMAN Guidebook),” 2019. 8.

Office of Dutiable Commodities Administration, “User Guidebook for Dutiable Commodities,” 2019. 2.

WTO, *World Trade Policy*, 2018, p. 40.

\_\_\_\_\_, *Trade policy review*, 2019. 1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9*, 2019, p. 101.

관세법인우신, <http://www.wscustoms.co.kr>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mob.tbsi.hometax.go.kr>

국세청, <https://txsi.hometax.go.kr>

농식품수출정보, <https://www.kati.ne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kotra.or.kr>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홍콩약항), <http://overseas.mofa.go.kr/hk-ko>

외교통상부, <http://www.mofa.go.kr/>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

홍콩경제통계, <https://www.hkeconomy.gov.hk/>

홍콩 교통국, <https://eservices.customs.gov.hk/>

홍콩 무역단일창구, <https://www1.tradesinglewindow.hk/portal/en/index.html>

홍콩 무역산업부, <https://www.tid.gov.hk/eindex.html>

홍콩통계청, <https://www.ird.gov.hk>

홍콩 해관, <https://www.customs.gov.hk/en/home/index.html>

홍콩 e-Legislation, <https://www.elegislation.gov.hk/>

APEC Agreements and Declarations, <http://www.asianlii.org/>

UNCTAD, <https://unctad.org/>

APEC Agreements and Declarations, <http://www.asianlii.org/>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홍콩 편 -

---

발 행 2019년 12월 31일  
저 자 정재현·노영예·이재선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주)계문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ISBN 978-89-8191-986-3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Customs Clearance Systems  
of Selected Countrie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http://www.kipf.re.kr)

